

연구보고서 2006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研究陣》

연구위원 : 이 장 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미군 장갑차 두 여중생 역과사고(2002.6.14)	5
III. 동두천 주한 미군트럭 김명자 씨 역과사고 (2005.6.10)	22
IV.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	28
V. 한미 SOFA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내용과 문제점	38
VI. 경찰의 SOFA사건처리 요령(2003.1)의 내용분석	42
VII. 미일 SOFA, NATO SOFA, 독일 SOFA, 미-필리핀 기지협정 의 초동수사에 대한 비교분석	48
VIII. SOFA 관련 형사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60
IX. 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을 위한 초안	65
X. 맺는 말	75
XI. 참고문헌	77

XII. 부 록 : 외국군대 주둔군 지위협정(SOFA) 텍스트 82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 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 마.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

2. 駐屯軍의 地位에 關한 北大西洋條約 當事國間의 協定(NATO 협정)

- 3.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6條에 依據한 施設 및 區域과 日本國에 있는 美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미일협정)
- 4.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6條에 依據한 施設 및 區域과 日本國에 있는 美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에 對한 合意議事錄
- 5. 獨逸聯邦共和國에 駐屯中인 外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北大西洋條約當事國 間에 締結된 協定에 對한 補充協定(독일보충협정)

I. 문제제기

2002년 6월 13일 동두천에서 일어난 여중생 미군장갑차 역과사고와 동두천 주한미군트럭 김명자 씨 역과사고(2005.6.10)의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군 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와 예방차원에서 초동수사의 강화와 개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여중생 사건에 대한 무죄평결(2002.11.22) 이후 한미 양국은 그동안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취하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알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주효했다. 무죄 평결이후 즉시 한국은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무죄평결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영미법과 대륙법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으로 인식하였다. 더구나 정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¹⁾

1) SOFA 체결 배경과 경위

13년간의 협상 끝에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韓-美 駐屯軍地位協定”(한-미 SOFA)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며, ‘한-미 행정협정’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주둔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1948년 8월 15일 한국독립이후 1949년 9월 19일 완전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잠정적으로 주둔한 경우이며, 세번째는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과 더불어 16개국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미군이 주둔한 경우이다.

첫번째의 미군주둔은 전승국으로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한반도남부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권국가간의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문제는 제기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주권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

한 이후에는 외국군의 지위를 규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대통령과 미국군대사령관간에 “과도기에 시행 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제3조에서 미군이 완전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과 더불어 미국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전속적 재판권’을 미군당국에 부여하였으나, 1949년 9월 9

는 다른 나라 SOFA와 대동소이하하며, 다른 나라에는 공무중 범죄에 대해 재판권이양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다른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 SOFA는 잘 운영되고 있고, 미군 법정은 한국법정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강변해왔다. 바로 2002년 12월 10일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하버드는 한-미 SOFA는 미-일 SOFA 및 독일 SOFA를 포함한 다른 나라 SOFA 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면서, 개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한미

일 주한미군이 소수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완전철수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세번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군이 주둔한 것인데, ‘전쟁중이라는 절박한 상황’(prevailing conditions of war)하에서 잠정적으로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교환각서 형식으로 이른바 大田協定이라 불리우는 “주한미국군대의 관할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협정”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었는데, 동 협정에서 한국정부는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재판권을 미군당국에게 허용하였다. 대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전시에 성립된 것이긴 하나 그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주한미국군대와 그 구성원의 안전에 대해 범죄를 행했다는 혐의가 있는 한국국민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조약으로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이라 하겠다. 이어서 1952년 5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ed Command.(이른바 미야협정) 제3조 13항에서 한국정부는 미군을 포함한 통합사령부 산하의 개인과 기관에게 그들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였다.

3년여의 격전 끝에 1953년 7월 1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한미양국은 새로운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1일 체결하였는데, “相互合意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공군을 한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權利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동 조약 제4조는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다. 동 조약의 체결에 앞서 1953년 8월 7일 상호방위조약의 가조인시에 발표된 텔레스 공동성명에서 한미양국은 조약의 발효직후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을 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교섭은 1962년 9월 20일에 제1차 한미간 실무자급회의를 재개한 이후이며, 1965년 워싱턴에서 한미양국 대통령간의 회담에서 주둔군지위협정 19개조문의 주요내용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후 여러 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교섭을 거쳐 1966년 7월 8일 개최된 제82차 실무자회의에서 무려 82회에 달하는 한미간 교섭회의끝에 마침내 19개 조문에 대한 완전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6년 7월 9일 ‘한-미 SOFA’가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1966년 10월 14일 한국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국정부는 1966년 11월 9일 미국측에 비준통고를 하였으며, ‘한-미 SOFA’는 협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967년 2월 9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글에서 ‘한-미 SOFA’ 및 기타 다른 국가간의 SOFA의 관련 조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음. 외무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91) ; U.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Collective Defense Treaties with Maps, Texts of treaties, A Chronology, Status of Forces Agreements, and Comparative Chart (1969).

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부시정부의 직접사과와 SOFA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분노와 평화적 광화문 촛불시위가 이유 있는 저항이라는 게 그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군범죄의 처리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얻었다. 이것은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한미 관계를 정립해가는 자연스런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양국 정부는 SOFA 개정이라는 조약개정을 하지 않고, 2002년 12월 11일 “SOFA 운영 개선을 위한 한미 특별대책반”²⁾ **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의 구성 : 한국측 /외교부 SOFA 담당 심의관, 국방부 정책기획국 차장,

미국측 /주한 미대사관 정부참사관, 주한 미군부 참모장. 한미 양측 SOFA 사무국 간사(북미3과장)와 국방부,

주한미군, 주한대사관 관계자 참석. 회의 안건에 따라 한미 양측의 해당 SOFA 분과 위원장 또는 관계관이 참석.

** 동 대책반 임무 : 1) 현행 SOFA의 운영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문제점 해결 추진. 2)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 행동 권고안을 합동위원회에 제출. 을 설립하고, 동 대책반이 제출한 구체적 행동 권고안을 기초로 2002년 12월 30일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수준에서 한국 측의 초동수사 협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SOFA 형사공조방안을 합의, 현재 시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미군 범죄는 잇따라 발생하고, 미군 당국은 위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경찰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역과 사고(2002.6.13)과 최근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2005.6.10)의 사례에서 절감하고, 경찰 초동수사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의 구성 : 한국측 /외교부 SOFA 담당 심의관, 국방부 정책기획국 차장, 미국측 /주한 미대사관 정부참사관, 주한 미군부 참모장. 한미 양측 SOFA 사무국 간사(북미3과장)와 국방부, 주한미군, 주한대사관 관계자 참석. 회의 안건에 따라 한미 양측의 해당 SOFA 분과위원장 또는 관계관이 참석.

** 동 대책반 임무 : 1) 현행 SOFA의 운영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문제점 해결 추진. 2)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 행동 권고안을 합동위원회에 제출.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범죄의 상기 언급한 두 사건의 사례와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끝으로 타국의 SOFA와의 비교함으로써 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을 위한 개선 초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군 장갑차 두 여중생 역과사고(2002.6.14)

1. 두 여중생 역과사고 (2002.6.14) 개요.

- 사건발생일시 : 2002년 6월 13일 오전 10:45
-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 피해자 : 신호순, 심미선 (당시 만 13세, 조양중학교 2학년 재학중)
- 가해자 : 미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미군 운전병 워커 마크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 사건개요

2002년 6월 13일(임시공휴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54톤)가 앞서 갓길을 걷고있던 여중생 신호순, 심미선양(친구 생일파티에 참석중)을 충격 역과하여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사고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 진행경과

미군측은 이번 사고는 차량 구조상 운전병의 오른쪽 시야가 제한되어 있고, 차량소음 등에 의한 통신 장애로 제때에 경고를 듣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유족들은 당시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주오던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생각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 갓길로
틀면서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고 차량의 너비(3m 67
cm)가
도로폭(3m 40cm)보다 넓고, 그와 비슷한 크기의 장갑차가 서로 교행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미군당국은 사고 당일 미8군 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 날인 6월 14일에는
미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씩을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사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사고의 진상규명에는 소
극적으로 나왔다.

미군측은 6월 14일 저녁 사고현장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6월 19일 미 2사단에서 한미합동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미군측은 “이번 사
고는 결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임을 강조하며 사고 원인으로
차량구조상 오른 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운전병이 학생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관제병이 커브를 돌아 약 30m 전방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경고하려했지만
소음과 무전교신 등의 통신 장애로 제때에 경고가 전달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
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차량은 시속 8-1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계속 직진
운행중이었으며, 마주오던 장갑차는 서로 교행하지 않고 사고 차량과 1m 떨어진 지점에
서 정차했다고 밝혀 그 동안 유족들이 제기해온 사고차량이 마주오던 장갑차와 교행하
면서 갑자기 우측 갓길로 틀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1) 설사 차량구조상 시야가 제한되더라도 운전병의 고개방향에 따라
그 만큼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는 점, 2) 통신장애란 통신장비 고장이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3) 궤도차량의 경우 마찰계수가 커서 8-16km의 느린

속도로 운행한다면 제동장치 작동시 보통 그 자리에서 정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피해학생 두명이 일렬로 누워 두개골이 다 깨질 정도로 완전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지 4)우측 갓길 주변에 갑자기 우측으로 궤도를 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아스콘이 깨지고, 풀이 눌린 흔적이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지 등의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못하고 있다.³⁾ 특히, 차량 속도의 경우 지난 브리핑 때는 16-24km라고 했다가 절반으로 줄여서 발표했다. 주민들에 대해 훈련사실을 사전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통보했다고 했다가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한 마을 이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죄송하다며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거기다가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이 라디오 프로에서 “그 누구도 책임질만한 과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비난여론은 급속하게 확산되어갔다.

사태가 점차 확대되자 미군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그 와 별도로 한국 검찰도 관련 미군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미군소환을 요청했다. 이는 유족들이 6월 28일 차량운전병과 관제병, 미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⁴⁾, 7월 4일 미측의 재판권포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측은 7월 8일 출두하기로 했다가 신변불안과 초상권침해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미군 2명 등 미사단측 10여명이 7월 10일 전격 출두하였다가 한시간 만에 돌아갔다.⁵⁾ 더 이상 명분이 없던 법무부는 같은 날인 7월 10일 SOFA 협정 제23조 3항⁶⁾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

3) 운전병은 아이들을 보지 못 했다는 점, 통신장애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 차량속도는 시속 8-16km 였다는 점, 미군차량은 교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4가지 진실의혹에 대해서,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평화의 불씨, 2002년 8월(통권 제49호), pp.4-7 참조.

4) 여중생 2명의 아버지와 대책임 간부 등 4명은 6월 27일 고소장에서 “운전병과 동승 장교는 사고차량의 폭이 도로 폭보다 넓고 평소 주민들이 통행해 사고 위험이 많은 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주 오는 장갑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을 침범, 여중생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고 밝혔다. 또 고소인들은 “이 사고는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이므로 1차적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 있지만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형사재판권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법무부는 미군당국에 재판권포기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의정부지청 담당검사는 “미군들이 출석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나왔다”면서 “시위대에 의한 신변위협과 언론에 의한 초상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한뒤 조사실을 떠났다”고 전했다.

6) SOFA협정 제22조 3항은 ‘공무중의 범죄에 근거해 1차적 재판권은 미군측이 갖게 돼있다. 다만 어느 한측이

요청을 했다.⁷⁾ 그러나 8월 5일 의정부지청은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많은 의혹점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청의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동의견서에서 1)사고차량운행에 관하여 2)통신장애에 대하여 3)사고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 관하여 4)사고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5) 사고차량대열 인솔자의 책임에 관하여 등 5가지 점에 대한 수사미흡과 의혹을 지적하였다. 이어 8월 7일 미군당국은 "동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군이 공무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이미 운전병과 관제 병을 미군사법원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들어 재판권이 양을 거부했다. 이것은 한국검찰이 자체수사결과 미군측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한지 이틀만 이었다. 이후 9월 24일 첫 군사재판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1월 18-23일 사이 동두천 캠프케이시 미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2명 모두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무죄 평결이 있는 지 5일만에 11월 27일, 짙막한 사죄성명을 발표한 뒤 유유히 한국을 떠나갔다. 한편, 미군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무죄 평결 직전 사고 차량 소속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 등 훈련 지휘관 4명에 대해 단지 행정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신청, 9월 말 유족들 각각 총 2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수령했다.⁸⁾

o 시민들의 반응: 촛불시위

이 무죄평결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재판결과에 그 동안 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항의대열에 합류하면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갔다. 여중생 범대위의 주장의 골자는 살인미군처벌, 부시사과, SOFA 개정 등이다.

재판권포기를 요청한 경우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7월 4일 법무부에 '미군형사재판권 포기요청서'를 전달했다.

7)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공무중 범죄라는 점에서 미군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으나, 1)진상규명차원의 미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며, 3)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과 유족들을 고려해서 재판권포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2002.7.10. 참조.

8)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의 불씨, 2002년 10월 (통권 50호), pp.10-12 참조.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11월 30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 12월 7일에는 약 5만명이 모여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사관 앞을 포위했다. 분노는 12월 14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대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월,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은 수 만개의 촛불로 넘실거렸다. 시청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뒤 집회대열은 경찰들과 한 시간 가량 대치하다 광화문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경찰 측은 대사관 인근도로 위에서 전경차를 바리케이트 삼아 줄을 지어 놓고 더 이상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결국 시위대는 대사관까지 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국에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미 당국은 최근의 반미감정이 일부 운동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각계각층에서 대중적으로 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위기를 느껴 미군당국은 11월 27일 주한 미대사를 통해 부시대통령의 간접적인 사과를 전하고, 12월 13일에도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한미 당국은 SOFA 개정이 아닌 개선 방침에도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가운데, 보수세력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왔다.⁹⁾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12월 9일 선거전략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미감정은 위험한 수준”이라며 “잘못된 SOFA는 개정 돼야 하지만, 남북이 여전히 대치중인 상황에서 경솔한 미군철수 주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정권 들어 반미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장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해외 교포단체도 촛불시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민변, 정보 공개 청구

미군사법정에서 가해 미군들에 대한 무죄평결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되자, 여중생

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의 불씨, 2002년 12월 (통권 51호), pp.5-7 참조.

범대위에서는 관련 미군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2002년 12월 4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동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지청은 2002년 12월 17일 1)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2)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3)진술 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변은 이 사건의 경우 두 피의자가 미 군사법정에서 통신장비의 이상유무 등의 여러 정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술을 통해 무죄평결을 받은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관련 된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2월 20일 '정보 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¹⁰⁾

○ 당국의 반응

미군측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진상을 계속 번복했다. 미군측은 우리나라가 미군측의 1차적 재판권포기 요청이 있으면 90% 넘게 포기해왔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권포기 요청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그러더니 미 군사법원에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또한 계속 된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요구에도 뒤늦게 미대사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그쳐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한국정부도 처음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즉, 무죄 평결시에 한국정부는 “아쉽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가리켜 “한국인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 소수에 불과하다”하다고 하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SOFA는 다른 나라 SOFA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고, 공무중에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 타국에서 미군이 재판권을 이양한 사례가 없다고 강변하

10)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의 불씨, 2003년 3월 (통권 52호), p.7 참조.

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957년 지라드 사건¹¹⁾

o 해결은 SOFA의 개정

이 사건 발생 직후 30분에서 1시간 가량 미군당국은 한국 경찰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미군 의무대와 헌병만을 불렀다. 한국 경찰은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 사건 발생을 알았고, 신고 즉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이미 구급차가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던 때였다. 경찰은 SOFA 규정상 사고 운전병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목격자로서 그 전후 정황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이모부는 한국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사건 발생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의정부지청에 미군 피의자들을 고소하기 전까지, 한국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의 기초로 여겨지는 초동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사건 발생 1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필수불가결한 수사방법인 현장검증 한 번 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미군 부대 안에

11) <지라드 사건: The Girard Case>: 1957.1.30. 사건발생. 군마현 소우마가하의 미군연습장에서 당시 46세의 일본여성 사카이 나카가가 21세의 미군병사 윌리엄 자라드(Williamss Girard)에게 살해되었다. 그녀는 생계에 보탬이 되기위해 매일같이 미군의 사격연습이 끝난 후면 빈 화약통이나 포탄 파편 등을 주우러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자라드는 그녀에게 ‘마마’라고 불리내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했다. 그동안 재판권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는 끊임없이 비판받아왔지만 이 사건에서 비교적 격렬하게 미국측과 재판권을 두고 다투었다. 연습장내의 출입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만큼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범행자체가 악랄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물러서게 되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지라드사건의 재판은 일본에서 행하기로 발표되었고 발표 이틀후에 지라드 상등 특기병은 전교지방재판으로 장해치사용으로 기소되었다. 5월 16일 일미합동위원회는 일미 SOFA 제17조 3항 (다)에 의거,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일본검찰은 지라드를 상해치사로 기소. 5.25 미대통령 재판권 포기결정. 6.4. 미국무장관 John Foster Dulles와 미국방장관 Charles E. Wilson은 공동성명에서 " 미국은 이사건에서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The Unites States would not exercise its asserted right of primary jurisdiction inn this case)라는 일미합동위원회(5.16)의 결정을 이행되어야 한다고 함. 최종 판결은 1958년 11월 19일 마에바시 지방재판에 의해 내려졌다. 자라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가벼운 죄명의 판결을 받은지 3주정도후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미국이 일본에 재판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측이 지라드를 살인범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1994년의 일이었다. 어쨌든 일본이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6(Washingtob,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pp.746-47. 에서 공무중범죄에 대해 미군은 재판권을 일본측에 이양하였다.

가서 서있는 장갑차를 보았을 뿐이다. 이처럼 한국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미군의 공무중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검찰 스스로 말하는 대로, 미군의 공무중 사건에 대해 최초로 수사한 사건이다. 공무중 재판권 행사여부와 수사권은 별개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SOFA는 재판권의 귀속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수사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1차적 재판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서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무중 사건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합의의사록이 규정한 대로,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모두 미군이 행사하여왔고, 협정의 재판권 포기 조항은 대한민국의 포기에만 적용되었을 뿐 미군 당국의 포기에는 적용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협정에는 공무중 사건이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판권 포기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불평등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 보존, 피의자의 최초 진술 청취, 이를 위한 최소한의 유치기간 확보, 공동 현장검증, 수사결과의 수시교환 등의 구체적 조치가 협정에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이 사건 무죄평결은, SOFA를 호혜적이고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내용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 정부의 개정 불가 입장은 이 사건 무죄평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나온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1 : 여중생 사건의 일지>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2명 미군 궤도차량에 역과 사망

미8군 사령관 유감 성명 발표

6월 14일: 오후 8시 미2사단 단독으로 현장 브리핑 진행

6월 15일: 장례식, 유족.시민사회단체와 미2사단장과의 면담 결렬.

6월 19일: 한.미 합동조사 결과발표, 미 2사단장 사과.

6월 26일: 여중생 범대위 결성 및 1차 범국민대회, 집회도중 인터넷 방송국기자 두명 미군에 의해 불법 감금.폭행.

6월 27일: 유가족과 범대위 대표, 의정부지청에 운전병,관제병,소속 대대 및 부대장,미 2사단 작전참모, 2사단장 등 미군관련자 총 6명을 과실치사혐의로 고소.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라디오방송에서 “한미합동조사결과 누구도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없다. 운전병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비난여론 확산.

6월 29일: 범대위 자체 진상조사단 현장 조사 진행.

7월 3일 : 미군측,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 혐의로 미군사법원에 기소.

주한미군사령관 사과표명.

7월 4일 : 주한미군사령관 사과.

7월 10일: 미군 2명 등 10여명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두후 ‘신변불안’과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떠남.

7월 10일: 법무부, 미측에 1차적 재판권포기 요청

7월 19일: 미2사단장 이취임식 및 출국저지투쟁.

- 7월 19일: 경기도, 이임 미군 2사단장에게 감사패 전달
- 7월 20일: 법무부, 피해자 1인당 1억 9천 6백억여만원의 배상금 지불 결정.
- 7월 26일: 국회의원 26명, 미국의 재판권이양 촉구 성명 발표.
- 7월 29일: 의정부 지청, 미군피의자 2명 소환조사
- 7월 30일: 주한미대사 허바드, 한국 국방장관과 만난자리에서 사과표명
- 8월 2일: 콜린 파월 미 국방장관, 한미 외무장관 회담시 사과표명
- 8월 5일: 의정부지청, 사고조사결과 발표
- 8월 6일: 민변, 의정부지청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성명서)
- 8월 7일: 미군측,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 공식 거부.
- 8월 7일: 국방부, '미군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 8월 7일: 외통부, 주한미군 관련사건 예방 및 처리체계 개선안 발표.
- 8월 9일: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사과표명.
- 8월 13일: 토마스 B. 파고 미 태평양사령관, 국방부장관에게 사과 전달
- 8월 29일: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차관, 한미협의회 연설에서 파월 국무부장관을 대 표하여 사과표명.
- 9월 18일: 여중생 추모비 제막식
- 11월 18일-22일: 미군사법정에서 관제병과 운전병 모두 무죄평결
- 11월 26일: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매일 광화문에서 추모 촛불시위 열림.
- 11월 27일: 부시대통령, 주한미국대사 통해 간접 유감 표명
- 12월 2일-11일: 여중생 범대위 미국에 대표단 파견
- 12월 3일: 한나라당, SOFA 개정 국회결의 안 제출
- 12월 4일: 여중생 범대위(민변), 서울지검에 정보공개청구

- 12월 5일: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유감표명
- 12월 11일: 한미 외교. 안보 당국간 회의에서 SOFA운영개선 특별팀 구성 합의.
- 12월 13일: 부시 미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감표명.
- 12월 14일: 여중생 사건 이후 최대규모의 범국민대회(전국적으로 10만여명 집결)
- 12월 16일: 미군당국이 무죄평결 직전 사고차량 소속 중대장,중대 선임하사,소대장,소대 선임하사 등 훈련 지휘관 4명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 12월 17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 범대위(민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 12월 28일: 노무현 당선자, ‘촛불시위 자제해 달라“.
- 12월 30일: 외교통상부, ‘초동단계 수사 등 협력강화방안 요지’ 발표.;
- 12월 31일: 서울 종로1가와 교보문고 앞 도로를 비롯하여 제야 30만 촛불 대행진 전국 62곳,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열림.

2003년/

- 1월 3일 : 촛불시위 처음 제안자, 김기보씨,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여중생 밤대위와 별도로 평화와 반전을 이야기하는 촛불로 가자’고 제안.
- 1월 9일: 범대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범국민요구안 발표.
- 2월 20일: 범대위(민변),‘정보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
- 3월 5일: 범대위, 광화문, 촛불시위 100회를 기록.
- 3월 13일: 서울 경찰청, 광화문 촛불시위 불허 방침에 범대위 반발.
- 3월 24일: 이라크 전 발발 이후 광화문에서 추모와 반전시위의 촛불시위 지속 됨.
- 4월 27일: 여중생 추모탑 광화문 설립 예정.

2. 여중생 역과사고에 대한 무죄 평결의 문제점

일부에서 미국법상 볼 때 이 여중생사건의 무죄평결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 우리언론과 시민단체(범대위 중심)가 항의시위를 못마땅해 하는 논조이다.¹²⁾ 따라서 우리여론이 사실과 보편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보편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여론이 아닌 미군법정이라고 본다. .

한마디로 법은 상식이다. 재판 판결이 국민의 절대적 다수의 법감정에 매우 미달일 때에는 법자체가 문제이든지 법적용이 문제이든지 둘 중 어느 하나이다.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삼는 것은 우선 미국법 절차에 충실한 재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우리시민단체가 문제삼는 첫 번째 논점은 영미법에 의한 재판진행과정조차도 과연 성실하고 공정하였는지에 있다. 둘째로는 실체적 진실에 자유로운 접근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초동수사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여론이 아니라 일부 무죄평결옹호론이 당연시하는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보편적 논리’이다. ‘사실’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통신장비의 이상유무에 미군검찰과 한국검찰사이에는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 론자는 당연하게 합의한 실체적 진실로 보고 있다. ‘보편적 논리’에서 미국법도 아니고 한국법도 아닌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공통의 보편논리가 여기서는 SOFA인데,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어렵다.

그런데 일부 무죄평결 지지론 자는 이번 미군법정이 재판진행과정도 공정하고, 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실체적 진실을 옳다고 너무나 당연시하는 전제하에 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 이번 재판은 배심원구성의 공정성, 한국 측 증인의 불채택, 재판진행과정에서 보여준 미군검찰의 과실치사죄 공소유지에 대한 소극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 처벌이 없는 재판이라는 점 등의 솔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영미법에 따르더라도 미군법정이 증인채택을 공정하게 하였는지 그리고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한 적극성을 성실하게 보였는지를 포함하여 재판진행전체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재판진행의 문제점은 미군병사 레리상병이 지난 11월 22일 성조지에 기고

12) 윤남근, 거꾸로 본 여중생 사망 사건, 대한매일, 2002, 11, 26, p.6 참조.

한 “여중생사망은 지휘관 책임”이라는 주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¹³⁾

둘째로 이번 재판의 쟁점이 “통신장비의 장애 有無”라는 실체적 진실 확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측은 관제병과 운전병이 최선을 다했지만 통신장비의 장애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검찰은 통신장비에는 문제가 없으며 관제병과 운전병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했더라면 이러한 치사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이한 의견차이는 초동수사에 대한 미흡으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초동수사 강화는 현재의 현행SOFA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SOFA는 한국수사당국의 초동수사를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현행 SOFA는 형사 관할권 분야에서 피의자신병인도시기를 종전의 최종판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준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부속협정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점, 변호사도 아닌 단순한 미군관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 그리고 기소 후 한국 수사당국의 심문금지, 형사관할권의 핵심판단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주체를 한국법원이 아닌 미군장성급으로 한정하는 등 과 같은 독소규정 등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미군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영미법적 두터운 보호막을 쳤다. 그런데 이런 개정 SOFA의 문제점이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개정SOFA가 한국의 형사사법주권을 과거 SOFA보다 더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의 교훈은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발생한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의 재발 방지에 있다. 그것은 초동수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을 지닌 불평등한 SOFA를 조속히 개정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중요성은 미국법상 민형사상 책임론의 부주의 기준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왜곡된 사실(통신장비 이상)과 불평등한 보편적 논리(SOFA)로 초래한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고 보겠다.¹⁴⁾

13) 여중생 사망은 지휘관책임, 주한미군 다른 퀘도차 운전병 ‘성조지’에 기고, 중앙일보사, 2002년 11월 27일, p.30 참조.

3. 여중생 사건과 SOFA의 문제점

위의 논거에 근거해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관해 미 군사법정이 미군 피고인들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후, 온 국민이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우리 정부는 미군의 재판권을 존중한다면서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 무죄평결은 공정한 재판의 결과라는 미군 측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현재 협정 개정이 아닌 한미합동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협의를 미국측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미 군사법원의 재판은 애당초 공정한 것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군 재판은 믿을 수 없다거나 미군 재판의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재판의 구조와 이 사건의 특징적 경과로부터 나오는 문제이다. 정부의 미군 재판 존중 입장은 이와 같은 경과를 무시한 일반론일 뿐이다.

협정 운영 개선만으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가 불평등한 협정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한미합동위원회 운영 개선만으로 이 사태가 잠재워질 수 없는 이유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고, 신병인도 시점의 부분적 개정에 지나지 않았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에 대하여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개정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군사훈련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재판권의 귀속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수사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1차적 재판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일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서의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무중 사건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합의

14) 이장희, 바로 본 여중생 사망재판, 대한매일, 2002. 29, p.6.

의사록이 규정한 대로,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모두 미군이 행사하여왔고, 협정의 재판권 포기 조항은 대한민국의 포기에만 적용되었을 뿐 미군 당국의 포기에는 적용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협정에는 공무중 사건이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판권 포기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불평등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 보존, 피의자의 최초 진술 청취, 이를 위한 최소한의 유치기간 확보, 공동 현장검증, 수사결과의 수시교환 등의 구체적 조치가 운영개선이 아니라 협정에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이 사건 무죄평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호혜적이고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내용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 정부의 개정 불가 입장은 이 사건 무죄평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나온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무죄 평결에 대한 최종 평가

지난 2002년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발생이후 온 국민과 시민단체가 거의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이하 SOFA)에 규정된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미군당국은 끝내 지난 2002년 8월7일 거부했다. 그 이유는 공무(公務)중 형사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에 형사관할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2002년 7월 4일 미군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함으로써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주일미군이 일본여성을 사살한 윌리엄 지라드(W. Girard) 사건(1957)¹⁵⁾ 이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중 재판권이양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선례로 볼 수

있다. 이 일본여성은 미군의 점심 휴식간에 미군연습장 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발생 직후 미군 측은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1차적 재판권이양을 거부했다. 그러나 ‘평상시의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일본내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 재판권을 포기했다. 16) 개략적인 사태수습과정을 보면 공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¹⁷⁾ 후자는 미군이 기소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SOFA규정상 관할권포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SOFA에는 한국에서 양형 집행 중에도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는 상태이다.¹⁸⁾

우리 법무부가 지난 2002년 7월 10일 형사관할권포기를 요청하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절대적 주권의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사당국이 직접 피의자를 접견하는 등 초동수사를 자유롭게 해서 조속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개정 SOFA의 큰 성과로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이후로 앞당긴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개정 SOFA는 또한 기소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등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줌으로써 기소이후 신병인도가 한국 수사당국의 초동수사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15) 지라드 사건에 대해서는, De Lupis, Ingrid Detter, *International Law and the Independent States*, 2nd ed. Hans: Gower, 1987, pp.105-106 참조.

16) 지라드(Williams Girard) 사건개요: 1957년 1월 30일 일본 군마현에 있는 미군연습장내 출입금지장소에서 생활고로 탄피를 줍던 주부 사카이 나카(46)씨가 미국 제1기병사단 8연대의 윌리엄 S. 지라드 하사관의 총탄에 숨졌다. 1957년 일본 지라드 사건은 여중생압사 사건과 완전 유사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사건직후 미군당국은 공무수행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1차적 재판권을 주장하였다. 당시 미일 SOFA에 따라 공무중 범죄라 하더라도 미측이 재판권을 갖되, 다른나라가 1차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요청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한다고 되어있다. 일본내에서는 평시에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의 범주에 들어가는나며 미-일SOFA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재판권포기주장에 따라 재판권을 일본에 이양하였고, 지라드는 1957년 11월 19일 일본법정에서 정년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M.M. Whitman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6(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p.746-747.

17) 1957년 5월 16일 미일합동위는 위의 일본의 지라드 사건에서 미일 SOFA 제17조 3항 (다)에 근거하여 미국은 일본의 재판권포기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이양하였다.

18) 합의의사록 제22조 제7항.(나): “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현재 이 여중생 압사사건에서도 통신장애에 관련하여 미군당국의 발표와 검찰의 발표가 매우 다르다. 미군당국은 통신장비에는 문제가 없고, 차량소음과 무선교신혼선으로 운전병이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반면, 한국 검찰은 통신장비불량 등으로 운전병이 관제병의 지시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실제적 진실에 대한 혼선은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한 SOFA 규정상 형사 관할권 이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웃 일본은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생 성운간사건이 터지자 오키나와 주지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 공식으로 항의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SOFA 신병인도 시점까지 더욱 앞당기는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군범죄사건에서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 명백히 미군의 과실로 우리나라 여중생 2명이 궤도차량에 충격, 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를 우리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다. 개정SOFA는 공무 중 범죄로 미국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 재판관할권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러한 재판권포기를 미국에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SOFA 규정상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SOFA 자체가 불평등하게 미국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다면 미군범죄로부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또 SOFA의 재판권과 초동 수사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돼야 할 것이다.

Ⅲ. 동두천 주한 미군트럭 김명자 씨 역과사고 (2005.6.10)¹⁹⁾

1. 사건 개요²⁰⁾

2005년 6월 10일 13:50분 경 대관령 우유배달원 김명자 씨가 손수레를 밀며 무단 횡단하 다가 동두천시 생연동 447번지 동두천 정형외과 앞 3번국도 노상에서 미군용 트럭에 의해충격, 역과되어 치사하였다. 운전자는 미8군 헌병대 소속 부라이언 제프리(Jeff Bryant, 당 18세,남, 일병), 선탍자는 콕 카산드라 대릴레(Cassandra Daryliell, 여,27세, 병장,군수담당), 피해자는 대관령 우유배달원 김명자씨(당 50세,여)였다. 사고 차량은 전투용으로 미군용 LMTV 2.5 톤 화물차량(높이 2.7m,전장 6.4mm, 폭 2.3m. 운전석 1.7m) 이었다. 선탍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위치가 2차로에서 1차로 보행 시 이며, 당시 운전자의 위치에서는 발견이 불가능 하다고 함. 운전자 및 선탍자 위치에서 중앙선에서 위치한 피해자 발견 못함. 운전석에서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고, 창문이 개방, 소음이 매우 심한상태였고, 운전자가 선탍자 말 듣지 못함. 피해자 중앙선 위치시에 운전자 및 선탍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²¹⁾

2. 수사사항

- 최초 신고접수: 6.10. 14:01 : 양주경찰서 지령실 신고접수; 동두천 지구대 출동,

19) 양주경찰서, SOFA 교통사망사고(2005.6.10) 참조. (이하 양주 경찰서 SOFA 교통사고)

20)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위해 경찰청의 도움으로 양주경찰서의 담당 형사를 만나서 토론을 하였고, 함께 실제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다.

21) 상계서.

현장 보존, 운전자, 선탍자 및 참고인 확보.

- 교통사고조사요원 현장 도착: 6.10. 14:20 분경: 미 2사단 헌병대와 합동조사 실시.
목격자 확보 사고 경위 확인, 미 2사단 헌병대장에게 미정부대표 출석 요구
(SOFA 운영개선 합의사항-미정부 대표 24시간 대기 및 통보후 1시간내 출석)
- 사체 확인: 6.10. 15:20분경 동두천 성모병원 사체확인 및 검시의사 소견청취.
- 목격자조사; 6.10. 16:50분경. 목격자 양종기,박기본, 최호일 상대 조사.
- 미정부대표 출석: 6.10. 17:30 분경; 양주서 동두천지구대로 출석하였으나,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기로 협의.
- 운전자 및 선탍자 조사: 6.10. 20:00-21:30분경 ; 미정부 대표 입회 임명장 확인 후 조사시작, 미란다원칙 고지(1차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 중간수시결과발표:6.10. 21:20분경: 경비교통과장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 신병인도:6.10. 22:00 경 : 1차 조사후 구금 인도 요청서에 의해 인도 함.
- SOFA 사건 발생 통보; 6.11. 09:00 경: 의정부 지검 SOFA 담당 검사, 하충현.
- 미군측 유족방문: 6.11. 13:20분-13: 45분경. 미 2사단장 및 한미연합사 유족방문, 위로금 500만원,전달. 유족측의 장례진 현장 재조사 실시 요구.
- 실황조사 실사: 6.12. 05: 30-16:15분경: 통 46명 참석(경찰/경비교통과장 등 30 여명, 미군/미정부대표 등 13명, 유가족 3명 참석)
- 민노당 대표 서장실 방문: 6.12..14:40분-15:30분경: 민노당 대표 김혜경등 11명 면담, 새벽에 기습 실황조사를 한 이유, 운전자 고의성 여부.
- 2차 출석 요구 및 조사: 6.13.13:00-15:00 경, 운전자에 대한 보강수사,
- 6월 15일 10:00 선탍자 및 카투사 참고인 조사.
- 송치; 6.24. 09:00 경. 사건기록 일체 의정부 지검.²²⁾

22) 상계서

3. 사건 결과 처리와 재판권 행사문제

- 미군당국이 미군운전병에 대해 한국 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없이 추가 운전교육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만일 이번사건이 한국사법당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받았다면 당연히 유죄를 인정받고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미국 측 조치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 행사키로 한 후에 이를 중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경합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의 경우 1차적 재판권에 관계없이 수사는 가능하며, 따라서 공무 중 사건이고,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키로 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사건의 가해자를 처분하지 않은 미군의 처분에 대해, 한국 법무부 당국은 이에 대해 “미8군 소관사항”이라고만 답했다.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홍구)”는 2005년 11월 날짜로 법무부 검찰 4 과 전성원 검사 앞으로 미군 처분에 대해 추가 질의서를 보내 항의하였다.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행사키로 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 재수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23) 이에 앞서 상기 비상대책위는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에서 법무부당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요청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24)

23)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동두천 미군트럭 故 김명자 씨 압사사건’ 미 측 무죄 처분 관련 추가 질의서(2005.11.6) 참조.

24) 의정부지방법검찰청귀중, 고발장, (강홍구 외 3인, 2005.7.20) 참조.

4.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새벽시간 실황조사²⁵⁾

0 문제점

- 유가족 장례일정에 맞추어 새벽시간 실시.
-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에서 ‘기습실황조사’라는 비난

0 개선사항

- 중요사건발생시 사고시간에 맞추어 실황조사실시

2) 수사발표내용 혼선

0 문제점

- 경비과장 수사 중간발표시 운전자의 사고경위만 설명(6.10 21:20)
- 경찰서장은 민노당 대표 면담시 선탑자가 피해자를 보았다고 설명하여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6.12 14:40)

0 개선사항

- 수사결과 발표의 일관성 유지
- 중간수사발표내용 참고하여 추가내용 발표

25) 양주 경찰서 SOFA 교통사고, 전계서.

3) 미 정부 대표 지연출석²⁶⁾

0 문제점

- 통보 후 1시간 내에 사건관계자와 출석해야하나 현실적 어려움.
- 본건 역시 2시간 10분 후에 출석하였으나 임명장 미소지로 20:00 이후에 진행됨.

0 개선점

- SOFA 운영개선 합의사항 미군 측의 준수 촉구
- 미 정부대표의 24시간 대기 및 통보 후 1시간 내에 출석.

4) 초동수사시 신병처리 미흡²⁷⁾

0 문제점

- 사고현장에서 미군헌병이 출동, 사전 신병을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절차 생략.

0 개선사항

- SOFA 사건처리 매뉴얼 지속 교양, 처리절차 절대 준수.

26) 상계서.

27) 상계서.

5. 동두천 압사 사건에 드러난 초동수사의 평가

이 사건에서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수사발표내용의 혼선이다. 과연 미군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지 못했나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즉, 경비교통과장은 수사중간 발표시 운전자의 사고경위만 서명하고, 경찰서장은 민노당 대표 면담시 선탁자가 피해자를 보았다고 설명하여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을 갖게 했다. 미군 운전자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당시 미군차량은 주행 중이 아니라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 중이었다. 차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모를까,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중해 있던 상황에서 차량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로 초동수사시 신병처리가 미흡하다. 사고현장에서 미군헌병이 출동하여 사전 신병을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형행범인 체포절차를 생략해 증거와 피의자 신병확보를 하지 못했다.

셋째로 사건 발생 후 1시간이내에 미국정부 당국자가 출동을 하지 않았다. 사건 피의자가 사건 발생 3시간 40분 후인 17:30분경 동두천 지구대에 출동하였으나 미 정부 임명장을 제출한 20:00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SOFA 합동 위 합의를 어기고 시간을 지연시킬 때조차도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넷째로 지구대경찰을 포함한 전 경찰관이 SOFA 사건 초동수사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SOFA 사건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교통조사계가 SOFA 수사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았다.

IV.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

지난 2002년 6월 13일 2명의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한 압사사건의 수사진행과정과 2005년 6월 10일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01년 개정된 SOFA가 아직도 경찰의 초동수사를 진행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선 SOFA의 민사관할, 환경, 노무, 시설과 기지 등 다른 문제는 별개로 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2001년 개정 SOFA의 가장 큰 성과라는 형사관할권에서의 문제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초동수사의 장애물을 짚어본다.

그러면 두 여중생 사건 및 동두천 압사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현행 개정 SOFA(2001)의 형사 관할권과 사설구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에서 살펴본다.

1. 한미 SOFA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1966년 체결된 한미 SOFA는 4가지 문서로 구성된다. SOFA 본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가 그것이다.

1991년 제1차 개정에서는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양해사항과 교환문서를 양해사항 하나로 합하여, 현재 SOFA는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총 3가지 문서로 되어 있다.

한미 SOFA의 본협정은 타국과 유사하나, 부속협정(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은 본협정

의 내용을 매우 제한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개정 SOFA도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의 독소조항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오히려 영미법적인 독소조항을 더 첨가하였다. 미일 SOFA, 나토 SOFA 그리고 필리핀 SOFA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부속문서에 담지 않고 있다.²⁸⁾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한미 SOFA는 2001년 개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 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분하에 지나치게 영미법적 형사소송절차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이번 여중생 압사사건에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주요한 장애가 되었다. 이것은 같은 대륙법국가인 일본 SOFA와 독일 SOFA에는 없다. 이것은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2001년 SOFA 개정시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종전의 확정 판결에서 기소 이후로 앞당겨주는 대신에 한국측은 지나치게 미군 피의자 인권보호규정을 너무 양보하였다. 특히 SOFA 제22조 합의의사록은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²⁹⁾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한미 SOFA 제28조는 본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28) 이장희, “한미 SOFA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 방향”, 불평등한 한미SOFA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공동 주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한미SOFA 개정 토론회 (2002.12.12) 자료집, p.5 참조.

29) 상계서

관한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 합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그 구성이 양정부 대표 1명과 그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며,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미주국장이 대표한다. SOFA 규정을 보면, SOFA 운영상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합동위원회가 협의과정의 비공개성과 참가범위의 배타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³⁰⁾

우선 한미간의 주요한 사항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참가자가 정부 해당부처 실무자에만 한정되어,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합동위 산하 분과위에는 반드시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한미 SOFA는 1966년 제정되어 1991년, 2001년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그러나 한미 SOFA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닌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의 독소조항은 1966년 제정 이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1960년대 냉전시대 한미관계의 시각을 반영한 한미 SOFA는 1990년대 탈냉전이후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음을 미국 국무성 Nye 차관보도 1995년 동아시아전략보고서에서 인정한 바 있다.³¹⁾

더구나 한국의 민주적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법제도의 발전을 인정하고, 21세기에 걸 맞는 한미간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한미 SOFA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³²⁾

30) 상계서.

31) 상계서.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냉전시대에 제정되어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미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SOFA의 불평등성의 시정은 그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상주병권을 인정한 점³³⁾, 미군 주둔의 목적규정이 결여된 점, 철수에 관한 협의규정이 결여된 점, 주한미군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점, 공동 방위지역이 제한된 점,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규정한 점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포된 조약으로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편중된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상의 평등성과 상호성의 결여는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된 한미군사관계와 지역적 안보체제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³⁴⁾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SOFA 본협정 제5조 1항의 [주한미군주둔경비의 미군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1991년에 부속문서로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³⁵⁾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무상 토지와 시설 외에도 1991년 1억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1년 4억4천400만 달러, 2002년은 10.4% 증가된 4억9천만 달러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다. 이것은 국방비 증가율보다 높아 분담금 증액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32) 이장희, SOFA를 개정해야하는 이유, 신학춘추, 2002년 9월 24일, p.9.

33) 이장희 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년 7월, pp.56-57 참조.

34) 강병규, “한미군사조약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6권 1호, 1961), 114-123쪽. 이장희,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SOFA의 시설과 기지조항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제42권 2호, 1996), 147-148쪽.

35) 상계서, pp.70-74 참조.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혼혈아들은 미군아버지를 두었지만 미국시민이 아니다. 미국법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미국시민권을 얻으려면 18세 이전에 아버지가 미국시민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외모 때문에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매춘여성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찍혀있다.

그런데 주한 미군기지촌에 있는 여성들과 혼혈아의 인권보호 조항이 전혀 없다. 독일 보충협정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1956.4-1959.8)에는 미군 주둔 지역의 기지촌 여성보호와 혼혈아보호를 위한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규정이 들어 있다.³⁶⁾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독일여성과의 사이에 혼혈아동을 둔 미군이 아동의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8. SOFA의 형사재판관할권의 문제점의 요약

우선 현행 SOFA(제22조 3항‘가’-2)는 공무중 범죄인 경우에 미군이 무조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기계적으로 갖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설사 공무 중 범죄라도, 이번 사건처럼 그 범죄의 성격이 매우 악의적이고 심각할 때에는 접수국인 한국이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재판권 이양을 받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 개정 이전에라도 SOFA규정상 보장된 권리도 정부당국이 그 동안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한 예로 현행 SOFA(제22조 3항-‘다’)는 제1차적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는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번도 공식적 포기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반면 미군당국은 매우 빈번하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 한

36)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간담회(2000.9.19) 자료집, pp.23-29 참조.

국에게 1차적 재판권을 양보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법무부가 미군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그 포기요청시기가 좀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1957년 5월 16일 미일합동위는 위의 일본의 지라드 사건에서 미일 SOFA 제17조 3항 (다)에 근거하여 미국은 일본의 재판권포기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이양하였다.³⁷⁾

둘째, 형사재판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재판권 행사문제 SOFA 합의의사록(제 22조 3항/나)에는“한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수많은 미군 범죄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 당국은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³⁸⁾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법무부에서 담당 검사의 재판권행사의견을 검토하여, 결정해서 통상 28일 이내에 미군당국에 통보하게 된다.(양해사항 제22조 3항/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미군 측에서 포기요청서를 보내오고, 한국 측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1999년 3.56%, 2000년 7.4%, 2001년(1월 7월) 7.6%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번 2001년 SOFA개정에는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셋째, 2001년 SOFA(본협정 제22조 5항 다)에서, 신병인도 실패를 과거 최종판결 후에서 기소이후로 앞당긴 것을 큰 성과로 꼽지만, 까다로운 전제조건 때문에 기소시 구속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볼 때, 전제조건이 삭제가 요망된다. 즉, SOFA 합의의사록에서(제22조 5항/ 다) 기소후 신병인도를 받기위한 4가지 조건이란 1)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2)기소시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일 것 3)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살인, 강간 등 12개 범죄로 한정 4)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을 것 등이다. 위의 4가지 조건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기소후에도 형사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었다. NATO SOFA(제7조 5항/다) 및 일본 SOFA(제17조 5항/

37) 이장희 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도서출판 아사연, 2000년 7월, pp.96-97 참조.

38) 상계서.

다)에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소이후면 신병인도가 신속히 이루어졌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록 미일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지만 1995년 오키나와 초등생 미군병사 성 윤간 사건을 계기로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이전에도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39)

넷째, 한국측에서 체포해 구속수사중인 미군범죄 중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은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개정 SOFA의 또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지만, 후속조치의 미흡과 까다로운 전제조건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유형은 향후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 이 체포시 계속 구금권 행사도 까다로운 4가지 전제조건이 붙는다. 즉, 4가지 전제조건으로는 1)현행범일 것, 2)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4)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것 등이다.

다섯째, 개정 SOFA에서 재판전 미군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를 규정한 특혜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대표의 입회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과 검찰권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조항, 기소후 한국 수사당국의 피고인 심문금지,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의 재판과정에서의 불사용, 형집행에 관한 미측의 특별 요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재판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될 것 등 한국의 형사사법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구금시설은 내국인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미국민간교도소 수준일 필요도 없고, 한국주둔 미군 시설에 준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중요범죄라 하더라도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측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 당국이 제대로 심문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소 후 불신

39) 이장희 외,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2001), 아사연 학술포럼시리즈 2002-1,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2. pp.8-9. 참조.

문'은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에 대해 아예 “신문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다. 중요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 것이 이 규정 때문에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기소 후 불신문’은 중요범죄 미군피의자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측이 계속 구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신문, 증언, 증거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사면을 보장해 주고 있다.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설된 규정들은 미군피의자가 어떻게든 사법적 처리를 면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준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밑에 한국의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였다.

여섯째, 공용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SOFA 개정을 해야 된다. 보험가입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므로 가난한 피해자로서는 치료비를 내지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호주 협정9제12조 5항)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공용차량을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독일보충협정(제11조)에 의하면, 미군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사유차량과 항공기에 대해 보험에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재판권 행사의 판단기준인 공무 여부 판단의 주체 문제도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한미SOFA 본협정(22조 3항-가-2)에 의하면 “공무 중 일어난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즉 공무 중 일어난 범죄는 한국의 사법 당국이 전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 여부의 판단은 합의의사록(22조 3항 1)에 미군이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 미군 장성급 장교만이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수정이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증명서는 결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의 사법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일본 SOFA는 최종적으로 일본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여덟째, 과거 SOFA는 형사재판권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였는데, 2001년 개정

에서도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 1991년 SOFA는 형사재판권의 적용대상을 미군, 군속,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자”로 정의 내렸다. 특히 여기서 ‘기타 친척’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SOFA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단서조항을 두어 ‘초청계약자’까지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속은 물론이고 그 가족, 친척, 초청계약자들까지도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 부분 역시 ‘합중국 군대의 군법에 따르는 자’로 한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2001년 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 겨우 그것도 공식문건도 아닌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기타 친척”의 범위를 조금 구체화시킨 점과 합중국당국이 확인한 자 정도로 개정했을 뿐이다. NATO SOFA는 “배우자와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로 국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족의 범위에 ‘기타친척’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다.

아홉째, 미군과 군속의 대물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25,000(한화 약 200만원 상당)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개악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이를 제기하는 경우는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3조, 청구권 1호) 그런데 국내적으로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입건된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일본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이 불입건하고 또 미군에 의한 대물 교통사고는 과거 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극히 드물고 배상만 보장되면 실익없는 입건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미군범죄의 70% 이상이 교통사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권을 미군측에 넘기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문화를 감안하지 않는 처사이다. 이것은 현행 SOFA의 개악이며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이다. 상계서, p.11.참조.

열째, 본 협정 SOFA 제22조 11항에서 적대행위발생시 또는 계엄령 선포시 형사재판권의 즉시 정지도 개정되어야한다. 본협정 SOFA 제22조 11항은,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나마 본 협정상 한국의 형사재판권은 즉시 중단되고, 미군의 전속적 재판권이 행사된다. 이 경우 “적대행위”의 개념이 막연히 규정

된 것은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적대행위“도 전면적인 전투발생에만 적용토록 한정, 규정해야 할 것이다. 미-일 SOFA 제17조 11항, NATO SOFA 제15조 2항도 60일전 사전 통고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미일 SOFA 제17조 11항은 ”상호방위조약 제5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와 미국정부 중의 어느 일방도 타방정부에 60일전예의 사정통고에 의하여 본 조의 적용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양정부는 정지된 규정을 대신할 적절한 규정을 합의하기 위하여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이번 2001년 개정 SOFA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재판권 포기조항, 공무판단문제 등)는 전혀 개정하지 않은 채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그것도 모든 피의자가 아니라 12개범죄로 한정하는 중요 피의자의 경우에만 앞당긴—데 불과하며, 더구나 미군피의자가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준 개약안으로 ‘사법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민족적 요구를 외면한 개정안이다.

끝으로 이번 여중생 압사 사건진행을 볼 때, 현행 개정 SOFA 조차도 미군당국이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고있다. 예를 들면 본 협정 제22조 6항은 미군당국이 범죄수사에 상호조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쌍방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중생 사건에서 본 것처럼 미군당국은 수사조력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SOFA의 형사관할권의 문제는 SOFA 많은 문제점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SOFA의 형사관할권의 상당한 내용들은 타국에 비해 아직도 한국의 형사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물론 여중생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은 재판권이양을 거부하면서 SOFA 개정정보다는 “미군범죄발생시 통보의무조항”과 “한국경찰의 초동수사 단계 참여”를 한미합동위에서 합의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 SOFA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따가운 여론 회피용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러므로 한미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정상회담후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향후 SOFA는 한미간에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상호성,주체성,평등성,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재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V. 한미 SOFA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내용과 문제점

1. 경 과

정부는 2002년 12월 20일 이후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SOFA 운영개선 관련 현안을 중점 협의하였다. 이어 “SOFA 특별대책반”이 2005년 초부터 “SOFA 특별합동위”로 개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⁴⁰⁾

※ 한-미 형사재판권 분과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내용

- 한-미 형사재판권 분과위는 ‘형사재판권 분야의 SOFA 운영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초동수사 등 협력강화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41) 42)}
 - (1) 초동수사시 공동현장 접근 및 공동수사 등 협력 방안
 - (2) 미 정부 대표의 상시 1시간 내 출석 방안
 - (3)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방안
 - (4) 수사대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하여 원활한 수사협조를 추구하는 방안
 - (5)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 관련자료 제공에 대한 상호협조 방안
- 상기 형사재판권 분과위의 합의사항은 2002.12.27 SOFA 합동위 합의사항 (Agreed View)으로 채택되어, 일선 법집행기관이 미군형사 사건 처리 지침으

40) 초동수사 강화는 SOFA특별대책반(2002.12.20)--한미 형사분과위[초동수사협조강화방안합의](2002.12.23)-- 한미 합동위 합의사항(2002.12.27) 순으로 진행 되었다.

41) 182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2003.2.5) 운영개선 성과 발표문 참조,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42) 외교통상부, 외교 초점, 초동수사 강화방안 요지(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로 채택 일선법집행기관이 미군형사 사건 처리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한미 합동위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정부 당국이 미군당국에 재판권포기 요청에 매우 소극적 임.

2002년 6월 여중생사건에서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뒤늦게 재판권행사 포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6월 동두천 미군트럭사건에서 정부 당국이 재판권행사포기를 요구한 것을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 여전히 경찰수사권을 제약하는 SOFA 독소조항이 있음

* 예 : 미국대표의 참가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증거 채택불가조항은 전반적으로 초동수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군 피의자가 이 조항을 백분 악용하고 있고, 미군 당국의 비협조도 초동수사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 초동수사 현장 접근 및 공동수사에 대한 미군당국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공동현장 접근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가를 보장할 것.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동현장 접근 및 공동수사가 큰 의미가 없음.

- 실제 미 정부대표가 1시간 내에 출석이 2005년 6월 10일 동두천 트럭 압사사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사건발생 이후 1시간 내에 미국 정부당국자의 출동을 강제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협조는 미군 피의자에게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함.

- 미군이 초상권을 확대 해석하여 수사협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 수사상 필요한 자료 협조는 'SOFA 제22조 6항 가' 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나, 실제로 미군이 준수 및 협조를 하지 않고 있음

3. 전체적 평가

- 초동수사권협조강화협조방안은 초동수사에는 다소 도움 된다고 판단되나, 이것이 한미합동위의 합의사항으로 머물러 있는 이상,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
- 한미합동위원회의 비공개성 및 불투명성은 한미관계의 개선에 장애물 .
 - 합의사항 비공개(밀실에서 합의),
 -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진술기회 및 참여기회 막힘
- 초동수사 강화방안은 한국의 형사주권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형사재판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전혀 삭제하지 않음.
 - 1)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 그러나 일본 SOFA, NATO SOFA에서는 없음.
 - 2) 공무중 범죄중에서 한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와 미군의 시설과 구역 밖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무중 범죄에 대한 한국의 1

차 재판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SOFA 본 협정이나 합의의사록에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 3) 형사재판권과 수사권을 제약하는 미군피의자의 특혜조항을 전혀 삭제하지 않고 있음.(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증거채택 불가능한 조항/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기소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조항 등)
- 4) 형사재판권 적용의 인적 대상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있음 ('기타친척'과 '초청계약자'를 삭제해야함).

VI. 경찰의 SOFA사건처리 요령(2003.1)의 내용분석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이에 따른 미군 피의자의 무죄평결은 연일 전국적인 규모의 SOFA 개정 요구 시위를 야기 시키고, 마침내 반미감정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간 외교문제까지 확대되곤 하였다.

그 동안 일부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SOFA 사건 발생시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경찰청은 SOFA 합동위 산하 형사관할권 분과의 합의사항(2202.12.23)에 이어 이를 수용한 SOFA 합동위 합의사항(2002.12.27)에 근거하여 SOFA 사건처리요령과 개선된 업무지침(2003.1)을 마련하였다. SOFA사건 발생시 최초로 대응하여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올바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SOFA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수사 요령⁴³⁾

1) 체포, 구금

가.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SOFA 대상자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최근거리의 미군 헌병감에게 체포사실을 통보

나. 아래 다 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군 헌병감으로부터 인도요청이 있을 시 검사 지휘로 미국 정부 대표를 출석시켜 SOFA 대상 피의자에 대

43) 경찰청, SOFA 사건 처리요령, 2003.1, pp. 13-14 참조.

한 조사를 시행한 후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하고 즉시 보고

※ 피체포자의 인적사항, 인수일시, 신병을 인수한 미군의 기관명, 신병인수한 자(가 급적 장교)의 계급, 군번,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한 신병인수서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다. 범행현장 등에서 살인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선임되어 미 정부 대표와 함께 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심문을 하지 않음.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우리 수사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SOFA 대상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참여시킬 권리 인정

나. 변호인 참여권 포기

구속 피의자 자의에 의한 변호인 참여권 포기가 가능

3) 기타 구속관련 사항

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

(1) 구속할 경우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속전 피의자 심문 필요

(2)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의 참석이 보장되며, 미 정부 대표 역시 참석이 보장

나. 피의자·피고인이 질병, 부상, 또는 임신 중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 측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속 여부 및 미군 당국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여부 결정시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

4) 대물교통사고 불입건

가. ‘미군인이 범한 200만원 미만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⁴⁴⁾ 또는 ‘미군인 . 군속이 범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중 공무수행 중이었거나, 건당 최소 25,000달러 이상의 대물피해 보상보험에 가입된 사건’은 교통사고(단순 물적피해) 처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써 처리 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하지 않음.

※ 가족 및 초청계약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입건하여 통상의 SOFA대상자 범죄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5) 프라이버시,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

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진촬영 또는 언론보도로 피의자·피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44) 경찰청, SOFA 사건 처리요령(2003,1), p.15 .

나. 피의자 조사, 현장검증 장면을 기자가 촬영, 취재하는 등으로 수사과정
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 SOFA 합의사항 채택에 따른 개선된 업무지침】 < 2003.

1. 1. 시행 >

1) 범죄현장에서의 수사⁴⁵⁾

가. SOFA 대상 범죄현장에서 미군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수사기관은 미군 측의 협조를 얻어 독자적
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 용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나.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때에는 미군 수사기
관이 독자적인 현장조사 등을 희망할 경우 협조를 제공한다.

2)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 정부대표 출석 요구

미국 정부 대표는 하루 중 언제라도 1시간 이내에 출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야간이라
도 미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적극 요구하여 SOFA 대상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전 조
사를 시행한다.

3) 피의자 또는 참고인 소환

45) 상계서, pp.17-19 참조.

SOFA 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 뿐만 아니라 미군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 신분을 가진 참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4) 무죄추정 원칙과 프라이버시 존중

가. 수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촬영 또는 언론 보도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나. 특히 사진기자 등의 수사기관 내부로 초청하여 피의자 등을 사진 촬영하게 하거나 면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명요구

가. 형사소송법 제48조 및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되, 피의자 등이 서명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나. 피의자 등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사관련 자료 등 제출 협조

SOFA 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자료, 장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군에게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SOFA 사건처리절차

경찰서에서 SOFA 대상자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히 현장에 임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⁴⁶⁾:

- 1) 피의자 동행 및 신원 확인
- 2) 기초사실 조사
- 3) 체포사실 미군당국에 통보
- 4) SOFA 대상자 범죄 발생 관할 지점에 보고
- 5) 신병인도전 피의자 조사
- 6) 신병인도
- 7) 송치

46) 상계서, pp.23-26.

Ⅶ. 미일 SOFA, NATO SOFA, 독일 SOFA, 미-필리핀 기지협정 의 초동수사에 대한 비교분석

1. 개 관

1) 미-일 SOFA

일본내에 주둔하는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미-일 주둔군지위협정”⁴⁷⁾(미-일 SOFA)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서명되었으며, 6월 23일에 발효되었다. ‘미-일 SOFA’는 협정본문과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에 있어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VI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Japan) 및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로 구성되어 있다. ‘미-일 SOFA’의 본협정은 ‘한-미 SOFA’와 그 내용이 거의 같다.⁴⁸⁾

47) 정식명칭은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에 있어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VI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Japan).

48) 일본의 경우 일본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기지(총 94개)의 40개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주일미군 총사용면적의 75%에 해당된다.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현의 11%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오키나와 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 일 미군기지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백서 :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문화예술기획 개마, 1997), 193-196쪽 참조.

2) NATO SOFA

1951년 6월 19일 “북대서양조약”⁴⁹⁾ 체결국들간에 런던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으로 일명 ‘런던협정’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체결국간의 협정”⁵⁰⁾ (이하 ‘NATO SOFA’라 약함)은 NATO 체결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출입국관리, 과세 및 관세면제, 형사 및 민사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¹⁾

전문과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NATO SOFA’는 1952년 8월 28일 의정서(Protocol)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주둔지역에 따라 해당 접수국가와의 특별협정으로 보완되고 있는데,⁵²⁾ 1959년 8월 3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체결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보충협정”⁵³⁾ (이하 ‘독일보충협정’이라 약함)은 독일영역내에서의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율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주독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⁵⁴⁾

3) 독일보충협정

49) 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년 4월 4일 워싱턴 서명, 1949년 8월 24일 발효. 북대서양조약의 제3조 (“본조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국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 인 자조(self-help) 또는 상호원조(mutual aid)에 의하여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개별적 및 집단적 능력을 유지 하며 발전하게 한다”)에 근거하여 미국 및 기타 체결국군대가 NATO 체결국영역내에 주둔하고 있다.

50)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London 19 June 1951, 1954년 8월 23일 발효.

51) 원당사국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 총 12개국이다.

52) 전문: 협정체결의 목적, 제1조: 용어설명, 제2조: 접수국의 법령준수의무, 제3조: 출입국, 제4조: 운전면허, 제5조: 복장 및 차량의 표시, 제6조: 무기휴대, 제7조: 형사관할권, 제8조: 민사청구권, 제9조: 생활용품의 조달, 시설과 용역 등, 제10조: 과세, 제11조: 관세 및 통관, 제12조 & 제13조: 관세 및 조세면제와 남용방지, 제14조: 외환규제, 제15조: 종결조항.

53) Agreement to Suppl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with respect to Foreign Forces Statione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onn, 13 August 1959, 481 UNTS 330 (1963).

54) ‘독일보충협정’의 당사국은 벨기에,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총 6개국이다.

1959년 8월 3일 독일의 본에서 체결된 ‘독일보충협정’은 ‘NATO SOFA’를 독일(서독)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전문과 83개 조문 및 ‘보충협정의 서명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f Signature to the Supplementary Agreement)로 구성되어 있다. 동 의정서는 제1부 ‘NATO SOFA에 대한 합의의사록 및 선언’(Agreed Minutes and Declarations concerning the NATO Status for Forces Agreement)과 제2부 ‘보충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및 선언’(Agreed Minutes and Declarations concerning the Supplementary Agre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 7월 1일에 발효된 ‘독일보충협정’은 1971년 10월 21일과 1981년 5월 18일 및 1993년 3월 18일에 각각 개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모두 세차례 개정되었다. 전문과 총 52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3차 개정협정”⁵⁵⁾(이하 ‘1993년 개정독일보충협정’이라 약함)은 기존의 ‘독일보충협정’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들을 신설하였는데, 특히 형사관할권 및 민사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들과 신설된 환경관련조항들(제54조A, 제54조B)은 주둔군범죄의 방지 및 처벌과 환경피해의 방지 및 구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4)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주둔군지위협정에서 基地[시설과 구역]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필리핀은 처음부터 美軍基地에 관한 독립된 협정인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 concerning Military Bases)을 먼저 체결하였으며,⁵⁶⁾ 미국과 필리핀간의 상

55) 정식명칭은 Agreement to amend the Agreement of 3 August 1959, as amended by the Agreements of 21 October 1971 and 18 May 1981, to suppl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with respect to Foreign Forces statione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56) 전문: 협정체결의 목적과 경위, 제1조: 기지의 제공과 그 조건, 제2조: 양국 병력의 상호협조, 제3조: 미군 기지에서의 설비, 사용, 작업 및 방어권, 제4조: 미군, 항공기, 군함 및 공선의 필리핀영역의 출입국 또는 통행권, 제5조: 군용물자수입에 있어서의 관세 및 기타 의무의 면제, 제6조: 정기군사훈련을 위한 영토 및 연안의 사용권 및 조건, 제7조: 공공시설 및 役務의 이용권, 제8조: 급수시설, 보건 및 위생조치, 제9조: 지형,

호방위조약은 1951년 8월 30일에 체결되었다.⁵⁷⁾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은 유효기간이 99년이었으나, 1966년 협정에서 기지임대기간을 25년으로 축소하였다. 1987년 2월에 수립된 민주적 정부는 필리핀 헌법에 비핵지대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1991년 12월 필리핀 상원은 미군기지의 연장을 거부하였다.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은 군사기지내 미군당국의 권리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규정한 점, 사유부동산의 수용절차를 명시한 점, 임대기간을 명시한 점, 미군기지내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한 통보의무를 명시한 점 등에서 ‘한-미 SOFA’와 차이가 있다.

2. 각국의 초동수사 비교

○ 미군, 미군속 등이 주둔지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단순한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주둔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SOFA에 따라 수사에서 재판, 구금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특혜를 부여한 조항이 SOFA 규정이다. 초동수사에 관련 된 법적 근거는 미일 SOFA는 제17조, NATO SOFA 제7조, 독일보충협정 제22조, 한미 SOFA는 제22조에 해당된다.⁵⁸⁾

1) 인적 적용범위

수로, 연안의 측량 및 공중사진의 촬영권, 제10조 : 공동묘지 및 유적의 설치 유지권, 제11조 : 미군, 사용인, 기술자의 출입국권 및 절차, 제12조 : 미군, 가족 및 사용인의 수입세의 면제, 제13조 : 형사관할권의 행사, 제14조 : 체포 및 민형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제한, 제15조 : 필리핀의 미군기지 설비 및 기타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제16조 : 우편국의 설치 유지권, 제17조 : 기지내의 시설의 이전 및 처분권, 제18조 : 기지내에서의 상행위 및 서비스업, 제19조 : 미국 및 필리핀 시민의 商事의 미군기지 및 시설의 사용권, 제20조 : 미군헌병과 필리핀경찰의 협력, 제21조 : 기지밖에 있는 구역 및 설비의 임시점유권, 제22조 : 사유부동산의 수용절차, 제23조 : 필리핀시민의 신체 및 재산의 손상에 대한 민사책임, 제24조 : 광물자원에 대한 필리핀 및 필리핀국민의 권한유지, 제25조 : 제3국에 대한 기지제공조건, 제26조 : 기지의 정의, 제27조 : 미국의 필리핀 시민 지원병의 모집, 제28조 : 미국의 필리핀 거주 미국시민의 모집 및 훈련권, 제29조 : 협정의 유효기간.

57) 필리핀주둔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조약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장희, “필리핀-미국 SOFA 협정과 한미행정협정과 비교”, 『미군범죄, 환경에 관한 각국 행정협정의 비교』 (공청회자료집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5. 3), 27쪽 참조.

58) 한미 SOFA의 주요쟁점별 주요한 국가와의 비교에 대해, 이장희, “한미 SOFA의 불평등상과 그 개정 방향”, 2002년 12월 12일, 민주사회변호사협회 주최,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발표논문집, pp.3-31 참조.

○ 미일 SOFA: 제17조 1항, 군법에 따르는 자만이므로 미국 군대의 구성원만이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행사대상이 됨(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S sha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within Japan all criminal and disciplinary jurisdiction conferred on them by the law of US over all persons subject to the military law of the US).

○ 한미 SOFA: 제22조 3항, 미군의 구성원, 군속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함(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S shall have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or civilian component, and their dependents).

-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other relatives)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그 군속에 의존하는 자[본 협정 제1조 1항 (다) (2)]라고 한다. 여기서 기타 친척은 나토협정 미일 협정에도 없으며, 매우 확대 남용되므로 식제되어야 할 것임.
- 형사관할권 인적범위에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 포함되어 있지만, 타국의 사례 없음.

● 형사재판권의 적용범위가 한미 SOFA는 미일 SOFA에 비해 매우 넓음.

2) 형사재판권 행사제한(전속재판권의 포기)

○ 일반적으로 미군이 공무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 파견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 접수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는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고 다른 상대방은 이를 호의적 고려(sym pathetic consideration)를 고려하게 되어 있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일 SOFA: 포기규정이 없음.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재판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권의 포기에 관해서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됨.

○ 한미 SOFA: 중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원칙

- “합중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합의의사록 제22조 3항 나에 관하여)

- 1차 재판권의 포기, 미군측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에서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해 합의의사록에서는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음.

● 미일 SOFA와 같이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

3) 공무판단의 주체

○ 미군이 공무 수행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SOFA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공무에 대한 판단여부가 매우 중요함. 공무증명서의 발급주체와 유효성 판단 주체는 형사재판권의 행사주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미일 SOFA: 미일 SOFA 합의의사록에서는 공무증명서의 발급주체를 “지휘관 및 그 지휘관을 대리한 자”이며 또 반증이 없어야 하며,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해석하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음.

- 미일 SOFA 본 협정 제17조 3항, a, (ii)에서 미군당국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는 형사절차상 충분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일본국의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근거한다’(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것으로서 결국 일본에서는 공무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주체를 일본법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임.

-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공무에 대한 최종판단을 일본법원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에 대한 판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이 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양국간의 협의기구나 외교채널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알기쉬운 SOFA해설(외교통상부) 참조] .

○ 한미 SOFA: 공무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무의 판단은 미군당국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가 결정적임. 미군의 장성급장교가 발급한 공무증명서가 결정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공무증명서의 발급주체와 유효성 판단주체는 형사재판권행사주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 SOFA의 공무증명서 발급주체는 미군장성급이며, 일선 검사도 이이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에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처음 증명서가 결정적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한-미 SOFA는 공무증명서의 유효성 판단도 사실상 미군장성급이 하게 되어 있다.

- 미일 SOFA가 공무판단자를 “지휘관 및 그 대리인” 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최종판단에도 접수국의 법원이 직접 관여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한미 SOFA는 공무판단자가 미군 장성급 장교로 포괄적인 점과 그 공무 판단의 주체도 사실상 미군 당국임. 미일 SOFA 수준으로의 개정이 요구됨.

4) 신병인도시기

○ 미일 SOFA: 일본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신병인도가 됨 (“...until he is charged by Japan.”(본협정 제17조 6항 (c))⁵⁹).

- 1995년 오키나와 초등생 성윤간 사건을 계기로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이전에도 신병인도가 가능토록 했다.

○ 한미 SOFA: 2001년 개정된 한미 SOFA는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기소이후로 하였음(“...until he is indicted by the ROK.”(본협정 제22조 5항 (c)). 그런데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서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양보함. 기소이후 신병인도조차도 4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기소시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일 것, 12개 범죄,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 때문에 거의 성사된 것이 없으며, 기소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미국대표의 입회없는 심문의 증거능력 부인 등으로 초동수사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짐

○ NATO SOFA도 기소이후이면 무조건 신병인도가 가능하다. 다만 독일보충협정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후에 신병인도가 가능하다.(NATO SOFA 제7조)⁶⁰⁾

그런데 미-일 SOFA, NATO SOFA 에는 신병인도에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다.

● 미일 SOFA, NATO SOFA와 한미 SOFA는 기소이후에 신병인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한미 SOFA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반면에 미일 SOFA와 NATO SOFA는 신병인도에 대한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음. 이는 실질적인 수사권 강화에 상당한 제약요소가 되고 있음. 4가지 전제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

59) Japan: The custody of an accused U.S. member over whom Japan is to exercise jurisdiction shall, if he is in the U.S. hands, remain with the U.S. until he is charged by Japan. (일본 SOFA 제17조)

60) NATO : The custody of an accused U.S. member over whom the German side is to exercise jurisdiction shall, if he is in the U.S. hands, remain with U.S. until he is charged by the German side. (NATO SOFA 제 7조)

5) 구속수사(구금)

○ 미일 SOFA: 가능

- 미일협정에 따르면 범인이 기소된 때에는 일본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한미 SOFA: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구속가능

- 살인, 최질이 나쁜 강간은 계속 구금 가능
- 미국정부 대표의 입회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불인정
- 사실상 구속 수사의 불가능

● 미일 SOFA수준에서의 개정이 필요

6) 체 포

○ 미일 SOFA: 미국군대의 재판권을 적용받지 않는 자가 미군부대에 있을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체포하여 일본국 당국에 인도하므로, 일본국 당국은 미군당국에 대해 일본국 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미군이나 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를 요청하여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피의자의 체포가 한결 수월할 수 있음.

○ 한미 SOFA: 미군당국이 미군부대내에 있는 미군이나 군속, 가족들을 체포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부대내로 도피한 미군, 군속,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체포하기가 어려워짐.

● 미일 SOFA수준에서의 개정이 필요

7)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일 SOFA: 인정
- 미 독일 SOFA: 인정
- NATO SOFA: 인정
- 한미 SOFA: 부인

미일 SOFA, NATO SOFA수준에서의 개정이 필요

8) 경찰권 행사

- 미일 SOFA: 군속, 미군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이 체포했거나 미군시설내에 있더라도 일본당국에 인도
- 한미 SOFA: 미군시설내에서 체포압수 수색 등 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일 SOFA수준에서의 개정이 필요

9)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 한미 SOFA: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등이 대표적임. 한미 SOFA의 특색은 미군피의자에게 영미법적 형사소송절차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였고, 국내법과 달리 많은 특혜를 부여함.

- 미일 SOFA: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미 독일 SOFA: 없음
- NATO SOFA: 없음.

● 이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기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미일 SOFA와 같은 수준의 개정이 필요.

10) 검찰상소권

- 한미 SOFA: 제한
- 미일 SOFA: 명시적인 규정없음.
- 1심보다 형을 적게 받을 권리

11) 형집행권 제약

○ 한미 SOFA: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함(본협정 22조 제7항 (나), 구금형을 복역하고 있는. 구금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합의의사록 제22조 제7항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미일 SOFA: 이러한 규정 없음.

● 형집행권을 제약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은 미일 SOFA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12) 적대행위 발생시 재판권 행사 제한

○ 미일 SOFA: 어느 한 쪽이 60일 전에 상대측에 예고함으로써 재판권 조항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처할 적당한 규정을 협의하기 위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본협정 제17조 11항).

○ 한미 SOFA: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합중국은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본협정 22조 11).

-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정의 적용여부, 적용범위, 적용내용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

Ⅷ. SOFA 관련 형사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SOFA 관련 미군범죄에 대한 경찰초동수사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관련자의 노력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위의 분석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 요소와 더불어 한미 양국 정부의 실천의지와 미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본 인식이 모두 제대로 갖추어져야 입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어 제대로 행사될 수가 있다고 본다.

1. 형사재판권 적용의 인적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본협정 제22조 제1항, 제2 항, 제3항, 본협정 제15조 제8항)

- 가족 개념에 일본 처럼 ‘기타 친척’(other relatives) 삭제할 것
- 현행 협정에서 형사사건관련 적용 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중국 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한정하도록 개정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병인도조항,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형집행시 구금인도조항을 인적범위에서 “군속, 및 ‘그 가족’, ‘초청계약자’(본 협정 제15조 8항)⁶¹⁾ 포함은 부당하므로 배제할 것 (타국사례 없음/방위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61) 초청계약자는 본 협정의 대상자는 아니나,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역할을 인정하여 SOFA 제22조 체포와 구금에 대한 5항,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7항(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9항 및 이에 따른 합의사록에서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파견되는 자에게 형사면책을 주는 것은 부당함)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병인도조항,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형집행시 구금인도조항을 인적범위에서 “군속, 및 ’그 가족’, ‘초청계약자’(본 협정 제15조 8항)⁶²⁾ 포함은 부당하므로 배제할 것 (타국사례 없음/방위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견되는 자에게 형사면책을 주는 것은 부당함)

2. 형사재판관할권을 온전하게 행사해야

-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제22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 (일본 SOFA, NATO SOFA에서는 없음)
-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3. 공무중 범죄중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는 한국이 1차 재판권 행사해야

- 공무중 범죄중에서 한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와 미군의 시설과 구역 밖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 재판

62) 초청계약자는 본 협정의 대상자는 아니나,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역할을 인정하여 SOFA 제22조 체포와 구금에 대한 5항,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7항(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9항 및 이에 따른 합의의사록에서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무중 범죄에 대한 한국의 1차 재판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국회 한미SOFA재개정촉구결의안과 일본 자민당 내 ‘소파를 개정하고 진정한 일미 관계를 도모하는 모임’의 SOFA개정안에서 동일한 조항이 있음

4.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앞당길 것

-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시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고, 2가지 전제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다)에 관하여 1.,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다)에 관하여 3.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다) 3.)
- 2가지 조건 :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12개 범죄 한정된 점

5. 경찰의 초동수사, 예비수사를 방해하는 법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일정시간(24시간 등) 구금하여 실질적인 초동수사, 예비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1.)
- 미군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 및 예비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체포 후 즉시 미국당국에 신병을 인도함에 따라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함. 2005년 6월 10일 동두천 미구트럭 압사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남.

6. 계속. 구금의 장애물 삭제해야

-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를 한국이 체포한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4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 (합의의의사록 제22조 제5항 (다))
- 4가지 전제조건 : 범행현장 또는 합중국 통제구역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 침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7.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 (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7항 (나), 제9항 (나),(라),(사), (차),(카),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6.,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10.)

- 미국 대표의 입회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하게 한 조항을 미국대표도 입회가능 조항으로 개정
-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증거채택 불가능한 조항 삭제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기소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조항 삭제
- 무죄 판결시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일반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사법부에 대한 불신
- “한국은 재판전 구금 또는 구속 시설이 합동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의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조항 삭제

8.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한국법원이 해야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법원이 공무증명서의 유효성 판단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합의의사록 22조 제3항(가)에 관하여, 양해사항 제22조 제3항 (가))

- “일정기간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 처음 발급한 증명서가 결정적이다.”조항 삭제 (제22조 양해사항 제3항 (가))

9. 미군병사와 SOFA 관련 사건 담당 한국경찰에게 SOFA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교육 강화.

- 미국병사에게 한국문화 정기적인 적응교육
- 미군병사에게 SOFA 및 초동수사 지침 교육
- 우리경찰에게도 [SOFA 사건 처리 요령]을 숙지시킬 것.

10. 섭외 담당 경찰관 도입

- 영어구사능력과 SOFA를 포함하여 국제법지식을 갖춘 섭외 담당 경찰관 제도를 만들어, 최소한 1개 경찰서에 1명 배치해야.
- 이것은 비단 SOFA 사건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봄.

IX. 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을 위한 초안

상기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을 법제도화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 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항 (나)에 관하여 2.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형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밖에서 범행하고 돌아온 미군을 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본 협정 제22조 1항 (나)의 미군국외 범 불처벌이 삭제됨에 따라, 그 합의사록도 삭제함이 타당.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삭제	대한민국 형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피해구제방법이 없고,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공무증명서에 따라 재판권 귀속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미일협정과 같이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제한하여야 함.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삭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3항 (나)에 관하여 3.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삭제	대한민국이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통보받고 입회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은 삭제 정리하고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신설하여야 함.

1. SOFA 본 협정 개정 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본협정 제1조 제1항 (다)(2)	(다)“가족”이라함은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다)“가족”이라함은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또는 기타 친척” 삭제)	나토, 미일협정은 기타 친척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본협정 제15조 제8항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 시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후략)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따라야 한다”삭제).	초청계약자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없는 특례로,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본협정 제22조 제1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 및 대한민국에 파견된 기간 동안에 출국하여 일시 체류하는 합중국 및 제3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5조, 6조와 모순되고,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즉 내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는데,미군의 국외범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
본협정 제22조 제5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이 재판권을...경우에 있어서”삭제).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상, 미군 당국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사건발생 즉시 발생과 경과, 피의자 체포 여부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 신설 본협정 제28조 4.		4.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한미합동위원회 해당분과위에 사건관련 해당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 시민단체도 의견개진을 할 수있다.	합동위원회의 협의과정의 비공개성, 불투명성 및 참가자범위의 배타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본협정 제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영어본 우선조항은 외국에 유례없으므로, 양국간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2. 본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u>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u> ,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당국의 수사재판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병 또는 임신 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u>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u>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병 또는 임신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u>호의적 고려를 할수 있다</u> .	2001년 개정시에 신설된 것으로서, 타국에는 유사한 규정이 없고, 남용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여성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할수 있다>로 개정함.
▲신설 제3항(다)에 관하여 5.		특히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한다.	공무중 범죄는 반드시 파견국이 형사재판권행사는 해에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 필리핀의 경우, 기지밖 공무중 범죄는 필리핀이 재판권 행사. 국제법의 발전 추세도 비슷한 경향. (일본 중의원도 이와 유사한 개정 운동을 하고 있음)
제5항(다)에 관하여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 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u>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u> ,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u>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u> 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에 체포한 경우와 <u>그 외 어느 때이든지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중상해, 강간죄를 범하였다</u> 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후략)	미군피의자가 일단 합중국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체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폭행 또는 상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상해의 경우도 범죄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나쁜 강간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다)에 관하여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후략)	삭제	본협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구금인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른바 12개 중대범죄에 한하여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10.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전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 될 것을 보장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 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확정자의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 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확정자의 ---	이 규정 때문에 현재 한국의 천안교도소는 국내인 행형기준은 물론 미군교도소 행형기준보다 더 높은 행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내외국인 평등원칙 위반이다.
▲신설 제6항에 관하여 1.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어느 일방 국가 당국은 타방 국가 당국에 우선으로 그 발생일시와 장소를 즉시 통보하고, 타방 국가 당국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서면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보존, 공동 현장조사, 임의동행 협조, 즉각적인 수사기록 송부 등의 구체적인 수사협조사항이 신설되어야 함.
제6항에 관하여 2.	1...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u>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정하는 연락기관에 송달될 경우 동 합의사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있다.</u>	전속적 재판권 행사시 비형사재판절차상의 연락기관에 송달하도록 하는 미독협정의 예를 참작하고, 민사소송법상 송달규정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 형사사건 소송서류 송달을 원활히 하여야 함. ▼ 조문번호정리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항에 관하여3.	2...(후략)	3...(후략)	▼ 조문번호정리
제6항에 관하여4.	3...(후략)	4...(후략)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6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금 여부와 재판의 일시 및 장소, 판결결과 및 형의 집행 여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당해 범죄의 고소인, 고발인, 범죄피해자 및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며, 범죄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진행을 통보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재판에 입회하도록 제3항(나)에 관하여 3.(나)를 삭제하고 여기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제7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7항 (나)에 관하여 2.		2.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구금형의 감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한다.(이하 삭제)	정부대표 입회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군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고 타국에 유례없는 것으로 삭제하여야 함.
제9항에 관하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제	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정지규정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출석 권리를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혜로 삭제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9항에 관하여 (카) 1문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제	미군의 위신을 이유로 심판거부권을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혜로 삭제되어야 함.
제9항에 관하여 (카) 4문	적대행위의 경우에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금고나 징역형의 집행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된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	삭제	한국의 사법주권 불신,타국사례 없음.
제9항에 관하여 변호없는 2문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삭제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형사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독일, 일본과의 협정에 없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함.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u>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u>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u>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를 체포 또는 유치할 경우 시설과 구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상태에 두어야 한다.</u>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3. 양해사항 중 개정 사항

조 항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삭제	전속적 재판권 포기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정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후략)	삭제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함. 타국협정에도 사례없음.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u>군법회의에 의한 재판</u> , 비사법적 징벌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증명서가 최초로...피의사실에 대하여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하기 위하여' 및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삭제)	본협정 22조 8항에서 이중위험 금지원칙을 정하는바, 공무 여부 논란중에 합중국 군당국의 군사재판이 확정되면, 공무외 사건으로 결정되어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삭제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피해자등의 재판절차관여를 정하면, 이 규정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여야 함.
제3항(다)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시한의 기산일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통보받은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항(다)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후략)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시간은 합동위원회에서 미리 합의된 것에 따른다. 다만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전신문(수사과정)의 입회범위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법적대표의 권리는...(후략)	-원활한 예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유치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미정부대표의 재입회권 및 접견권은 인정하되, 수사과정에서의 입회권은 언급없음.(미일 SOFA)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입회권보장. 단, 수사과정에서 입회범위에 관하여는 상호협의를 통해 합의.(독일보충협정) -절충적 방법으로, 재판과정입회회는 허용하되, 수사과정입회범위는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 (다)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하는 “재판전 구금”...(후략)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지 않더라도 협정 제22조 제3항(다)에 의하여 2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하여야 함.
제5항 (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이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후략)	전항과 같음.
제5항 (다) 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전 구속”(“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후략)	전항과 같음.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작성되었으며, 본 협정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 사항은 양국 정부 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4. 2001년 개정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2조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2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다)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제10항에 규정된 재판전 구금 또는 금족시설의 기준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13호에 규정된 재판후 구금시설에 관한 합동위원회 설정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미결구금시설간 이송의 경우 신속히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미결구금시설간 이송의 경우 신속히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본 협정 제22조 5항(다)시행에 대한 양해사항의 삭제에 따라 삭제되는 것이 타당. 이에 따라 행정시설에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실천됨.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없음,

5. SOFA 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개선방안

초동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5개 사항 별 분석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①	초동수사시 공동현장 접근 및 공동조사 등 협력	추가사항: 1)공동현장에 피해자가 추천하는 제3자 입회 보장 2) 공동조사 시 언론 공개 보장	증거훼손방지와 과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②	미 정부 대표의 상시 1시간내 출석	SOFA 형사사건 관련 미 정부대표 10배수 후보자 추천 순위 사전 명단 제출	미정부대표의 확실한 출석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 필요
③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구체적 보장책 제시	미군당국의 비협조로 실제 피의자의 출석해태를 막기 위함.

④	수사대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하여 원활한 수사협조를 추구	초상권의 구체적 범위를 상세하게 합의 할 것	초상권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미군 피의자가 재판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함.
⑤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 관련 자료 제공 상호 협조	수사관련 관련자료 제공을 협조가 아니라 의무적 제출로 할 것.	초동수사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함.

X. 맺는 말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는 경찰만의 단독의 노력으로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적극적 요소(촉진제)를 법제도화하여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크게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형사관할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고, 좁게는 경찰의 예비수사, 초동수사에 대한 이미 한미 합동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각 관련 단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건과 2005.6.15 동두천 트럭 압사사건의 수사과정의 분석 결과, 결국 현행 SOFA 상 형사주권에 대한 독소조항은 경찰의 초동수사권의 제약에도 소극적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미군 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처는 사회 각 단위 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군범죄 초동수사에서 경찰의 임무 및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27일 한미 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방안]이 초동수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이것이 한미합동위의 합의 사항으로 머물러있는 이상, 법적 구속력에 의문이 있다.

2001년 개정 한-미 SOFA는 피의자 신병 인도시점을 종전의 확정 판결에서 4가지 전제조건하에 기소이후로 앞당겨주고 살인과 강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계속구금권을 인정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대신에 한국측은 미군측에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서 미군피의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양보했다. 이로 인해 기소이후 신병인도조차도 4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거의 성사된 것이 없고, 설사 신병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소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미국대표의 입회 없는 신문의 증거능력 부인 등 독소조항으로 한국수사당국의 초동수사 강화라는 목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나, 변호사도 아닌 단순한 미군관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규정, 그리고 형사관할권의 핵

심판단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주체를 한국법원이 아닌 미군장성급으로 한정하는 등 과 같은 독소규정 등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미군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두터운 보호막을 쳤다. 그런데 이런 개정 SOFA의 문제점이 여중생 사망사건(2002)과 동두천 미군 트럭압사사건(2005)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개정SOFA가 한국의 형사사법주권과 초동수사권을 과거 SOFA보다 더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 수사권 강화는 초동수사권을 제약하는 SOFA의 독소조항을 개폐하고, 나아가 한미 합동위가 합의한 [초동수사 협조 강화방안] 과 미흡한 SOFA규정이란도 반드시 실천하려는 한미 양당사국의 강한 의지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이것을 실행하는 수사관의 SOFA에 대한 정확한 이해⁶³⁾와 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3) 경찰청, SOFA사건 요령, (2003.1)에서 “SOFA사건 유형별 처리요령”을 효과적으로 숙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XI.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경찰청, SOFA사건 처리 요령, 2003. 1
2. 법과 사회연구원, <한미행정협정>, 도서출판 힘, 1988
3. 양주경찰서, SOFA 교통사망 사고 (2005.6.10, 동두천 트럭 압사사건)
4.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2001.4
5. 외무부, <한미간교섭회의록>, 제 2권, 1966.7
6.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7. 이윤영, "Schooner Exchange호 사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2호, 1970년 9월호, 대한국제법학회
8. 이장희,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년 11월호
9. 이장희,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상 형사관할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제법학회논총>, 제 40권 제2호, 1995. 12
10. 이장희, “작전지위권환수에 필요한 국제법적 대비”,<월간 말>, 1996년 2월호
11. 이장희,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SOFA의 시설과 기지조향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1996. 12.
12. 이장희편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미군사관계의 재조명>, 아사연, 1998. 3
13. 이장희, "한미행정협정의 [형사관할권 및 시설 · 구역]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인권과 정의>, 2000년 6월호, 대한변호사협회

14. 이장희 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 9권>, 2000. 7
15. 이장희 외, “개정 한-미주둔군 지위협정(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아사연 학술포럼시리즈>, 2002. 2
16. 이장희, “한미 SOFA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 방향”, 불평등한 한미SOFA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공동 주관, 국회 의원 회관 소회의실, 한미SOFA 개정 토론회(2002.12.12) 자료집
17. 장기봉, “외국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비교”, <국제법학회논총>, 제6권 제2호, 1961. 10
18. 장주영, “민사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서울국제법 연구>, 제5권, 제2호, 1998
1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만났다>, 길 기획, 1996.
20.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환경에 관한 각국 행정협정의 비교> 공청회자료집, 1999.5
21.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의 불씨, 2002년 12월 (통권 51호), pp.5-7 참조.
22.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의 불씨>, 2004년 12월호 (통권 59호)
23. 최승환, “한-미 SOFA의 환경관련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2호, 1999. 12
24. 최승환·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일지(1987-1998년)”, <서울국제법 연구>, 제5권 제2호, 1998
25. 황성수, <한미행정협정연구>, 최신의학사, 1968

II. 외국문헌

1. Barton, G., "Foreign Armed Forces: Qualified Jurisdictional Immunity",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1, 1954

2. Barton, G., "Foreign Armed Forces: Qualified Jurisdictional Immunity",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1, 1954.
3. Bloom, P., A. Carlos, J. Emmanuel and T. Schetler, *An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Report on Known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at Former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August. 1994.
4. Castro, P.A.(ed.), *Agreements on US Military Facilities in Phillipine Military Bases 1947-1982*, Foreign Service Institute, 1983.
5. Castro, P.A.(ed.), *Agreements on US Military Facilities in Phillipine Military Bases 1947-1982*, Foreign Service Institute, 1983
6. Cochran, C, and H. Chiu, *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Asian Countries : Selected Studie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79.
7. Cochran, C, and H. Chiu, *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Asian Countries: Selected Studie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79
8. Coker, J.R., "The Status of Visiting Military Forces in Europe: NATO-SOFA, A Comparison", in M.C. Bassiouni and V.P. Nanda, *A Treatie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I, 1973
9. Coker, J.R., "The Status of Visiting Military Forces in Europe: NATO-SOFA, A Comparison", in M.C. Bassiouni and V.P. Nanda, *A Treatie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I, 1973.
10. *Explanation of the Proposed Revision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kinawa Prefecture, Nov. 1995.
11. Fleck, Dieter(ed.), *The Handbook of The Law of Visiting Forces*,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12. Gwyn Kirk and Carlolyn Brown Francis, "Redefining Security",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15, 2000.

13. Huyn Sun Kim, "The problems Facing Women and Childern at Kijichon in Korea", *Redefining Security*.
14. Jennings, Robert and Arthur Watts (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 Longman, 1992.
15. Kelsen, Han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Holt. 1963.16. Lazareff, S., *The Status of Military Forces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1971.
16. King, Archibald, "Jurisdiction over Friendly Armed Forc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1942
17. King, Archibald, "Jurisdiction over Friendly Armed Forc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1942.
18. King, Archibald, "Further Developments concerning Jurisdiction over Friendly Foreign Armed Forc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0, 1946.
19. Lazareff, S., *The Status of Military Forces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1971
20. Minist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uin 1960. *Collection des Traités*, 1960–XXXVIII.
21. Sheila A. Smith, "Shifting Terrain : The Domestic Politics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Asia", *EAST–WEST CENTER Special Reports* Number 8. March. 2006.
22. Takano, Y.,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and the Japan–Korea–Us Treaty Relation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6, 1967.

23. U.S. Department of Defense, 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Document, October 1992.
2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ollective Defense Treaties with Maps, Texts of treaties, A Chronology, Status of Forces Agreements, and Comparative Chart, 1969.
25. Whiteman, Marjorie M.,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26. Woodliffe, J., The Peaceful Use of Foreign Military Installations under Moder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27. 本間浩, 在日美軍地位協定, 日本評論社, 1996.
28. 朝見俊隆, 日本의 基地, 東京大學出版會, 1967.
29. 福地曠昭, 「基地와 環境破壞」, 同時代社, 1996.

Ⅹ. 부 록 : 주둔군 지위협정(SOFA) 텍스트

1. 한-미 SOFA

-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한-미 SOFA 협정)
-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2001년 개정 한-미 SOFA 협정)
- 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 마.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 駐屯軍의 地位에 關한 北大西洋條約 當事國間의 協定(NATO 협정)

- 3.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6條에 依據한 施設 및 區域과 日本國에 있는 美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미일협정)

4.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6條에 依據한 施設 및 區域과 日本國에 있는 美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에 對한 合意 議事錄

5. 獨逸聯邦共和國에 駐屯中인 外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北大西洋條約當事國 間에 締結된 協定에 對한 補充協定(독일보충협정)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 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

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 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 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 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모든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 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스팀’, 전열, 전등, 동력 및 하수 오물 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용 교통 시설, 통신, 동력 및 합중국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출입국

1. 본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 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및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 개인 또는 집단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 구성원, 군속,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자를 자국의 영역 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9조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 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

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상,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상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 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 (가) 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 관측,
- (나) 정기적 개항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 자료,
- (다)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통신 업무,
- (라) 지진 관측의 자료.

제12조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 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시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 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

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 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 규정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 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에 규정된 제 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의 양 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 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과 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제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취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

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 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초청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 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관계의 사업 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 당국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 (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 이용,
-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것,
-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편 시설의 이용,
-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 (자) 고용 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 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제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여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

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 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 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 (가) 물품세,
- (나) 통행세,
- (다) 석유류세,
- (라) 전기·'가스'세,
-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매 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5.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노 무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노무단(‘케이·에스·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집 사무 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 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대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 법령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 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 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 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 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 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쟁, 적대 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 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군속은 그들의 임용과 고용 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제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8조 외환관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 증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급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득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전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 관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군 표

1. (가) “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가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 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 또는 위조 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행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관이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 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 은행 시설의 유지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업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은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협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금의 수령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0조 군사우체국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 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 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송달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 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 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 (2)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속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2001. 1. 18 서명된 개정협정 제1조에 의해 개정>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가)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나) 공판 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 (다)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 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 (마)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 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청구권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나) 손해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 다만, 손해를 일으킨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다.

해난 구조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다만, 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경우에만 한한다.

2. (가) 제1항에 규정된 손해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1인의 중재인이 타방 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손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 전기 (가)에 규정된 중재인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 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 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중재인이 재정은 모든 배상금은 본조 제5항 (마)의 (1), (2) 및 (3)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마) 중재인의 보수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 정부가 중재인의 임무 수행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한다.

(마)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 불(\$1,400) 또는 대한민

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율에 의한다)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의 소유”라 함은, 그 당사국이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나선 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손실의 위험 또는 책임이 당해 당사국 이외의 가에 의하여 부담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한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의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마)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 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㉞) 전기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담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 ‘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율에 의한 부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인정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 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원”화로써 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인정은, 제2항 (㉞) 및 제5항 (㉞)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㉟)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㊱) 본항의 규정은, 전기 (㉞)의 규정이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영 또는 화물의 선적, 운송이나 양육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 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

으로 이를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태)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 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본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며, 이 점에 관한 동 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9.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 집행에 따른 사유 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

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d)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 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본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 군대(카츄사)의 구성원은 본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1.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허가증이나 운전 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 허가증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

2.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한다. 이러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 및 동 차량의 면허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관계 자료는 합중국 정부 직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 감찰 발급의 실시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

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면허, 등록 또는 운행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제25조 보안조치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제26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적격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서 예비역 군대로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28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

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정의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 제22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 협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 1952년 5월 24일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3항은,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정의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 양국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 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동 원

민 복 기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딘 러스크

윈드롭 지. 브라운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22조 제5항 (ㄷ)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제2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 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정 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1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3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 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를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

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신설 2001. 1. 18>

제4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 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6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및 청산을 위한 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규모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방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9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 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 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 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 대우는 합중국 정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제10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라 함은 공용 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 화물과 사인의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12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의 각호의 자에게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예)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매)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베)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15조

1.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인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한 자는, 그들의 체류 목적이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16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

등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 관계법령과 상 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란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 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 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제1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 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여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 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20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 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

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 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항 (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가) 살인,

(나)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다)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라) 불법 마약거래,

(마)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 (바) 방화,
- (사) 흉기 강도,
- (아) 위의 범죄의 미수,
- (자)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 (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 (카)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 (태)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4. 피의자가 혐의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 1. 18>

5.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 1. 18>

6. 대한민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금 또는 체포·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에 의하여 그리고 피의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은 동 신문에 출석하며, 참여가 허용된다. 합중국 정부대표 또한 동 신문에 출석한다. <신설 2001. 1. 18>

7. 보석 신청권과 법원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의 변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리이다. <신설 2001. 1. 18>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부상 또는 임신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 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10.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이 대한민국 당국으로 인도된 이후, 대한민국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합중국 군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11. 합중국 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 불능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

한민국 형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 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 소송의 진행 중에 어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 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 상의 승낙을 관계 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7항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신설 2001. 1. 18>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 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서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 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 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 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 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 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 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심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이 협정과 대한민국 국내법 중 보다 유리한 범위 내에서 존중된다. <개정 2001. 1. 18>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비수사 또는 어떠한 후속절차에도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합중국 정부대표의 신속한 출석을 보장한다. <개정 2001. 1. 18>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 본항 (가) 내지 (사)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가)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
-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 (라)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 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

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마) 범죄의 범행 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부죄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자) 동일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 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장 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사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 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대한민국 구금시설의 구역을 방문 및 관찰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 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

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 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 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의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5항 (다) 및 제9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 또는 합중국 군 당국이 이 협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와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는 이러한 위반사실이 일방에 의하여 타방에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문제가 동 10일 이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측이든지 합동위원회에 당해 상황과 위반사실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2. 합동위원회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동 문제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양측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각자의 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 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할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제23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 까지,

(가)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 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동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양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 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다)의 규정은 제2항 (다)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제25조의 규정은 합중국의 설비·비품·재산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된 대상자와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신설 2001. 1. 18>

제28조

제1항 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 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 동 원

윈드롭 지. 브라운

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제2조

제1항 (나)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항

1.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매해 1회 이상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 18>

2. 합중국은 공여를 기록하는 취득문서에 당초 등재된 용도가 변경된 시설 및 구역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한다.

(가) 합중국이 공여 구역 및 시설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을 표명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공여 구역의 실사를 실시한다. 공여 구역의 실사결과 및 새로운 용도

는 취득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나) 공여 구역 및 시설이 주요 군사건설 또는 부대 재배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에 의한 사용이 계획된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공여 구역의 실사를 실시한다. 사용계획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예상되는 계획 착수일과 함께 취득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내부적인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용계획이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합동위원회는 이를 통보받고 계획 착수일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구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계획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구역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 검토결과를 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합동위원회는 건의를 검토하고 그 구역 또는 시설의 반환을 지시한다. 합중국은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그 구역 또는 시설을 반환한다. <신설 2001. 1. 18>

3. 이 양해사항 제1항에서 상정된 바와 같이 공여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정확한 연례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는 기존의 시설 및 구역을 합동으로 실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합동실사 절차는 공여 구역의 경계 및 규모(면적), 공여 구역상의 건물 및 구조물의 수, 그러한 건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면적을 확정하고, 개개의 공여 시설 및 구역의 일반적인 범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합동실사의 결과는 적절하게 작성된 취득문서가 존재하는지, 양 당사국의 부동산담당 대표 및 기록 사무소가 적절하게 편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또는 구역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신설 2001. 1. 18>

4. 공여 구역 또는 시설의 사용이 침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례가 합동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러한 제약을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즉시 협의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한다. 합중국 군대도 합중국이 모든 사용권을 가지는 공여 구역 및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이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신설 2001. 1. 18>

제3조

제1항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합하여, 합중국은 계획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및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이러한 통보 및 협의에는 최초계획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의 형식을 개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어떤 조정 결과에 관하여도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획 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 18>

제9조

제5항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 있다. 특정한 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당국

은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 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제6항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관련 관세법령에 합치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대의 구성원·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에 입회자로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

합중국 당국은 비자격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인 회원자격과 그 보고절차를 연 2회 검토한다.

제15조

제1항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이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계약자의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제16조

1. 주한미군의 계약활동은 현지 계약회사의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존중한다. 주한미군과의 영업계약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요구사항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과 계약이 허용된 계약자는 군납협회나 유사기구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현지 계약회사 등록에 관한 행정적 요구사항”은 현지 회사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제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보상·노사 관계가 이 조항 또는 합의의사

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조건·보상·노사 관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일방은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 및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어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01. 1. 18>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항 (가)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이 항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한다.

2.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한민국 노동부의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4항 (가) (1)

제17조 제4항 (가) (1)에 규정된 노사쟁의 해결절차와 노동청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을 관할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쟁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명단에서 교대로 이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4.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추가로 15일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6.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바에 의한다.
 7.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8.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다.
- <신설 2001. 1. 18>

제4항 (가) (2)

1. 조정 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가) 이 항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 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 (2)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한다.
<개정 2001. 1. 18>

(나)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또는 개인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인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는 최종결정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항 (가)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 검토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의 개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기록이나 구두 논의에 한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복직과 보수의 소급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명령할 전권을 가진다.

(다)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4항 (가) (5)

제17조 제4항 (가) (5)와 관련하여 그리고 변화된 노동관행을 고려하여,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소한 45일간은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설 2001. 1. 18>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대한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 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 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키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 (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항 (다)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

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본래의 28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다)

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 존재하며 동 권리는 변호인을 출석시킬 권리,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 전 신문, 재판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절차에서 그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신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개정 2001. 1. 18>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 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신설 2001. 1. 18>

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속”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신설 2001. 1. 18>

5.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그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을 위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 당국에게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수사 및 재판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구금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2001. 1. 18>

6.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 후 그 구금하의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된 범죄사실 또는 그와 동일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된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거나 이를 수 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서는 동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 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참여 요청은 어떠한 신문에도 적용된다. <신설 2001. 1. 18>

7.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합중국 대표와 함께 예비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신문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상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변호인 참여가 가능할 때까지 정지

된다. <신설 2001. 1. 18>

8.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동안 피의자는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포기서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조사나 신문에의 변호인 참여도 포기되지 아니한다. 합중국 대표는 또한 피의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포기서면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포기서면에 서명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이 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적절히 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취득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로부터 나온 증거는 어떠한 후속 절차에서도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신설 2001. 1. 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 추정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특히 현장검증시에 존중된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의한 어떠한 신문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 18>

10.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 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확정자와 혼재수감되지 아니하며, 최종형의 선고 전에 징역 또는 노역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가족 접견의 횟수와 시간에 관한 특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정상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1. 1. 18>

11. 제22조 제9항 (가)의 요건에 따라

(가)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최초로 재판 전 구금에 처하여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나) 1심 재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인의 구금은 6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다) 항소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 상고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 18>

12. 아래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항 (나), (다), (라)에 규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 또는

(다) 피고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신설 2001.1.18>

제5항 (라)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번호 없는 2번째 문단 (가)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은 항소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1.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2. 청구절차를 담당하는 합중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한 경우 치료비 사전 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신설 2001. 1. 18>

제26조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 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미군 당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염병 관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개정 2001. 1. 18>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장래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이

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계속 회부할 것을 합의한다.

이 양해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사항에 서명하였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정 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만스 리비아

마.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에 합의한다.

1. 주한미군은 이 양해각서 발효일 현재 주한미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 직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점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러한 직위는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에게 개방될 수 있으나, 이들 가족은 가용한 그리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식인동 직위에 고려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도록 지정된 직위는 국가 안보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는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의 가족이 A-3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 사증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이들 가족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의 취업대상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8개 체류자격 분야(E1 - E8)에 해당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세법과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각서가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정 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 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정 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아

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따라서, 그리고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정부 대표 단간의 협상에 의거하여, 별첨 합의사항이 한미 합동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찰스 알. 헤플바워

송 민 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조, 정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 (태)에 준하여, 제1조 (태)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자녀”라 함은 친생자녀, 입양자녀, 계자, 그리고 법령 또는 법원이나 입양주선기관의 기타 조치에 의해 그자에 대한 책임과 신체적 보호가 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배우자에게 위임된 21세 이하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모”라 함은 친생부모, 부양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양자의 배우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배우자의 양부모, 계부모 및 배우자의 계부모를 뜻한다. “기타 친척”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대한민국 또는 합중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공인된 피부양자,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합의

되는 그 밖의 자 내지 범위의 자를 뜻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본 협정에 따라 “기타 친척”의 범위에 속하는 “가족”의 지위를 부여할 때마다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

제17조, 노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4항 (가) (5)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저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냉각 기간은 최대한 45일까지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7조, 노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제3에 따라, 합중국 국방부는 법, 세출 또는 국가 정책으로 야기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임무변경 또는 자원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준하여,

1.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로 정의되는 유형의 사건은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 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사건별로 처리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기소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의사를 명시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

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금을 요하는 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날짜, 시간과 장소가 가능하면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나) 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그 사건이 재판 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금인도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기소 또는 석방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주한미군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기소를 위한 결재를 마친 준비된 공소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후 헌병감은 대한민국 당국에 위인도 희망일까지 대상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구금 인도 후 24시간 내에 기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대상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중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피고인의 구금을 인도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구금인도 요청이 기재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된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기소된 범죄가 재판 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소장과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당국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1항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 전 구금인도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합중국 군 당국이 동의하면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 구금인도 절차에 적절히 준용된다.

5.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 그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즉시 체포사실을 통고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인도한다. 합중국 군 당국이 체포된 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헌병감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금중인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대상자의 성명과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집행유예가 아닌 구금형을 선고받은, 합중국 군 당국 구금하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판결 주문과 구금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다)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제10항에 규정된 재판 전 구금 또는 금족 시설의 기준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13호에 규정된 재판 후 구금시설에 관한 합동위원회 설정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미결구금시설간 이송의 경우 신속히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청구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에 준하여, 양측은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범한 대물 교통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 장치라는 것에 동의한다. 동 사건이 제23조 제5항에 해당되거나 건당 대물 피해 보상이 최소 25,000 달러 또는 향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액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입건되지 아니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에 준하여,

1. (가) 대한민국 관할법원은 합중국 군 당국이 설치하거나 지명하는 연락기관으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류의 송달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발송한 송달의뢰 청구서를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수령을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고 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 (1) 연락기관이 접수를 인정한 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본항 (1호)에 따라 그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나 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을 명시하는 서신을 받지 못한 때에는 관할법원은 연락기관이 서류의 재접수를 인정한 날짜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지를 첨부하여 송달의뢰 청구서 사본을 재발송해야 한다.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은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연락기관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대하여 21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7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송달이 불가능함을 통지한 때에는 송달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송달받을 자가 한국을 영구히 떠난 경우, 연락기관은 지체 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2호)에 명기한 경우에 있어서, 연락기관은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부기하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이 위와 같은 연장에 관한 요청을 수락한 경우, 본항 (1호) 및 (2호)의 규정은 연장된 기일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2. (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서 비행사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소장, 기타 서류가 연락기관을 통하는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때에는, 대한민국 관할법원은 송달을 실시하기 전 또는 송달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는 비행사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소장 또는 기타 서류의 사본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미국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영어로 해당 문서의 요지를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측에서 연락기관에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대한민국의 송달실시기관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 또는 구역에 있는 군대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문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송달실시기관이 이러한 송달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될 때에는, 미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그 출석이 강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합중국군 당국이 대한민국 법원에 위와 같은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환장이 연락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송달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연락 기관에 증인신문 등의 기일, 장소 및 송달받을 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환장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법원이 합중국군 당국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될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비형사재판절차를 위하여 공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합중국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요청은 연락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다) 대한민국 법원이 비형사재판절차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합중국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 또는 구역에 출입할 것과 이러한 증거의 수집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합중국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요청은 연락 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4. (가)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행한 비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비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 또는 명령을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은 법정모욕으로 처벌하거나 위와 같은 결정 또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공무수행으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자유가 박탈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공무수행중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합중국군 당국의 인증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구속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관할기관은 급박한 이해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자유의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합중국

군 당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 군 당국이 관련 당사자에 대한 인원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재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이항 나에 따른 자유의 박탈이 가능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지체 없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중국의 영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에 한한다. 이항 (가)에 규정된 원조는,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비형사재판에서 선고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이 합중국 군대의 시설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 이러한 집행은 합중국 군 당국 대표의 입회하에 한국 집행관이 이를 행한다.

2.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간의 협정

1949년 4월 4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북대서양조약의 당사국들은 약정에 의하여 일당사국의 군대가 타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파견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결정과 군대가 파견되는 조건(이러한 조건이 본협정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이 계속해서 관계당사국간의 개별적 약정의 대상이 될 것임을 유의하며, 이러한 군대와 타당사국영역내에 주둔하는 기간중의 지위를 확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① 본협정에서

1. 「군대」라 함은 공무와 관련하여 북대서양조약 지역내에 있는 타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에 일체약당사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소속된 인원을 말한다. 단 관계양체약당사국은 특정한 개인이나 부대 또는 대열이 본협정의 적용상 「군대」를 구성하거나 「군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을 합의할 수 있다.
2. 「군속」이라 함은 일체약당사국군대에 수반되어 있는 문관으로서 동체약당사국군대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무국적자, 북대서양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및 동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이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군족」이라 함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배우자나 그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를 말한다.
4. 「파견국」이라 함은 군대가 소속하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5. 「접수국」이라 함은 군대나 군속이 그 영지에 소재(주류하거나 통과하거나를 불문)하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6. 「파견국의 군당국」이라 함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그 법률에 의하여 자국의 군법을 시행할 권한을 위임받는 파견국당국을 말한다.

7. 「북대서양이사회」라 함은 북대서양조약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이사회 또는 이를 대신하여 활동할 권한을 위임받은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② 본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20조에 의거하여 본협정의 적용을 받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의 하부 정치기관에 적용된다. 한 하부 정치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제8조의 의미내에서 체약당사국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조 군대, 그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접수국내에서 접수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본협정의 정신에 배치되는 행위 특히 정치적 활동을 삼갈 의무가 있다. 파견국도 전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3조 ① 본조 제2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또한 군대나 그 구성원의 출입국에 관하여 접수국이 정한 정식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구성원은 접수국의 영역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여권 및 사증규칙과 이민검열을 면제받는다.

그들은 또한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접수국규칙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단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영주권이나 거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군대구성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서류만을 필요로 한다. 동서류는 요청이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있을 경우), 군별 및 사진이 있는 파견국발행의 개인 신분증명서

2. 파견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특정기관이 발행하고 또한 개인 또는 집단이 군대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와 명령된 이동임을 증명하는 파견국의 국어, 영어 및 불어로 된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이동명령서, 접수국은 그의 특정 대표자가 이동명령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속과 가족은 그들의 여권에 그 신원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파견국으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경우에 파견국당국은 접수국당국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요구되는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파견국당국은 21일 이상 행방불명이 된 구성원에 관하여 접수국당국에 동일하게 통고를 행하여야 한다.

⑤ 접수국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군대의 구구성원이나 구군속과 군대의 구성원, 군속, 구구성원 또는 구군속의 가족에 대하여 퇴거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파견국당국은 관계자를 자국의 영역으로 인수하거나 접수국 외부로 퇴거시키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으로 있는 자와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될 목적으로 접수국에 입국한 자 또는 그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제4조 접수국은

1. 파견국이나 그 예하기관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게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이나 수수료를 과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2. 파견국이나 그 예하기관이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소지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접수국의 운전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운전시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① 군대의 구성원은 통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파견국 및 접수국당국간에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평복의 착용은 접수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군대의 정규편성부대나 대열은 국경을 통과할 때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군대나 군속의 공용차량은 등록번호 이외에 구별하기 쉬운 국적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군대의 구성원은 그 명령에 의하여 허가된 조건에 따라 무기를 소유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파견국당국은 이 문제에 관한 접수국의 요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파견국의 군당국은 동국의 군법에 따르는 모든 자에 대하여 동국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재판권을 접수국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접수국당국은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범한 죄로서 접수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② 1. 파견국의 군당국은 파견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파견국의 법률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접수국의 법률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파견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에는 이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접수국당국은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죄로서 접수국의 법률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파견국의 법률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접수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에는 이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항 및 본조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가. 당해국에 대한 반역

나. 「사보타지」,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이나 국방상의 기밀에 관한 위반

③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 파견국의 군당국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관하여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제일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가. 단지 파견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단지 파견국군대의 다른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나.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

2.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접수국당국이 제일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제일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국가의 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일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의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④ 본조의 전기 제규정은 파견국의 군당국이 접수국의 국민이나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그들이 파견국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1. 접수국 및 파견국당국은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을 체포하거나 또는 전기 제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당국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접수국당국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파견국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3.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자의 신병이 파견국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접수국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파견국이 이를 계속한다.

⑥ 1. 접수국 및 파견국당국은 범죄에 대하여 필요한 수사를 실시하거나 증거를 수집, 제공(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와 적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인도를 포함)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단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하는 당국에 의하여 정해지는 기간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행하여진다.

2. 계약당사국의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이 경합되는 모든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⑦ 1. 파견국당국에 의하여 사형선고가 내려진 경우라도 접수국의 법률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국당국이 접수국내에서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2. 접수국당국의 파견국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언도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파견국당국으로부터 원조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⑧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일체약당사국의 당국에 의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경우 또는 복역을 완료하였거나 사면되었을 경우에는 타체약당사국은 동일한 영역내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할 수 없다. 단 본조의 규정은 타체약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기위반에 대하여 파견국의 군당국이 그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⑨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가족이 접수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공판전에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3.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
4. 증인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내에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5. 자기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정한 법정대리인을 가질 권리 또는 접수국에서 그 당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아서 법정대리인을 가질 권리
6.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능한 통역을 사용할 권리
7. 파견국의 정부대표와 연락하는 권리 및 법원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자기의 재판에 입회시키는 권리

⑩ 1. 군대에 정규로 편성된 부대나 대열은 접수국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들이 점유하는 병영이나 시설 기타의 구내에 대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군대의 군사경

찰은 이러한 구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러한 구내의 외부에서 전기 군사경찰권은 접수국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당국과의 연락하에 군대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⑪ 각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서 타체약당사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적 정보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에 위반하는 자의 처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① 각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체약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1. 손해가 타체약당사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에 의하여 북대서양조약의 시행과 관련되는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경우

2. 손해가 타체약국이 소유하고 그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단 손해를 끼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북대서양조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경우나 또는 손해가 북대서양조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일체약당사국의 타체약당사국에 대한 해난구조에 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단 구조된 선박이나 적하가 일체약당사국이 소유하고 그 군대가 북대서양조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 한한다.

② 1. 일체약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의 재산으로서 그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체약당사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항 2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된 1인의 중재인이 체약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손해액을 사정한다. 중재인은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청구도 재정한다.

2. 전기 1에서 말한 중재인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련의 고위직에 현

재 있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접수국 국민중에서 선정한다. 관련채약당사국이 2개월내에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채약당사국이든지 북대서양조약이사회 대표위원회 의장에게 전기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채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적이다.
4. 중재인이 재정한 배상액은 본조 제5항 5 가,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라서 분담한다.
5. 중재인의 보수는 관련채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중재인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관련채약국들이 균등한 비율로 지불한다.
6. 그러나 각채약당사국은 손해가 다음과 같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

「벨지움」 ; 70,000 「벨지움 프랑」

「캐나다」 ; 1,460 미불

「덴마크」 ; 9,670 「크로나」

「프랑스」 ; 490,000 「프랑스 프랑」

「아이슬란드」 ; 22,800 「크로나」

「이탈리아」 ; 850,000 「리라」

「룩셈부르크」 ; 70,000 「룩셈부르크 프랑」

「네덜란드」 ; Fl. 5,320

「노르웨이」 ; 10,000 「크로나」

「포르투갈」 ; Es. 40,250

연합왕국 ; 500영화 「파운드」

미국 ; 1,400미불

동일한 조건으로 재산의 손해를 입은 타채약당사국도 전기금액 미만의 청구권은 포기한다. 이들 통화간의 교환율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채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전기 금액을 적당히 조정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채약당사국이 소유한다」고 함은 그 채약당사국이 관용선 계약을 한 선박이나 관용선의 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 단 손실의 위험이나 책임이 그 채약당사국 외부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어지는 범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각 채약당사국은 그 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중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하여는 타채약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⑤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공무집행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군대나 군속이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채약당사국 이외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상의 청구권 및 본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접수국이 처리한다.

1. 청구는 접수국군대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제기, 심사, 해결하며 또는 재정한다.

2. 접수국은 이러한 모든 청구를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된 금액을 접수국 통화로 지불한다.

3. 전기지불(합의에 의한 것이나 접수국 관할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거나 불문) 또는 지불을 부인하는 접수국 관할재판소의 확정판결은 채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적인 것이다.

4. 접수국이 지불을 행한 모든 청구에 관하여는 그 명세서와 하기 5의 가, 나 및 다에 합치되는 분담안을 관계판결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기 제호 및 본조 제2항에 따라서 청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채약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가. 1개판결국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서 재정 또는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

정된 금액은 접수국에 25%, 판결국에 75%의 비율로 분담한다.

나. 손해에 대하여 1개국 이상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재정 또는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그들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단 접수국이 책임을 지는 국가중의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그 접수국의 분담금은 각 판결국의 분담금의 반액으로 한다.

다. 손해가 계약당사국의 군대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일 또는 이 이상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 또는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관계계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단 접수국이 그 군대에 의하여 전기 손해가 발생한 국가중의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접수국의 분담금은 관계 파견각국의 분담금의 반액으로 한다.

라. 백분율에 의한 분담안에 수락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반년 동안에 접수국이 지불한 계산서는 지불요구서와 함께 반년 동안 관계파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접수국의 통화로서 행하여야 한다.

6. 본항 2 및 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계약당사국에 대하여 극심한 곤란을 야기할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국은 북대서양이사회에 대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은 공무집행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그에게 언도된 판결의 집행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8. 본항의 규정은 본조 제2항에 정한 청구권에 대하여 5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항해나 운송, 화물의 적재나 운송 또는 하선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운용되지 아니한다. 단 본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손해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접수국내에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지지 않은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접수국당국은 당해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손해를 받은 자의 행동을 포함)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을 사정하며 또한 그 사

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보고서는 파견국 당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파견국당국은 지체없이 위자료의 지불제 의여부를 결정하고 제의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자료의 지불제외가 행하여지고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를 수락할 경우에는 파견국 당국은 그 자신이 지불을 행하고 그 결정과 지불한 금액을 접수국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지불이 행하여지지 않는 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접수국 재판소의 재판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허용의 범위를 일탈하여 파견국군대의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는 본조 제6항에 따라서 처리한다. 단 군대나 군속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지의 여부 또는 파견국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된 범위내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 2에 의거하여 선임된 중재인에게 그 문제를 부탁하며 이에 대한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것으로 한다.

⑨ 파견국은 접수국 재판소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한 접수국 재판소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단 본조 제5항 7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⑩ 파견국 및 접수국당국은 계약당사국이 관련되어 있는 청구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①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들 자신의 소비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용역을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대나 군속의 유지를 위하여 조달을 필요로 하는 물품은 통상 접수국의 군대를

위하여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당국을 통하여 구입한다.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기한 구입이 접수국의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접수국당국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협정이나 또는 장차 파견국 및 접수국의 정당한 대표간에 체결될 협정에 따라서 군대나 군속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물품 및 이와 관련된 시설과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협정과 조치는 가능한 한 유사한 접수국 인원의 숙박 및 숙사를 규제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별단의 특별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률이 건물, 물품, 시설 및 용역의 점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④ 군대 또는 군속의 현지 민간노무에 대한 수요는 이에 상당하는 접수국의 수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국당국의 협조를 얻어 직접 소개소를 통하여 충족한다. 고용 및 노동의 조건 특히 노임, 추가지불 및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건은 접수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군대나 군속이 고용한 전기 민간노동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군대나 순속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⑤ 군대나 군속이 주둔지에 있어서 불충분한 의료시설이나 치과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이에 상당하는 접수국인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료와 치과치료(입원가료를 포함)를 받을 수 있다.

⑥ 접수국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시행편의제공과 운임면제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최대의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편의와 면제는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⑦ 계약당사국간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재정적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에 의거하여 제공된 물품, 시설 및 용역에 대한 현지화폐에 의한 지불은 군대당국이 즉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⑧ 군대, 군속, 그 구성원 및 그 가족은 본조의 규정을 이유로 접수국의 재정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입 및 용역에 대한 조세나 과세를 면제받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접수국에 있어서 주소나 거소에 따라서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한 법적효력에 관하여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수국 영역에 체재하는 기간은 전기한 조세부과상 이를 접수국 영역내에서의 거주기간 또는 거소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파견국이 접수국에서 지불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급료 및 수당과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일시적으로 접수국에 체재함으로써 접수국에 소재하게 된 유채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를 면제한다.

② 본조의 여하한 규정도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그러한 신분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내에서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들이 접수국의 영역외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에서 말한 급료 및 수당과 유채재산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법률에 의거한 과세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본조의 여하한 규정도 제11조 제12항에서 정의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본조의 적용상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접수국의 국민인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본협정에서 명백히 반대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접수국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접수국의 세관당국은 접수국의 명령이 정한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전기한 법령에 의거하여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을 수색하고 그들의 화물 및 차량을 검사하며 또한 물품을 압수할 권리를 가진다.

② 1. 군대나 군속이 공용차량을 그 차량자체의 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본협정 부록에 명시된 양식의 수출입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과하지 않고 이를 허가한다.

2. 차량자체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전기한 차량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4항에 의하여 규정하며 전기 차량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의하여 규제한다.

3. 군대나 군속의 공용차량은 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면제받는다.

③ 관인으로 봉인된 공문서는 세관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문서를 운반하는 전령은 그 지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 제2항 2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개인이동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동명령서에는 운반되는 공문서의 수를 명시하고 거기에는 공문서만이 내포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군대는 관세를 면제받고 군대를 위한 장비와 접수국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는 군속 및 그 가족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양의 식료품, 보급품 및 기타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면제수입은 합의된 관세문서와 함께 접수국과 과건국간에 합의된 양식의 증명서로서 과건국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자가 서명한 것을 입국시 세관에 기탁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위임된 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용할 서명 및 인장의 표본과 함께 이를 접수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접수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할 때에 수입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의 가족이 이들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할 때 수입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복무기간중에 사용할 개인용품과 가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⑥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그들 자신이나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사유자동차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본조는 사유차량의 도로사용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면제하여 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⑦ 군대당국이 그 군대나 군속의 배타적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행하는 수입과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행한 기타의 수입에 관하여는 본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조의 규정을 이유로 관세나 기타 조건의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⑧ 전기 제2항 2,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은

1. 자유로 재수출할 수 있다. 단 제4항에 의거하여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동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관당국은 재수출되는 물품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며 또 제2항 2,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조건에 의거하여 수입된 것이 사실인가를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통상적으로 판매나 기증의 방법으로 접수국내에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접수국의 관계당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세 및 조세의 납부와 무역 및 외환관리요건의 충족 등)

⑨ 접수국에서 수입한 물품은 접수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서만 접수국 밖으로 수입된다.

⑩ 세관당국은 정규적으로 편성된 부대나 대열에 대하여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한다. 단 관계세관당국은 사전에 적절히 통고받는다.

⑪ 접수국은 군대나 군속이 그들의 공용차량, 항공기 및 선박에 사용할 연료, 유류 및 윤활유를 모든 관세와 조세의 면제를 받고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 본조 제1항 내실 제12항에 있어서 「관세」라 함은 관세 및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기타의 모든 세금과 조세를 의미한다. 단 제공된 용역에 대한 비용에 불과한 수수료와 조세는 면제된다.

「수입」이라 함은 세관창고로부터의 반출이나 계속적인 세관보관을 포함한다. 단 관계물품은 접수국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⑬ 본조의 규정은 관계물품이 접수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나 접수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적용상 본조에 있어서의 「접수국」이라 함은 그 영역을 물품이 통과중에 있는 체약당사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① 접수국의 세관당국이나 재무당국은 본협정에 규정된 관세나 재정적 의무의 면제나 경감의 조건으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기 제당국은 그러한 수입이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조세나 관세를 상환하고 접수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접수국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을 접수국으로 수입하는 데 관하여 본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면제를 거부할 수 있다. 세관창고로부터 반출된 물품은 그것이 창고에 위탁된 것을 이유로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경우에는 이를 수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① 관세 및 재정법령에 대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국 및 파견국당국은 조사를 실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대당국은 접수국의 세관당국이나 재무당국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한 차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러한 당국에 인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에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대당국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 조세 및 과료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에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대나 그 군속에 속하고 구성원이나 군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 및 물품으로서 접수국의 관세나 재정에 관한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접수국당국에 의하여 차압된 것은 이를 관계군대의 적당한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군대, 군속, 군대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은 파견국의 외환규칙에 따르는 동시에 접수국의 규칙에도 따라야 한다.

② 파견국 및 접수국의 외환당국은 군대, 군속, 군대의 구성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적용될 특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① 본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협정은 북대서양조약이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존속한다. 단 제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청구의 해

결에 관한 규정은 전쟁으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협정의 규정과 특히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관계채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검토되어 그들간에 본협정을 적용하는 데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에 합의할 수 있다.

② 전기한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채약당사국은 타채약당사국에 대하여 60일 전에 통고를 행함으로써 그 채약당사국에 관한 한 본협정중에 여하한 규정이라도 그 적용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행사된 경우에는 채약당사국은 정지된 규정에 대처할 적당한 규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본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채약당사국간의 모든 의견차이는 외부의 재판기관에 부탁하지 않고 채약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본협정에 명백한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의견차이는 이를 북대서양조약 이사회에 부탁한다.

제17조 채약당사국은 본협정중의 여하한 조항에 대하여서도 그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동요청은 북대서양조약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8조 ① 본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미합중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정부는 각서명국에 대하여 비준서의 기탁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4개서명국이 그 비준서를 기탁한 30일후에 본협정은 그들간에 발효한다. 본협정은 기타의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를 기탁한 30일후에 발효한다.

③ 본협정은 그것이 발효한 후 북대서양조약이사회에 승인과 동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북대서양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실현되며 미합중국정부는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가입서의 기탁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본협정은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그 가

입서 기타일자의 30일후에 발효한다.

제19조 ① 체약당사국은 본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4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본협정의 폐기를 행할 수 있다.

② 체약당사국에 의한 본협정의 폐기는 체약당사국이 미합중국정부에 서면으로 이를 통고함으로써 행하며 미합중국정부는 기타의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폐기통고와 그 접수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는 미합중국정부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1년후에 발효한다. 본협정은 전기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본협정을 폐기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기타의 체약당사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① 본협정은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국의 본토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② 어느 국가든지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나 또는 그 이후에 북대서양조약지역내에서 그 국제관계에 관하여 자국이 책임을 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에 대하여 본협정이 확장(선언을 행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과 관계 각 파견국간의 특별협정의 체결을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미합중국정부에 통고함으로써 이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협정은 미합중국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30일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협정을 체결한 30일후에 또는 제18조에 의거하여 본협정이 발효하였을 때에(어느 곳이든 가장 늦은 때를 취한다) 전기 통고에 기재된 지역에 확장된다.

③ 그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지역에 대하여 본협정을 확장하는 본조 제2항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제19조 규정에 따라 동지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본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전권위원은 본협정에 서명하였다.

1951년 6월 19일 「런던」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영어 및 불어로 된 원문 1통을 작성하였다. 원문을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미합중국정부는 원문의 인증사본을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송부한다.

「벨지움」 왕국을 대표하여

오벨. 드 티에지

「캐나다」를 대표하여

엘. 디. 윌그레스

「덴마크」 왕국을 대표하여

스텐센 레트

「프랑스」를 대표하여 엘트브 알빵

「아이슬란드」를 대표하여

군로거 페트슨

이태리를 대표하여

에이. 로씨-룽기

「룩셈부르크」 대공국을 대표하여

에이. 크라센

「네덜란드」 왕국을 대표하여

에이. 더블유. 엘. 탈다 판 프탈젠보호-스타코펠

「노르웨이」 왕국을 대표하여

다르 브린

「포르투갈」을 대표하여 알. 에네스 올리치

협정은 「포르투갈」 본토에만 적용되며 인접도서와 해외령은 제외한다.

영연합왕국을 대표하여

허버트 모리슨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찰스 엠. 스포포드

3.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는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0년 1월 19일 「워싱턴」 서명

1960년 6월 23일 발효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1960년 1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서명한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일본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에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문관으로서 일본국에 있는 합중국군대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또는 이에 수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통상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및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는 제외한다. 본협정의 적용상 합중국과 일본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이 일본국에 보낸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2조 ① 1. 합중국은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하여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개개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협정은 본협정 제25조에서 정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결정하여야 한다. 「시설 및 구역」에는 당해 시설 및 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현재 설치물, 비품 및 정착물이 포함된다.

2. 합중국이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의거한 행정협정의 효력이 종료할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은 양정부가 본항1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한 시설 및 구역으로 간주한다.

② 합중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기 약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기 시설 및 구역을 일본국에 반환하거나 또는 새로이 시설 및 구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이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언제든지 일본국에 반환하여야 하며 합중국은 전기 반환을 위하여 시설 및 구역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④ 1. 합중국군대가 시설 및 구역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본국정부는 임시로 그 시설 및 구역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일본국민에서 사용시킬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용이 합중국군대에 의한 당해시설 및 구역의 정규적 사용목적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합중국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당해 시설 및 구역을 규정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① 합중국은 시설 및 구역내에서 그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국정부는 시설 및 구역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그의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하는 데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하였거나 또는 근방에 위치한 육지, 영해 및 공간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도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합중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일본국의 영역에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 내에서의 항해 항공통신 또는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합중국이 사용하는 전파방사장치에 쓰이는 주파수, 전력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정부당국간의 약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국정부는 합중국군대가 필요로하는 전기통신용전파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서의 작전은 공공의 안전에 타당한 고려를 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① 합중국은 본 협정의 효력이 종료할 당시나 또는 그 이전에 시설 및 구역을 일본국에 반환할 경우 당해 시설 및 구역이 합중국군대에 제공된 때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또는 그 회복에 대신하여 일본국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일본국은 본협정의 효력이 종료할 당시나 또는 그 이전에 시설 및 구역을 반환받을 경우 당해 시설 및 구역에 가하여진 개량 또는 그곳에 남아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전기 규정은 합중국정부가 일본국정부의 특별약정에 의거하여 행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① 합중국 및 합중국이외의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 공공목적으로 운항되는 것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입항료나 착륙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협정

에 의한 면제가 허가되지 아니한 화물이나 여객이 전기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될 때에는 일본국당국에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하며, 그 화물 또는 여객의 일본국 출입은 일본국의 법령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한 선박이나 항공기, 합중국정부 소유의 차량(기갑차량을 포함) 및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설 및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와 일본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차량이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용료나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한 선박이 일본국의 항구에 입항할 경우 통상상태하에서는 일본국당국에 적당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적인 수로안내를 받지 아니한다. 단 수로안내자를 사용할 때에는 적당한 료율로 수로안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① 모든 비군사용 및 군사용의 항공교통관리와 통신체계는 긴밀한 협조하에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집단안전보장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조정한다. 이러한 협조나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이에 대한 사후변경은 양정부당국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②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과 그에 인접하였거나 그 근방의 영해에 배치 또는 설치된 등대 기타의 항행보조시설 및 항공보안시설은 일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와 합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 합중국 및 일본국당국은 그 위치와 특징을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설하기 전에 상호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합중국군대는 일본국정부의 각성이나 기타 기관에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본국정부가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향유한다.

제8조 일본국정부는 양정부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상업무상의 용역을 합중국군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상 및 해상으로부터 기상관측(기상관측선으로부터의 관측 포함)
2. 기상정보(기상청의 정기적 개보 및 과거의 자료 포함)
3. 항공기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업무
4. 지진관측자료(지진으로 생기는 해일의 예상정도 및 그 해일의 영향을 받을 구역의 예보를 포함)

제9조 ① 합중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을 일본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②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일본국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일본국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일본국의 영역에서 영주권이나 거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은 일본국에 입국하는 경우나 일본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계급, 군번, 군의 구분 및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2. 개인 또는 집단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와 명령된 시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시행증명서.

합중국군대이 구성원은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그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일본국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속 그 가족 및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당국이 발급한 적당한 서류

를 휴대함으로써 일본국에 입국하는 경우나 일본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경우 도는 일본국에 체재하는 동안 일본국당국이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합중국당국은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본국에 입국한 자의 신분 변경이 생겨 그가 그러한 입국자격을 자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본국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며 또한 그가 일본국에서 퇴거할 것을 일본국당국이 요구할 때에는 일본국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내에 일본국에서 출국토록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일본국정부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일본국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합중국군대의 구구성원이나 구군속과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구구성원 또는 구군속의 가족에 대하여 퇴거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합중국당국은 그들을 자국의 영역내에 받아들이거나 일본국외로 퇴거시키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항의 규정은 일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으로 있는 자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되기 위하여 일본국에 입국한 자 또는 그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제10조 ① 일본국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도는 군의 차량허가증을 운전시험이나 수수료를 과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합중국군대와 군속의 공용차량은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번호표나 개별적인 표지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

③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사유차량은 일본국민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본국이 발행하는 번호표를 취득하여 붙여야 한다.

제11조 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본협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합중국군대, 합중국군대의 공인조달기관 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제기관이 합중국군대의 공용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보급품 및 비품과 합중국군대가 전용할 자재, 보급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보급품 및 비품은 일본국에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수입에는 관세,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기 자재, 보급품 및 비품은 합중국군대, 합중국군대의 공인조달기관 또는 제15조에 정한 제기관이 수입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적당한 증명서 (합중국군대가 전용할 자재, 보급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된 자재, 보급품 및 비품에 대하여는 합중국군대가 전기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것이라는 요지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③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게 보내온 것으로서 이러한 자의 사용에 공여될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일본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할 때에 수입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의 가족이 해당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할 때에 수입하는 사용의 가구 및 가정용품과 이러한 자가 입국시에 반입하는 사용의 개인 소지품.

2.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 및 부속품.

3.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구성원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에서 통상 일상용으로 수입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일본국에 우송된 합리적인 수량의 의류 및 가정용품.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관세 및 내국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입시 세관당국이 징수한 그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1. 명령에 의하여 일본국에 입국하거나 일본국에서 출국하는 합중국군대의 부대
2.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합중국의 군사우편노선상에 있는 공용우편물
3. 합중국정부의 선하증권에 의하여 선적된 군사화물

⑥ 관세의 면제를 받고 일본국에 수입된 물품은 합중국 및 일본국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를 받고 당해물품을 수입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일본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⑧ 합중국군대는 일본국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합중국군대, 합중국군속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게 부여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1. 일본국당국과 합중국군대는 일본국정부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합중국군대는 일본국정부의 세관당국이나 그 대행기관에 의하여 압수당한 물건이 그 세관당국에 인도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합중국군대는 그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합중국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일본국정부의 관세나 재정에 관한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일본국정부의 세관당국이 압수한 것은 관계부대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합중국은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본협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본국에서 공급될 보급품이나 행하여질 공사를 위한 공급자나 공사담당자의 선택에 관

하여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보급품이나 공사에 관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일본국정부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합중국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되는 자재, 보급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일본국의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일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조정하에 조달하여야 하며 희망할 때에는 일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 협조를 얻어 조달하여야 한다.

③ 합중국군대 또는 합중국군대의 공인조달기관이 적당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일본국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보급품, 비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본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1. 물품세
2. 통행세
3. 휘발유세
4. 전기 및 「가스」 세

최종적으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보급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합중국군대가 발행하는 적당한 증명서를 구비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 및 휘발유세를 면제한다. 양정부는 본조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현재 또는 장래의 일본국조세로서 합중국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보급품, 비품 및 용역의 구입가격에 대하여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는 본조의 목적에 합치되는 면세나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④ 합중국군대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제기관의 현지노무에 대한 수요는 일본국당국의 원조를 얻어 충족한다.

⑤ 소득세, 지방주민세 및 사회보장을 위한 기여금의 부담 및 납부의 의무와 상호간에 별단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 및 제수당에 관한 조건, 기타의 고용 및 노동의 조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일본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⑥ 합중국군대나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노동자가 해직되었으나 일본국 재판소나 노동위원회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으로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1. 일본국정부는 합중국군대나 전기 기관에 대하여 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보한다.

2. 합중국군대나 전기 기관이 당해 노동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뜻을 일본국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잠정적으로 그 노동자를 취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의 통고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일본국정부와 합중국군대 또는 전기 기관은 사건의 실제적인 해결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4. 3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의 개시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해결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해 노동자는 취업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정부는 일본국정부에 대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되는 기간중의 당해 노동자 고용비용과 동등한 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⑦ 군속은 고용조건에 관하여 일본국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⑧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그들이 일본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조의 이유로 일본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나 기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⑨ 제3항에서 말한 조세의 면제를 받아 일본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합중국 및 일본국 당국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그 물품의 처분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세의 면제를 받고 당해 물품을 구입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① 합중국군대는 그들이 일본국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나 기타 유사한 공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②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그들이 합중국군대에 근무하거나 합중국군대 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제기관에 고용된 결과로 받는 소득에 관하여 일본국정부나 일본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게 일본국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들에 대하여 일본국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관한 일본국의 조세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일본국에서의 거주를 요청하는 합중국시민에 대하여 소득에 관한 일본국의 조세납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국에 체재하는 기간은 일본국의 조세부과상 일본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일본국에 체재함으로써 일본국에 소재하게 된 유체 또는 무체 동산의 보유, 사용, 그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의 조세를 면제받는다. 단 이 면제는 투자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일본국에서 보유하는 재산이나 일본국에 등록된 무체 재산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사유차량의 도로사용에 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면제하여 줄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제14조 ① 통상 합중국에 거주하는 자(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된 법인을 포함) 및 그의 피용자로서 합중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만을 목적으로 일본국에 체재하며 또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본조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지정은 일본국정부와의 협의하에 행하며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되는 자재나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전기 지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소된다.

1. 합중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을 때
2. 그들이 일본국에서 합중국군대관계의 사업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을 때
3. 그들이 일본국에서 위법한 활동을 행하고 있을 때

③ 전기한 자 그의 피용자로서 그 신원에 관한 합중국당국의 증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협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익이 부여된다.

1.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출입 및 이동의 권리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국에의 입국
3.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관세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
4.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제기관의 용역을 이용할 권리
5.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제19조 제2항에 정한 것
6.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20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서 군표를 사용할 권리
7. 제21조에 정한 우편시설의 이용
8. 고용기간 및 조건에 관한 일본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④ 전기한 자 및 그의 피용자는 그 신원이 여권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들의 도착, 출발 및 일본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군대가 일본국당국에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⑤ 전기한 자 및 피용자가 제1항에서 말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보유, 사용 또는 이동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은 면제)으로서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관헌의 증명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일본국의 조세나 기타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한 자 및 그의 피용자는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관헌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일본국에 체재함으로써 일본국에 소재하게 된 유체 또는 무체 활동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협정에 의거하여 조세의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나 기관으로의 이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의 조세를 면제받는다.

단 이 면제는 투자나 다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일본국에서 보유하는 재산이나 일본국에 등록된 무체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사유차량에 의한 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면제하여 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⑦ 제1항에서 말한 자 및 그의 피용자는 본협정이 정하는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하여 합중국정부와 합중국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일본국정부나 일본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들에 대하여 일본국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일본국에서의 거주를 요청하는 전기한 자 그의 피용자에 대하여 소득에 관한 일본국의 조세납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합중국정부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만을 위하여 일본국에 있는 기간은 전기한 조세의 부과상 일본국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⑧ 일본국당국은 본항 제1항에서 말한 자 및 그의 피용자가 일본국에서 범한 죄로서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제일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당국이 전기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본국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합중국의 군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고가 있을 경우에 합중국의 군당국은 이들에 대하여 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① 1. 합중국의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해군재판소, 「피.엑스」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기타 세출외 자금에 의한 제기관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

에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제기관은 본협정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유사한 관리에 따르지 아니한다.

2. 합중국의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공중에게 판매될 때에 당해 신문은 그 배포에 관한 한 일본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유사한 관리에 따라야 한다.

② 이들 제기관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2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의 조세를 과하지 않으나 이들 제기관이 일본국내에서 상품이나 보급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국의 조세를 과한다.

③ 이들 제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합중국 및 일본국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제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본조에서 말하는 제기관은 일본국당국에 대하여 일본국의 세법이 요구하는 바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일본국내에서 일본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본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삼갈 의무가 있다.

제17조 ①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합중국의 군당국은 합중국의 군법에 따르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재판권을 일본국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일본국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범한 자로서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② 1. 합중국의 군당국은 합중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합중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는 별할 수 있으나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는 별할 수 없는 경우(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죄를 포함)에는 이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본국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죄로서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는 별할 수 있으나 합중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는 별할 수 없는 경우(일본국의 안전에 관한 죄를 포함)에는 이에 대하여 전속적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가. 당해국에 대한 반역

나. 「사보타지」,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이나 국방상의 기밀에 관한 법률의 위반

③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 합중국의 군당국은 다음과 같은 죄에 관하여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제일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가. 단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죄, 또는 단지 합중국군대의 다른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죄.

나.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죄.

2. 기타의 죄에 대하여는 일본국당국이 제일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제일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당사국 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일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당사국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④ 전기 제항의 규정은 합중국의 군당국이 일본국의 국민이나 일본국에 통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그들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1. 합중국과 군당국과 일본국당국은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을 체포하거나 또는 전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당국에 그들을 인도하는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일본국당국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합중국의 군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3.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자의 신병이 합중국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일본국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합중국이 이를 계속한다.

⑥ 1. 합중국의 군당국과 일본국당국은 범죄에 대하여 필요한 수사를 실시하거나 증거를 수집, 제공(범죄에 관련된 조건의 압수와 타당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포함)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단 범죄에 관련된 조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하는 당국에 의하여 정해지는 기간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행하여진다.

2. 합중국의 군당국과 일본국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되는 모든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⑦ 1. 합중국의 군당국에 의하여 사형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일본국의 법제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중국의 군당국이 일본국내에서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2. 일본국당국은 합중국의 군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언도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의 군당국으로부터 원조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⑧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당국이나 합중국의 군당국에 의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경우 또는 복역을 완료하였거나 사면되었을 경우에는 타방국당국은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그를 재판할 수 없다. 단 본항의 규정은 일본국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기위반에 대하여 합중국의 군당국이 합중

국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⑨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국의 재판권에 의거하여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공판전에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3.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
4. 증인이 일본국의 관할내에 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5. 자기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일본국에서 그 당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아서 변호인을 가질 권리
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능한 통역을 사용할 권리
7. 합중국정부의 대표자와 연락할 권리 및 자기의 재판에 그 대표자를 입회시키는 권리

⑩ 1. 합중국군대에 정규모 편성된 부대나 대열은 본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군대의 군사경찰은 그들의 시설 및 구역내에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들 시설 및 구역의 외부에서 전기 군사경찰권은 일본국당국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본국당국과의 연락하에 합중국군대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⑪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합중국정부나 일본국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60일전에 예고함으로써 본조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행사된 때에는 합중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적용이 정지된 규정에 대처할

적당한 규정에 합의할 목적으로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⑫ 본조의 규정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전에 행한 여하한 범죄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의거한 행정협정 제 17조의 당해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① 각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육상, 해상 또는 항공의 방위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1. 손해가 타방당사국 방위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에 의하여 그 자의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경우

2. 손해가 타방당사국이 소유하고 그의 방위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단 손해를 끼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경우나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가지는 해난구조에 관한 청구권은 한다.

단 구조된 선박이나 적하가 일방당사국이 소유하고 그 방위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경우에 한한다.

② 1. 일방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의 재산으로서 일본국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 제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정부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본항 2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되는 1명의 중재인이 타방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손해액을 사정한다. 중재인은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청구도 재정한다.

2. 전기 1에서 말한 중재인은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고위직에 현재 있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본국민중에서 선정한다.

3. 중재인이 행한 결정은 양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또한 최종적인 것이다.
4. 중재인이 재정한 보상액은 본조 제5항 5 가,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라서 분담한다.
5. 중재인의 보수는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중재인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양정부가 균등한 비율로 지불한다.

6. 그러나 각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400미불 또는 504,000원 미만의 액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들 통화간의 교환율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양정부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기금액을 적당히 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이 소유한다」고 함은 그 당사국이 피용선계약을 한 선박이나 나용선의 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 단 손실의 위험이나 책임이 그 당사국 이외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어지는 범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각당사국은 자국방위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중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는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⑤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의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일본국에서 일본국정부 이외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에 관하여는 일본국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1. 청구는 일본국자위대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서 제기, 심사, 해결하며 또는 재판한다.
2. 일본국은 이러한 모든 청구를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일본원화로써 지불한다.
3. 전기 지불(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일본국관할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 또는 지불을 부인하는 일본국관할재판소의 확정판결은 양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적인 것이다.

4. 일본국이 지불을 행한 모든 청구에 관하여는 그 명세서와 본항 5의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을 합중국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기 제호 및 본조 제2항에 따라서 청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양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가. 합중국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재정 또는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액수는 그 25%를 일본국이, 그 75%를 합중국이 분담한다.

나. 손해에 대하여 합중국과 일본국 양국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재정 또는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액수는 양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손해가 일본국 또는 합중국의 방위대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를 이들 방위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 또는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액수는 합중국과 일본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 백분율에 의한 분담안이 수락된 각사건에 관하여 일본국이 6개월간에 지불한 액수의 명세서는 지불요청서와 함께 6개월마다 합중국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본원화로써 행하여야 한다.

6.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일본국적만을 가진 피용자는 제외)는 공무집행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에서 그들에게 언도된 판결의 집행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7. 본항의 규정은 본조 제2항에 정한 청구권에 대하여 5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항행이나 운영, 화물의 적재나 운송 또는 하선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본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손실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일본국내에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지지 않는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일본국민인 피용자 또는 통상 일본국에 거주하는 피용자는 제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일본국당국은 당해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손해를 받은 자의 행동을 포함)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을 사정하며 또한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보고서는 합중국당국에 교부하여야 하며 합중국당국은 지체없이 위자료의 지불제 의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제의할 경우에는 그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자료의 지불제가 행하여지고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를 수락할 경우에는 합중국당국은 그 자신이 지불하고 그 결정과 지불한 금액을 일본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지불이 행하여지지 않는 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에 대한 제소를 수리하는 일본국재판소의 재판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허용된 범위를 일탈하여 합중국군대의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⑧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군대차량의 사용이 허용된 범위내의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2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중재인에게 그 문제를 부탁하며 이에 대한 중재인의 결정인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⑨ 1. 합중국은 제5항 6에 규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재판소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피용자에 대한 일본국재판소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 일본국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동산(합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당국은 일본국재판소의 요청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하여 일본국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3. 합중국 및 일본국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⑩ 합중국군대에 의한 또는 합중국군대를 위한 자재, 보급품, 비품, 용역 및 노무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단 본항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민사상의 제소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⑪ 본조에서 말하는 「방위대」라 함은 일본국에 대하여서는 자위대를 말하고 합중국에 대하여서는 그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⑫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행위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청구권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⑬ 본조의 규정은 본협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일어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의거한 행정협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일본국정부의 외환관리에 따라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불화나 또는 불화중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금인 것,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것 또는 이들 및 이들의 가족이 일본국외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일본국내 또는 일본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합중국당국은 전항에 규정한 특권의 남용이나 일본국의 외환관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1. 합중국에 의하여 허가된 자는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서 이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불화로 표시된 합중국군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가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

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일본국정부는 허가되지 않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당국의 협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나 위조군표의 사용에 관련된 자로서 일본국의 재판권하에 있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한다.

2. 합중국당국은 허가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군표를 사용하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을 체포하고 처벌하며 또한 합중국 또는 그 기관은 일본국내에서의 군표무허가사용의 결과에 관하여 그 허가되지 않은 자 또는 일본국정부나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여하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②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은 그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사용이 허가된 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미국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은행시설을 유지할 것을 인정받은 금융기관은 그 시설을 당해기관의 일본국내 상업금융업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하며 여기에 이 시설의 유지, 운영을 유일한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 시설은 합중국통화은행계정을 유지하며 이 계정에 관한 모든 금융거래(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자금의 수령 및 송부를 포함)를 행할 수 있다.

제21조 합중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군사우체국을 일본국내에 있는 합중국군사우체국간 또는 이들 군사우체국과 다른 합중국우체국간의 우편물수발을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합중국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적격한 합중국시민으로서 합중국군대의 예비시설단체에의 편입을 신청하는 자를 동단체에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23조 합중국과 일본국은 합중국군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및 이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한다. 일본국 정부는 그 영역내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 정보의 충분한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고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① 일본국에서 합중국군대를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이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협정의 존속기간중 일본국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합중국이 부담할 것에 합의한다.

② 일본국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한 모든 시설 및 구역과 또 도로(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이나 구역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을 포함)를 본협정의 존속기간중 합중국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제공하며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시설 및 구역과 도로의 소유자나 제공자에 대하여 보상을 행할 것에 합의한다.

③ 본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자금거래에 적용될 회계를 위하여 합중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에 약정을 행할 것에 합의한다.

제25조 ① 본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요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합중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특히 합중국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② 합동위원회는 일본국정부의 대표자 1인과 합중국정부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하며 각 대표자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대리자와 1인의 직원을 가진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정하며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합중국정부나 일본국정부중 어느 일방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회합

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③ 합동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그 문제를 각자의 정부가 다시 고려하도록 위임한다.

제26조 ① 본협정은 합중국과 일본국에 의하여 각자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그 승인을 통지하는 공문이 교환되어야 한다.

② 본협정은 제1항에 규정한 절차가 완료된 후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효력발생일자에 발효하며 1952년 2월 28일에 동경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의거한 행정협정(개정을 포함)은 그때에 종료한다.

③ 본협정의 각당사국정부는 본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 및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각자의 입법기관에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제27조 각당사국정부는 언제든지 본협정의 어떤 각항에 대하여서도 그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정부는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교섭하여야 한다.

제28조 본협정(그 개정을 포함)은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유효하다. 단 그 이전에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 및 일본어로 된 원문 2통을 작성하였다.

미합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정부를 대표하여

4.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는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미합중국전권위원과 일본국전권위원은 금일 서명된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정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는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교섭함에 있어서 도달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기록할 것을 희망한다.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합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본협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시설 및 구역을 구축(준설과 매립을 포함), 운영, 유지, 이용, 점유, 경비 및 관리하는 것.
2.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이동하고 그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거나 부가물을 설치하는 것. 보조시설이나 부가적인 건물 또는 기타공작물을 구축하는 것.
3. 항만, 수로, 항문 및 계류지를 개량하거나 더 깊게 하는 것,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도로나 교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4. 시설 및 구역의 능률적인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군사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시설 및 구역이나 그 근방을 포함하는 수상, 공간 또는 지상에서 선박, 주정, 항공기 및 기타 차량의, 투묘, 착륙, 이륙 및 조작을 관리하는 것.
5. 합중국이 사용하는 도로에 군사상의 목적에 필요한 유선 및 무선의 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것. 전기 시설에는 해저전선, 지하전선, 파이프선 및 철로로부터의 지선 등이 포함된다.

6. 시설이나 구역에서 그 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필요한 또는 적당한 지상, 지하, 공중, 수상 또는 수중의 설비, 병기, 물자, 선박 또는 차량을 구축, 설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 기상관측체계, 공중 및 수상항행용의 등화, 무선전신 및 전파탐지장치와 전자장치에 관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제5조

1. 「합중국 및 합중국 이외의 국가의 선박 …… 으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 공공목적으로 운항되는 것」이라 함은 합중국의 공용선박과 임차한 선박(나용선, 항해용선 및 시간용선을 포함)을 말한다. 부분용선 계약에 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업화물과 일선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선박에 적재한다.

2. 본조에서 일본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적당한 통고」를 행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중국군대의 안전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7조

합중국군대에 적용되는 전기통신 요금문제는 특히 1952년 2월 28일에 서명된 행정협정의 협의를 위한 제10차 합동회의의 공식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제7조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계속 검토될 것이며 전기 진술은 이에 언급함으로써 본의사록에 통합한다.

제9조

일본국정부는 양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입국자 및 출국자의 수와 종별에 관

하여 정기적으로 통보받는다.

제11조

1. 제15조에 규정된 제기관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양은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에 한한다.

2. 제3항 1은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적 하나 선적이 1회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제5항 3에서 말하는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정부의 선하증권에 의하여 합중국군대로 향하여 선적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

「군사화물」이라는 용어는 합중국군대로 향하여 선적되는 화물을 합중국정부의 타기관으로 향하여 선적되는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합중국군대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수입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군대가 이러한 물품수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일본국의 세관당국에 통지한다.

5. 일본국의 세관당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수입과 관련되는 남용이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중국군대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1 및 2에서 말하는 「합중국군대는 ……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또한 실제적인 조치를 말한다.

제12조

1. 합중국군대는 일본국에 있어서의 그의 조달계획에 주요한 변경이 예기되는 경우,

이에 관한 관계정보를 가능한 한 사전에 일본국당국에 제공한다.

2. 합동위원회나 또는 기타 적당한 자는 일본국과 합중국간에 경제관계법령 및 상관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달계약에 관한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3. 최종적으로는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물자의 구입에 대한 관세면제를 확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군대로 향하여 우송되거나 보내기로 된 자재, 보급품 및 비품으로서 합중국군대의 감독하에 오직 제2조에 말한 시설 및 구역의 구축,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이나 시설 및 구역내에 있는 군대의 유지를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되는 것에 대하여는 합중국군대가 발행한 적당한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보급품 및 비품을 인도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세 및 휘발유세의 징수절차는 보유된다.

나.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관헌은 일본국당국자에 대하여 시설 및 구역에 있어서의 전기 자재, 보급품 및 비품의 수락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물품세 및 휘발유세의 징수절차는 아래에 정하는 시기까지 보유한다.

ㄱ) 합중국군대가 전기 자재, 보급품 및 비용의 소비의 양 또는 정도를 확인하여 증명할 때.

ㄴ)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합체된 전기 자재, 보급품 및 비품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할 때.

라. 위의 ㄱ) 또는 ㄴ)의 규정에 따라 증명된 자재, 보급품 및 비품에 대하여는 그 경비가 합중국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지불되거나 또는 합중국의 지출에 충당하는 일본국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지불되는 한 물품세 및 휘발유세가 면제된다.

4. 합중국정부는 제15조에 규정된 제기관에 제공되는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본

국정부당국과 전기 제기관간의 관계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일본국정부에게 변제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12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본국의 법령」에는 제1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본국의 재판소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6. 제12조 제6항의 규정은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서의 군기교란을 포함하는 안전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7. 제15조에 규정된 제기관은 관계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제6항의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3조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7항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에서의 근무나 합중국군대 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제기관에 의한 고용의 결과로서, 또는 합중국에서 합중국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받는 소득은 일본국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

통상 해외에서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는 합중국정부의 기타관리 및 직원은 제15조 제1항에서 말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합중국정부는 합중국의 군법에 복종하는 자의 범위를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일본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3에 관하여

양정부는 제2항 3에서 말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세목과 전기 범죄를 규율하는 자국의 현행법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1 나)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기소되었을 경우 그 기소된 죄가 만약 그들에 의하여 범해진 것이라면 그들의 지휘관 또는 그에 대신할 자가 발행한 증명서로서 그 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반증이 없는 한 모든 사법절차에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전기 증명서는 일본국의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3에 관하여

1. 재판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인 권리의 포기에 관한 상호절차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2. 일본국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인 권리를 포기한 사건의 재판 및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하여 범해진 사건(제3항 1 나에 열거된 범죄를 포함)의 재판은 별도의 약정이 상호 합의되지 않는 한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주장되는 장소로부터 적당한 거리내의 일본국에서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일본국당국의 대표자는 그 재판에 입회할 수 있다.

제4항에 관하여

합중국 및 일본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군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합중국에 의하여 일본국에 입국한 자는 제4항의 적용상 일본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합중국국민으로 간주한다.

제5항에 관하여

1.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의 군법에 따르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을 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그 범인을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인을 석방하여 합중국의 군당국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단 일본국당국이 범인을 취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석방의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본국당국은 자신이 요구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범인을 취조할 수 있다. 합중국당국은 일본국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지정된 시간에 그 범인의 신병을 일본국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2. 합중국의 군당국은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지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의 체포를 즉시 일본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항에 관하여

1. 본항 1 내지 5에 열거한 권리는 일본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모든 자에 대하여 보장되어 있다.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으로서 일본국의 재판권에 의거하여 기소된 자는 이러한 권리 이외에 일본국의 법률이 보장하는 기타의 권리를 가진다. 전기한 기타의 권리에는 일본국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가. 자기에 대한 피의사실을 즉시 통고받지 않거나 또는 즉시 변호인에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및 그의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정한 재판소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 모든 증인을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허여받는다.

마. 잔학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

족으로서 일본국관할하에 구금된 자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3.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으로서 일본국의 재판권에 의거하여 기소된 자의 재판에 합중국정부의 대표자가 입회하는 데 관한 제9항의 규정은 재판의 공개에 관한 일본국헌법의 규정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항 1 및 2에 관하여

1. 합중국의 군당국은 통상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하에 경비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서의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것은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한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 일본국당국이 전기 시설 및 구역내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국당국이 체포할 것을 희망하는 자로서 합중국군대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 자가 합중국군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합중국의 군당국은 일본국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의 군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군대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 모든 자는 즉시 일본국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합중국의 군당국은 시설 또는 구역의 근방에서 당해 시설 또는 구역의 안전에 대한 죄의 기수 또는 미수상태에 있는 자를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로서 합중국군대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일본국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일본국당국은 통상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하에 경비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 있는 자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지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군대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 있는 자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일본국에 있는 합중국군대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일본국당국이 희망할 때에는 합중국의 군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이들의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으로서 합중국정부 또는 그 부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것에 관하여 재판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합중국은 이들 재산을 재판에 따라서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국당국에 인도한다.

제19조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및 제14조에서 말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합중국군대 및 제15조에 규정된 제기관의 일본국에서의 지불은 일본국의 외환관리법령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기준환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통상 해외에서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정부의 기타의 관리 및 직원은 합중국군사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

본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합중국이 본협정에 의거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합중국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불화 또는 원화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보충협정

벨점왕국, 캐나다, 폴란드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네덜란드」 왕국, 대영제국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 그리고 미합중국은 삼대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제8조 제1항(나)의 규정이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점령제도를 종료하는 데 관한 제일계획에 의하여 수정되었기 때문에 삼대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한 기타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위하여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동규정에 의하면 새로 체결할 약정은 1951년 6월 19일 「런던」에서 서명된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간의 협정을 기초로 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군대에 있어서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충규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북대서양이사회가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간의 협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동협정에의 가입을 승인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 가입은 다만 새로 체결할 협약의 당사국이 비준하거나 또는 승인한 후에 그 협력을 발생하도록 결정하였음을 고려하고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간의 협정의 전문 제2항에 의하여 동협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을 결정하도록 허용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점령제도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를 당사국에 의하여 1959년 8월 3일 「본」에서 서명된 협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와 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 금융에 관한 협약 및 전기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되었던 군대와 그 구성원에 대한 과세조치에 관한 협정은 새로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에 그 효력이 종료될 것임을 고려하고

북대서양집단을 계속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서문규정) 1951년 6월 19일 「런던」에서 서명된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간의 협정(이하 NATO군대지위협정이라 한다)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내에 있는 벨점왕국, 캐나다, 불란서공화국, 네덜란드왕국, 대영제국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 그리고 미합중국군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본보충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협정에 있어서

가. 「독일인」이라 함은 독일법률에서 정의한 범위에 드는 독일인을 말한다.

나. 「서명에 관한 의정서」라 함은 본협정에 대한 서명에 관한 의정서를 말한다.

다. 「군대에 관한 협약」이라 함은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점령제도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에 관한 별표 제11호에 의하여 개정된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군대와 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라. 「연방징발법」이라 함은 1956년 10월 19일자 「연방징발법」을 말한다.

마. 「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1956년 12월 7일자 군사방위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제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바. 「토지취득법」이라 함은 1957년 2월 23일자 군사방위를 위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사. 「공중교통법」이라 함은 1959년 1월 10일자 통고의 형식으로 된 항공교통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②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의 친척

가. NATO군대지위협정 제1조 제1항(다)에 있는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라도 재정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동 구성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거나 그 구성원에 의하여 취조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구성원이 거주하는 병영에서 동거하며 그리고 동 군당국의 승인을 얻어 연방의 영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동조항에서 말한 범위내의 가족으로 간주, 취급된다.

나. 군대의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또는 전속명령에 따라 연방의 영역을 떠나는 경우에는 본항(가)에서 말한 근친을 포함한 그 구성원의 가족은 이러한 사망이나 전속이 행해진 후 90일(그때까지 동 가족이 연방의 영역에 체재하는 경우에 한함)까지는 NATO군대지위협정 제1조 제1항(다)에서 정의한 범위내의 가족으로 간주 취급한다.

제3조(협력 및 운영) ① 북대서양조약에서 동 조약 당사국에 대하여 상호간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의무에 따라 독일당국과 주둔군당국은 NATO군대지위협정과 본협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에서 말한 협조는 특히

가. 연방공화국, 파견국 및 동 군대의 안전을 증진, 확보함은 물론, 동 재산의 보호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수집, 교환하는 데까지 미치며

나. 독일인,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과 이러한 범위내의 파견국국민의 안전을 증진 확보함은 물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까지 미친다.

③ 독일당국과 주둔군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협력이 범위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운영을 취할 것을 보장한다.

④ 독일당국과 주둔군당국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본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행정협정 또는 기타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⑤ 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포함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독일당국은 주둔군 및 군대에 대하여 그들의 방위 의무의 만족할 만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우를 행한다.

나. 본항(가)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군당국이나 군속은 그들과 연방공화국의 요구조건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독일의 공공 및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정당한 배려를 행해야 한다.

⑥ 독일당국과 군당국은 파견국의 연락장교들이 체재한 국경통화지점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들 장교는 군대,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그들이 하는 화물의 신속하고 장애를 받지 않는 통화와 군대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우송하였거나 군대, 군속 및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우송된 물품과 재산의 인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통제기능을 통하여 독일당국을 원조하여야 한다.

⑦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본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독일당국과 군당국간에 일개지방 또는 타지역인 수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동 사건을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나 본협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한 권한 있는 중앙당국이나 또는 군대의 상급당국에 이관해야 한다.

연방정부와 군대의 상급당국은 독일당국이나 군당국 및 군속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개별적인 지령을 발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 ①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파견국에게 부여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관계파견국간에 체결될 행정협정에 따라 기타의 파견국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 본조 제1항에서 말한 행정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관계파견국간의 협정은 그 협정이 관계되는 부분에서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단 관계파견국이 기타의 파견국이나 연방국 정부에 대하여 후자의 협정의 적용을 완료시킬 의사를 통고할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① 연방영역내에서의 신원의 증명에 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군대의 구성원은 이동명령서를 휴대할 필요가 없다.

나. 군복을 착용한 군대의 구성원이 군대의 지휘하에 부대에 편성되어 이동하는 때에는 그들의 신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느 부대의 신원을 신속히 표시할 필요가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대의 지휘관은 독일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기개인의 신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여권 또는 독일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군속과 그 가족은 파견국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에 관한 서류로서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하며 동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소지인의 사진, 일련번호 또는 발급청의 명과 연방영역에 재중인 그의 지위 등을 기입해야 한다.

라.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나 또는 본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당국은 그들이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군당국의 잠정적인 증명을 인정해야 한다. 군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러한 증명서를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와 본조에서 규정한 서류와 대치하여야 하며 독일당국에 동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경통과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개인 및 집단이동명령서에는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제2항(나)에서 말한 자료를 독일어로 기입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독일어로 기입치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동명령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동명령서는 일회의 입국 또는 출국, 또는 일회의 입국 및 출국을 위하여 발급되며 제한된 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군당국은 이동명령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료일자를 기입한 개인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동명령서와 대치할 수 있다.

나. 집단이동명령서에 따라 군사명령을 받고 국경을 통과하는 부대는 그 부대의 지

휘관이 자기의 개인신분증명서와 집단이동명령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신원을 증명한다.

독일당국이 동부대의 일부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의 국경관리장교는 그 이유를 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지휘관은 관계 구성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은 부당하게 그 부대를 지체하게 할 수 없다.

다. 군대가 군사공항을 통하여 입국 및 출국하는 데 있어서의 신분증명서의 통제는 지상의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의 국경관리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단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군사공항을 통하여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당국은 관계공항당국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검사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 이러한 자에 대한 정규의 신원관리는 군당국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군사공항을 통하여 연방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로서 전단에서 말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신분증명서의 관리는 독일당국이 이를 행하며 군당국은 이러한 자의 입국에 대하여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공항에 들어올 때 및 공항을 떠날 때에 행한다.

제6조(주민등록 및 외국인관리) ①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 및 외국인관리에 관한 독일법률의 적용을 면제한다. 단 호텔이나 기타 설비에 있어서의 등록은 예외로 한다.

② 군당국은 군속과 그 가족에 관한 최근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독일당국이 이 유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군당국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본조 제1항에서 말한 규정에 따라 그 요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독일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군당국은 군속과 그 가족의 수를 동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거주 및 정주에 관하여 독일영역에서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정 또는 기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협정 및 규정중 송환, 관치, 거주허가의 연장 또는 유리한 직업 등에 관한 한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연방의 영역에서 경과한 기간은 무시된다.

제8조(관치 및 퇴거) ① 권한 있는 독일당국이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제5항 전단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주둔국의 자격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중 일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은 이와 관련된 파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동당국의 의도를 뒷받침할 이유를 첨부하여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파견국당국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기간이내에 그 당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독일당국은 파견국이 채택할 여하한 입장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고려를 행해야 하며 동국의 일부당국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고려를 행해야 한다.

②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조치중 일부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통고는 당해 주의 내무장관이 행하며 「함부르크」와 「브레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원의 내무분과위원회소속 위원이 이를 행한다.

③ 권한 있는 독일당국은 그 문제된 인원을 연방의 영역내에 계속체재시키는 것이 그의 퇴거나 또는 관치명령이 발해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공공질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거를 요구하거나 관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9조(운전면허) ① 파견국당국이 소지인으로 하여금 군용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도록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게 발급한 면허와 기타 허가는 연방내에서 이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파견국당국이 소지인으로 하여금 동국내에서 사용차량을 운용하도록 발급한 운전면

허는 연방의 영역내에서도 그의 소지인이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도록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소지인이 파견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연방의 영역내에서의 이러한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독일의 규칙은 파견국당국에 의하여 그 소지인이 독일의 교통규칙에 관한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연방의 영역내에서의 이러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독일행정당국에 의한 그의 취소에 관한 독일규칙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독일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군당국은 그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으로서 차량운전에 관한 자격요건 이외에 독일의 교통법규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들의 사유차량을 위하여 독일어 번역을 갖춘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동국당국은 견습중인 운전사들이 전단에서 말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적절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하여 지도되며 또한 그들이 공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자를 동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지도자는 차량의 운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이 운전견습생을 지도할 것을 인정한 군당국의 허가서에 독일어 번역문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④ 파견국당국이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항공면허는 그것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기준과 관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때에는 그의 소지자에 대하여 연방영역내에서 사유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허가한다.

⑤ 가. 군당국은 본조 제1항에서 말한 군용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연방의 내해에서 항행하는 때에는 항행이 허가된 특수한 해역과 그에 관한 해안경찰규칙에 관하여 적절한 지식을 갖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나. 군당국은 그와 관련된 자가 본항(가)에서 말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비군용내해선박의 운용에 대한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동 증명서에는 항행이 가능한 특수해역을 명기해야 한다.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은 계속 그 효력이 존속된다.

⑥ 가. 군당국은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방의 영역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운전면허와 제2항에서 말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신빙성이나 차량운용에 대한 적격성에 관하여 적당한 의심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동당국은 이러한 운전면허와 증명서의 취소에 관한 독일당국의 요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해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한 이유나 또는 소지인이 연방의 영역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와 증명서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군당국은 본항에 따라 행해진 모든 취소와 그리고 이러한 취소 후에 운전면허나 또는 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에 관하여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나. 독일법원이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와 본협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운전면허에 기재해야 하며 동 면허는 계속 그가 소지한다.

⑦ 가. 제6항(가)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나)에서 말한 항공면허와 자격에 관한 증명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나. 군당국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연방의 영역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 항공면허의 소지인이 항공교통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데 대한 독일당국의 보고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해야 한다.

제10조(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등록과 면허) ① 군당국은 동군대나, 또는 그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소유하는 차량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국제협정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전단의 규정을 군대의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군대, 그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항공기는 적용이 가능한 국제규약에 따라 파견국당국이 등록 및 면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② 군당국은 사유차량과 대형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차량은 본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동보험의 효력이 종료한 때에는 군당국은 이러한 등록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 면허되었거나 연방영역내에서 군대가 사용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는 등록번호와 기타 적절한 표지 이외에 명확한 국적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사유차량에 부착된 인식표지는 군차량의 그것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군당국은 동당국에 의하여 등록, 면허되고 있는 차량에 사용되는 인식판부착제도를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독일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군당국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본조 제1항에 따라서 자기 명의로써 차량을 등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독일당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사유차량의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차량제조업자의 성명 또는 상표, 제조업자의 증명서 또는 일련번호, 연방영역내에서의 최초등록일자와 소지인의 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동증명서에는 독일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사유항공기의 등록증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기준과 권고에 기초를 두어 발급한다. 용적톤수가 15톤이나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비군용내해선박은 군당국이 발급한 용선증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군당국은 동당국에 의하여 등록 및 면허되었거나 또는 연방의 영역내에서 동군대가 사용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차량보험) ①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연방의 영역내에서 사유차량과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독일법률에 의한 제3자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당국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는 사유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 관한 제3자 책임보험은 파견국에서 제3자 책임보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모든 보험회사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연방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술한 보험회사 이외에 연방에서

보험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업자나 보험업자협회가 제3자책임보험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시한다.

상해나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제3자에 관한 독일 법률상의 요건은 이러한 보험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③ 파견국에서 외환규칙이 실시되고 있는 한 동파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보험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업자와 동협회가 연방의 영역에서 연방공화국화폐로써 지불을 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무기휴대) ① 군당국은 현금 또는 재산의 보호책임을 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공적직위나 기타 활동상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군속 및 군대고용원에 대하여 무기를 소지, 휴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군당국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된 자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정당방위에 관한 독일법률에 합치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허가된 자는 군당국이 발급한 화기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기를 소지할 수 있다. 공식으로 승인된 임무증명서는 화기증명서로 간주한다.

④ 군당국은 의심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화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독일당국이 이러한 증명서의 취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를 호의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그 소지인이 화기를 오용했거나 그의 신뢰도에 관하여 의심을 정당화할 수 있음이 입증된 때에는 화기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제13조(사회공안유지와 복지) 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의 공안에 관한 것으로서 연방의 영역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정이나 또는 기타 규정(사회 및 의료원조에 관한 것을 포함)은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사회의 공안에 관한 그들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그들이 본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연방의 영역에 체재하는 동안에 취득한 것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② 본조의 여하한 규정도 고용주의 자격으로서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게 부과된 의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결혼자격증명서)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하여 결혼자격증명서의 작성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업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결정되는 수수료의 지불은 총액 50도이치마르크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출생 및 사망에 관한 보고와 등록) ① 독일법률에 따라 출생 및 사망에 관하여 독일등기소에 보고할 의무는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출생 및 사망의 사실이 독일법률규정에 따라 등기되어야 한다.

② 출생아와 사망인이 독일인인 경우에는 출생 및 사망에 관한 보고의무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사망과 장례) ① 파견국의 군당국은 그 군대의 구성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연방의 영역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동파견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그 유산을 감독, 처분하며 의학적인 경우와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당국이 검사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파견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검사가 인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를 승인해야 한다. 법원소속독일인전문의 또는 공공보건담당관리와 범죄수사를 위한 검사의 경우 독일인판사는 검사를 행하는 도중에 이에 입회할 수 있다.

독일법원 또는 기타 당국이 검사를 행할 자격이 있는 경우 파견국의 군당국이 이러한 검

시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때에는 본항 제2단 및 제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파견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동국의 군당국은 연방의 영역내에서 사망한 자의 사유재산을 압수하여 제1단계로서 파견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우선적 비용에 충당하며 제2단계로서 연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동영역에서 이를 반제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기타의 채무의 청산에 충당하며 기후에는 사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잔여물을 처분한다.

③ 군대는 합의된 용지내에서 그들의 방위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묘지를 설치,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범죄의 처벌) ①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가 파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그 사건을 취급중인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은 재판절차를 보류하고 권한 있는 군당국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파견국의 관계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21일 이내에 또는 이러한 통고가 행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시로 동행위가 파견국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통지서를 독일당국에 제출한다.

동사건에 관한 확인증명서에서 그 처벌이 가능함을 밝힌 경우에는 동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나 또는 법적기초와 형량을 부기해야 한다.

② 독일법원이나 당국은 확인서에 따라 자체의 결정을 행한다. 단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확인서는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방정부와 연방공화국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거쳐 심의의 주제로 하여야 한다.

③ 독일법률에 의하여 어느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④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방공화국과 기타 동공화국에 대하여 이들 규정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과 그로 인한 이익을 연방공화국에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파견국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① 군대,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한 형사절차의 집행도중에 범죄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결정은 관계 파견국의 법률에 따라 성립되어야 한다. 이들 파견국의 관계고위당국은 동사건을 심의중인 독일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대하여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은 동확인서에 따라 결정을 행해야 한다. 단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확인서를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방정부와 연방공화국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거쳐 심의의 주제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권의 포기) ① 파견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연방공화국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 제3항(다)의 테두리 안에서 동조 제3항(나)에 따라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독일에 부여된 제일차적 권리를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파견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할 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의 군당국은 권한 있는 독일당국에 대하여 전제1항에 의하여 포기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독일당국이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독일의 사법제도의 운영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독일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는 견해를 갖는 때에는 동당국은 제2항에 정한 통고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제7항에 따른 협약에서 규정할 때에는 그 이전에 성명서의 형식으로 본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조 제3항에 따라 권한 있는 독일당국이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 포기를 철회하고 또한 관계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그에 관한 이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공화국에 체재중인 관계국의 외교사절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독일의 사법제도 및 파견국의 이익에 대하여 공정한 고려를 행하고 외교

면에 있어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다.

⑤ 가. 본조 제1항에 따라 포기를 요구한 파견국당국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재판 및 선고를 위하여 특수한 사건을 독일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이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권은 파견국이 이를 보유한다.

나. 본조 제1항에 따라 포기를 요구한 파견국군당국의 동의를 얻어 독일당국은 수사, 재판 및 선고를 위하여 특수한 사건을 파견국의 군당국에 이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권은 연방공화국이 이를 보유한다.

⑥ 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 제2항(나)에 따라 독일법원이나 또는 기타당국이 전속적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하여 발행된 모든 서류의 사본은 관계파견국의 특별한 또는 통상적인 요구에 따라 본협정 제32조에 있는 파견기관에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나. 동연락기관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영장의 집행을 보유하기 위하여 독일법원이나 기타 당국을 지원해야 한다.

⑦ 본조의 규정을 실시하고 중요성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개 또는 그 이상의 파견국당국과 권한 있는 파견국당국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에는 통고와 본조 제3항에 있는 포기의 철회에 관한 시효에 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가체포) ① 파견국의 군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를 임시로 구금할 수 있다. 즉

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었거나 또는 수배중인 자와, 그리고

(1) 신원을 즉시 파악할 수 없는 자

(2)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

나. 독일당국이 의뢰한 경우

다. 이들 범인이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인 때에는 그 파견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지체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독일경찰이나 경찰관리가 적시에 호출될 수 없는 때에는 파견국의 군당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동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임시로 구금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자가 파견국의 설비내에서 또는 설비에 대하여 범죄를 행했거나 또는 처벌이 가능한 미수행위를 기도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독일형법전 제99절, 제100절, 제100절 c, d, e 및 f, 제109절 g, 제363절과 관련하여 제정된 1957년 6월 11일자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4호 법률 제7조나 또는 이들 법률을 대치하기 위하여 사후에 제정될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행하거나 또는 미수행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본항의 규정은 피해자가 재판을 기피하거나 또는 은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범죄의 현행이나 처벌가능한 미수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절차를 기피하려고 시도한다는 우려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③ 본조 제1항이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당국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로 구금된 자의 무기를 압수할 수 있으며 범죄의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 그를 수색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④ 군당국은 지체없이 본조에 따라 임시로 구금된 모든 자를 동당국이 압수한 무기와 기타 물건과 함께 가장 근거리에서 있는 검찰, 경찰관리 및 판사와 범인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이 속하는 기타의 군당국에 인도해야 한다.

⑤ 본조의 규정은 독일연방 및 주의회의 헌법상의 면책특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구속통고) ① 1957년 6월 11일자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4호법률 제7조나 또는 이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금후에 제정될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체포를 행한 경우, 이러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독일당

국은 지체없이 관계 파견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파견국이나 또는 그 군대의 안전에 대하여 다른 형태로 행해진 행위와 관련하여 독일당국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체포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파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방의 영역내에서 행한 범죄로서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해하는 사항과 관련한 행위로 인하여 연방의 영역내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체포한 때에는 동당국은 지체없이 독일당국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제22조(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의 구금) ① 가. 파견국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의 구금은 동 파견국당국이 임의로 행한다.

나. 독일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의 구금은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파견국당국이 이를 행한다.

② 가. 독일당국이 체포를 행한 경우, 관계 파견국당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동당국에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파견국당국이 체포를 행하거나 본항(가)에 따라 범인을 인수한 경우 파견국당국은

(1) 수시로 독일당국에 구금을 이관할 수 있으며

(2)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 독일당국이 구금을 이관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다. 범죄가 단지 연방공화국의 안전에만 관계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구금은 관계파견국당국과 별도로 체결할 협약에 따라 독일당국이 이를 구금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파견국당국이 구금을 행하고 있는 때에는 동당국은 독일당국에 의하여 석방 또는 면제되거나 형의 집행이 개시되는 때까지 구금을 계속한다. 파견국당국은 수사와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체포된 자를 독일당국에 출두하게 하며 그러한 목적의 수행과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견국당국은 권한 있는 독일당국이 구금에 관하여 제기한 특별한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제23조(출입에 관한 권리) 개인이 본협정 제21조 제1항에 열거한 여러 경우와 관련하여 체포된 때에는 관계 파견국대표는 그를 면접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 말한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된 자가 군당국에 의하여 구금된 때에는 독일당국은 본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국당국대표에 부여된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구금중인 국가의 대표는 면접권이 행해진 때에는 이에 출두할 수 있다.

제24조(재판절차에 관한 상호지원) 연방공화국이나 또는 파견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독일당국과 동파견국당국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 제5항 및 제6항(가)에 규정된 상호지원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5조(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의 참석권) ① 가. 독일법원 또는 기타당국이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판사재판을 행사하는 경우 관계파견국당국의 대표자는 그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범죄가 단지 연방공화국이나 연방공화국내의 재산 또는 독일인이나 연방의 영역에 체재하는 자에 대하여 행해지고 또한 그에 관한 재판권이 파견국법원이나 기타당국에 의하여 연방공화국내에서 행해진 때에는 독일대표는 동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나. 본항(가)의 규정의 적용상

(1) 「연방공화국내의 재산」에는 군대,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소유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연방의 영역내에 체재하는 자」에는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본항(가)의 규정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요건상 국가대표의 참석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동안전요건이 타국의 안전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라. 독일법원 및 기타당국측과 파견국의 법원 및 기타당국측은 재판일자와 장소에 관한 적시통고를 상호간에 행해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파견국대표는 소속파견국당국과 연방공화국당국간에 합의될 범위내에서 심문과 기타의 재판절차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협약이 체결된 때에는 파견국당국은 제1항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국대표에게 부여된 것과 동등한 권리를 독일대표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상호통고를 위한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26조(재판장소) ①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이 연방의 영역내에서 독일의 이익을 해하고 범죄로 인하여 파견국의 법원에서 소인에 관한 심리를 받는 경우 그 재판은 동영역에서 행한다. 단

가. 파견국법률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또는

나. 군사상의 긴급사태나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파견국당국이 연방의 영역외에서 동재판을 진행할 것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 동당국은 이러한 의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독일당국에 부여해야 하며 독일당국이 이와 같이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② 재판이 연방의 영역외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견국당국은 독일당국에 대하여 재판장소와 일자를 통고한다. 독일대표는 동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의 참석이 파견국법정의 규정이나 또는 연방공화국의 안전요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안전요건에 배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견국당국은 판결과 재판에 관

한 최종결과에 대하여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제27조(형사소송절차) 형사절차에 관한 독일법전 제212절 내지 제212절(나)의 긴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형사절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28조(헌병) ① 군대의 헌병은 공로, 공공수송기관, 식당 및 공중이 출입하는 기타의 모든 장소를 순찰할 권리를 가지며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하여 질서와 군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 내지 편리한 경우에는 독일당국과 군당국은 동권리의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전기양당국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②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이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와 안전이 위협되거나 또는 방해되는 때에는 군대의 헌병은 독일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질서와 군기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형사범에 대한 군대의 보호) ① 연방공화국은 그 영역내에서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베를린」에 주둔중인 파견국군대와 그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 연방의 영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 제11항과 본조 제1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은, 특히,

가. 반역행위에 관한 독일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의 군사비밀의 보호를 보장하고

나. 형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로부터 독일군대에게 부여되는 보호조건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을 보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1) 복무에 대한 자발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군대, 군속 또는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일
- (2) 군대에 대한 모욕
- (3) 배반을 위한 유혹
- (4) 탈영을 위한 유혹
- (5) 탈영의 방조
- (6) 사보타지
- (7) 군사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 (8) 군수사업무의 운영
- (9) 군사설비, 군사시설, 군사활동에 관한 문서의 위조
- (10) 공중사진의 촬영

③ 본조 제2항(가)의 적용상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국방에 관하여 특수한 문자, 도면, 모형, 수식으로 된 사실, 사물, 결론 및 발견으로서 연방의 영역이나 「베를린」에 주둔중인 파견국기관에 의하여 동국가나 그 군대, 또는 「베를린」에 주둔중인 군대의 안전을 위하여 기밀로서 보존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기밀로서의 취급여부가 전혀 독일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과 그러한 사건에 관한 정보는 전기한 용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0조(헌성위원회)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와 그를 보충하는 본협정상의 규정의 실시를 촉진하고 동규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독일대표와 관계과건국대표로서 구성된 혼성 위원회를 구성한다. 혼성위원회는 전단에서 말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연방정부 또는 관계군대의 고위당국이 제기한 문제를 토의함을 임무로 한다.

독일당국과 파견국당국은 혼성위원회에 의하여 발해진 모든 합동권고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해야 한다.

제31조(사법상의 균등한 원조) 사법상의 균등한 원조 및 소송비용의 안전한 우송에 대한 의무의 면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은 연방공화국과 관계 파견국이 그에 관하여 체결한 현행협정에 의하여 연방의 영역에 체재하는 동안은 그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법정명령서 등의 전달) ① 가. 독일법원이나 또는 기타 당국에서의 비행사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소장 또는 기타 서류와 법정명령을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파견국이 각각 설치하거나 지명한 연락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은 동연락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진행중에 생긴 기타 서류의 전달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독일법원 또는 당국이 송달을 의뢰한 청구서는 동연락기관이 지체없이 그의 수취를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소자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달이 완료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지의 통고는 없이 독일법원이나 기타당국에 행해야 한다.

다. (1) 연락기관이 접수를 인증한 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독일법원이나 기타당국에 대하여 본항(나)에 따라 그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지의 서면통고나 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을 알리는 서신을 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원이나 당국은 연락기관이 서류의 재접수를 인증한 일자로부터 일주일의 경과하면 송달은 효력을 발생한 것

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고를 첨부하여 송달의 청구서의 사본을 재발송한다.

(2) 연락기관의 전술한 21일간의 기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7일간의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송달이 불가능함을 통고한 때에는 그 이후에도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락기관은 독일법원이나 당국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3) 본항에 명기한 경우에 있어서 동연락기관은 독일법원이나 당국에 대하여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이유를 부기해야 한다. 연장에 관한 이러한 요청이 독일법원이나 당국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본항(1) 및 (2)의 규정은 연장된 기일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② 독일법원이나 기타 당국이 공소심의 절차에 있어서 판결문이나 또는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관계과건국당국의 특별한 또는 통상적인 요청에 따라 그 사본을 지체없이 당해국의 연락기관에 송달한다.

단 본조 제1항(가)의 제2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기관자신이 이러한 송달을 수행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재판에의 참석)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은 공무로 인하여 그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비행사재판절차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판결, 결정 및 명령의 집행) ① 각국의 군당국은 독일법원 및 기타당국이 행한 비행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해결에의 복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은 판결, 결정, 명령 및 해결의 집행과 비밀의 공개에 관한 서명의 강요 또는 비행사재판의 결과 발생하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독일법원이나 당국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송달된 지불금은 , 통고 기타 독일법원이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파견국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내에 한한다.

④ 독일법원이나 기타당국의 비형사재판에 의한 판결, 결정, 명령 및 해결이 군대의 시설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은 군대대표의 입회하에 독일 집행리가를 행한다.

제35조(차압) 독일법원이나 기타당국의판결, 결정, 명령 및 재정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 동 채무자가 군대 또는 군대에 의하여 본협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되었거나 또는 군대나 그 구성원에게 판결이 직접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채무자에게 전달될 지불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즉

가. 이러한 지불이 독일당국에 의하여 행해지며 집행기관이 동지불을 채무자에게 행하는 대신, 판결에 의한 채무자에 행하도록 동당국에 요구하는 때에는 동당국은 독일법률상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이러한 요구에 응할 권리를 가진다.

나. (1) 독일당국이 이러한 지불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당국이나 군속은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파견국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명기된 총액을 채무자 앞 지불금에서 차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예치한다.

군대 또는 군속이 동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영치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파견국법률이 전 (1)에 기술한 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당국이나 군속은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판결, 결정, 명령 및 재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원조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법원명령 등의 송달) ①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독일법

원으로부터의 송달은 공표나 광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② 독일의 영장집행인이 군대의 시설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체의 문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동시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군당국은 독일의 영장집행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7조(법정, 기타 당국에의 출두) ① 가.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독일법정이나 기타당국에 출두하도록 소환될 때에는 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출두를 보장해야 한다. 단 독일법률에 따라 그 출석이 강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연락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환의 집행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본항(가)의 규정은 군당국이 그 가족의 출두를 보장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하여 준용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족은 독일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한다.

② 군당국이 그의 출두를 보장할 수 없는 자가 파견국의 법정이나 군당국에 의하여 증인 또는 전문가로서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독일법원과 기타당국은 독일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동파견국의 법정 또는 군당국에 이들을 출두하도록 보장한다.

제38조(정보의 공개) ① 군대나 또는 연방공화국의 법정 또는 기타당국에서 형사 또는 비행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방재판당사국의 공적 기밀의 공개나 또는 기타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동일방재판당사국의 안전을 해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 판명된 때에는 동 법정이나 기타당국은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관계당국으로부터 공적기밀이나 기타정보의 공개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구해야 한다.

전기한 관계당국이 공개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제기하는 때에는 동법정 또는 당국은 이러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조 제2항에 기술한 것을 포함하여 그 권한내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형사 및 비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처리단계에서 방청을 금하는 데 관하여 규정한 독일재판법 제172절 내지 제175절과 재판관할권의 이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재판에 관한 독일법전 제15절의 규정은 독일법정이나 기타당국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단 군대나 군속에 대하여 위협이 개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증인.전문가) 증인과 전문가에 관한 특권 및 면제는 그들이 출두하는 법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법정이나 당국은 이들 증인 및 전문가가 파견국의 법정(동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인 경우)에서 향유할 특권 및 면제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행해야 하며 그들이 전술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일법정에서 향유할 특권 및 면제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제40조(문서 및 재산의 불가침)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본협정에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 문서, 문서임을 표시하는 봉인이 날인된 공공의 신서 및 군대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일당국에 의한 수색, 압수 또는 검열을 면제한다.

단, 이러한 면제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청구권) ①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그들 구성원과 군속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기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의 해결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와 본조에 있는 그 보충규정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즉

가. 군대 또는 군대에 의한 통상적인 교통상의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공로, 고속도로, 교량, 항행이 가능한 항로 및 기타의 교통기관에 발생한 피해

나. 주거비용, 고용비용 또는 유지비, 기금에 의해서 건축되었거나 또는 구매한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피해. 단 이러한 피해나 손실은 동재산이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임의로 사용중인 동안에 발생하여야 한다.

③ 가. 연방공화국은 동공화국이 군대나 군속의 배타적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자국소유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에 관하여 파견국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전단의 규정은 수개의 파견국이 독일군대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또는 일개 또는 그 이상의 파견국이 독일군대와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이러한 포기에 관한 규정은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나 독일연방국철도 독일연방우편 시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 제2항(바)의 규정은 독일연방국철도나 독일연방우체국소유재산에 대한 피해나 연방의 공로에 대한 방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연방공화국은 어느 주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손실이나 피해가 본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제42조(공중촬영) 군대의 안전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중촬영의 통제에 있어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독일당국은 군당국에 대하여 상용항공촬영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에 관한 신청중에서 동당국이 인가할 면제에 대하여 군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동당국은 모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군당국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1) 본조 (나)(4)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독일당국은 항공촬영면허신청

중 동당국이 인가코자 하는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군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2) 군당국이 동사본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기밀이나 안전을 이유로 반대를 제기하고 독일당국과 군당국간에 협의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건은 지체없이 고위층에 이관해야 한다. 군당국이 그들의 시설, 설비, 군대의 배치 및 이동에 대하여 항공사진의 촬영으로 인하여 그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은 그에 관한 항공촬영을 금해야 한다.

(3) 본조(나)(4)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독일당국은 요구에 따라 군당국에 대하여 항공사진의 음화(Negative)를 검사하도록 허가하며 군당국과의 합의를 거쳐 이러한 시설, 설비, 군대의 배치 또는 이동에 관한 음화의 비밀과 안전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전기(1) 및 (3)에 규정된 군대의 권리의 독일당국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협정에서 정하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국한한다.

다. 본조(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일당국은 본조(나)(4)에 있는 군당국과의 협조를 거친 후에 촬영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당국은 군당국에 대하여 제1단계로서 음화(Negative)를 제공하며 시설, 설비, 군대의 배치 또는 이동에 관한 비밀과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군당국이 요청한 모든 조치는 이들 음화에 따라서만 취한다.

제43조(기상관측) ① 기상관측, 측지, 지형관측 및 수로의 측량에 있어서 군당국과 독일당국은 그들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모든 중요한 일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지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군당국은 특별한 안전상 또는 기밀상의 필요가 있거나 독일당국이 소정시간내에 소정범위의 관측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독일당국에 대하여 적시에 통고를 행한 후에 공동방위에 도움이 되는 측지, 지형관측, 수로측량 기타 기술조사와 정찰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기밀에 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당국의 대표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독일당국은 필요할 경우 독일군대의 대표자가 전기 재산에 출입할 권리를 얻기 위하여 독일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독일당국이 동국의 군대나 군속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당국들은 동사건이 재판에 계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본규정은 본협정 제62조 제1항(다)에서 말한 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물론 군대 및 군속과의 작업, 개인적대표 또는 민간노동에 관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러한 협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협정에서 이를 정해야 한다.

②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제기된 법정절차에 관계되는 한 본조 제1항에서 말한 협정은 다음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가.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제소자의 주소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를 받아야 하며 소송절차상의 모든 실질적단계에 있어서 상의를 받아야 한다.

나. 상고여부에 관한 결정은 군당국 또는 군속과의 합의를 거쳐서만 행해져야 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은 군당국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군속의 최고위당국이 독일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군당국이나 또는 군속은 연방의 최고위당국이 전술한 조치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데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기의 제2단 및 제3단에서 말한 「관심」에 대한 이유가 공소를 제기하는 도중에 상대방에 인식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관한 이유는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은 연방공화국이 제기한 소송절차의 진행중에도 이를 준용하며 제2항(나)에서 결정된 원칙은 고소인의 상고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본조 제1항에서 말한 분쟁에 있어서 소송절차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독일당국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군당국이나 군속과의 사전합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가. 관계과건국은 동국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본조 제1항에서 말한 분쟁으로 인한 재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해결의 결과 독일당국으로부터 받게 된 이익을 향유한다.

나. 연방의 최고위당국이 고소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군대 또는 군속이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고소나 상소로 인한 재판절차에 있어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개개의 사건별로 동소송으로 인한 의무를 과건국과 연방공화국간에 분담케 할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다.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로서 법정이 부과한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과건국이 이를 지불한다. 단 동비용이 부과되기 전에 군대나 군속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⑥ 가. 군당국 또는 군속이 물품 및 용역을 직접구매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은 독일재판소 또는 독립한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독일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며 동공화국은 과건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명의로 동사건을 처리한다.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연방공화국과 과건국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나. 연방공화국 및 과건국간의 협정은 본항(가)의 규정보다 우위에 둔다.

제45조(기동연습 및 기타훈련) ① 군대가 그의 영구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설비내에서 훈련계획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군대는 그의 방위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구주주둔연합군최고사령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하는 명령에 따라 이들 설비외에서 기동연습과 기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본권리의 행사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관한 독일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단 본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가. 군대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의 실시기간중에 가능한 한 피해를 방지하며 토지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전기 군대는 기동연습 또는 기타훈련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토지를 3개월간 재사용할 수 없다. 단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군대가 실시하는 기동연습 또는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때에는 동군대는 이러한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성에 대하여 가일층의 피해나 새로운 근본적인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기간 중 그러한 토지에서 기동연습이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삼가야 한다.

라. 독일당국이 본항(나) 또는 (다)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근거로 특정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양국은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군의 훈련요건을 충족할 토지의 환지와 그 사용에 대하여 즉시 교섭을 행한다.

단 독일의 이해와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마. 삼개월의 기간중에 수일간에 공하는 훈련을 위하여 일회 이상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예외규정을 정한 독일법률상의 규정은 군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자연보류지 또는 자연공원과 그의 일부를 사용함이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연방정부는 파견국정부와 이러한 자연보류지, 자연공원 및 그 부분의 경계를 정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체결된 협정에 따라 군대는 사용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연보류지, 자연공원 및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독일당국이 기동훈련과 기타의 연습을 위하여 군당국이 지정한 구역 이외에 군당국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대치구역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때에는 군당국은 동당국이 최

초로 지정한 구역에서의 기동훈련과 기타의 연습을 연기하여야 한다.

⑤ 가. 군당국은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기동연습과 기타 훈련에 관한 계획을 통고해야 한다.

나. 기동연습과 기타 훈련이 개시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와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연방정부와 파견국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지정일자에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독일당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동계획에 관하여 그들과 협의한다. 동계획에는 계획에 관한 실시일자, 종류, 기간 및 장소를 포함해야 하며 또는 공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차단여부와 독일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여부 및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취할 안전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동연습과 기타 훈련과 관련하여 항공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계획에 그의 사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본협정 제46조는 계속 유효하다.

다. 연방정부와 파견국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기간 이외에 독일당국이 동계획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기하지 않는 한 군당국은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 독일당국이 동계획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때에는 양국은 독일의 이익과 군사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공동토의를 통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마. 독일당국 및 군당국이 지방적 또는 국부적 부문에서 동계획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건은 독일당국이나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 및 파견국정부간에 이관, 토의를 계속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한다.

바. 연방정부와 파견국정부간에 동계획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각정부는 동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관하여 계획된 기동연습과 기타훈련이 군대의 방위임무에 대하여 중요하며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범주내에서 설립된 근본적인 원칙에의 합치여부에 대한 그의 전문적인 의견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발해진 전문의견에 대해서는 전기 정부간의 협의의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사. 군대는 동계획에 관하여 도달한 합의에 따라 기동연습과 기타 훈련을 실시한다.

⑥ 가. 어느 계획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독일당국이 기동연습이나 또는 기타 훈련이 개시되기 2주일 전에 동훈련을 공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군당국은 그들이 동훈련을 실시할 의향임을 독일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나. 합의를 위한 토의기간중에 예견할 수 없던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독일당국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기간에 특히 기동연습이나 기타훈련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또는 공공위생을 위협하거나 기상상태의 결과 상당한 파괴를 유발하리라는 근거로 전기훈련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기한 때에는 양국은 지체없이 이들 이유를 참작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합동토의를 통하여 효력한다.

다. 독일의 주당국은 독일법률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하여 주둔군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군당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⑦ 본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 및 군대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파견국정부는 합의하는 바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① 군대는 그 방위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연합군최고사령관이나 기타북대서양조약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령이나 또는 건의에 따라 기동훈련과 기타 공중에서의 훈련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건의한 관례의 범위내에서 공로의 사용이나 항공시설의 활용에 관한 독일법률에 의하여 규제된다.

② 권한 있는 개인이나 독일당국의 특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는 공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거나 할 수 없다. 단 동 군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군당국과 독일당국은 저지대의 용도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④ 공중통제지역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해제 또는 정리할 수 없으며 또는 항공교통에 관한 경고를 발하고 행하는 공중기동연습이나 기타 훈련을 상당한

기간이내에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통고에 관한 절차는 항공에 관한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된 상설협력위원회나 그 승계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군당국과 공중교통통제당국간에 협력을 위한 특수조치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건은 상설협력위원회나 그 승계기관에 이관되어야 한다.

⑥ 본협정 제45조의 규정은 기지외착륙은 물론 군대에 대하여 영구히 사용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시설에 낙하산을 투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7조 ① 연방공화국은 군대나 군속이 재화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독일군대가 이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이 강요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②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항 제2단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게 된 모든 조치를 고려하여 군대 및 군속당국자는 요청에 따라 제한된 범위내의 소요 보급선을 독일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대 및 군속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직접 또는 사전합의를 얻어 권한 있는 독일당국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④ 군대 및 군당국이 물자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 그들은 현행중인 통상절차를 따를 수 있다. 단 공공계약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쟁입찰에 관한 우선권 및 가격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구매에 관하여 연방공화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그들은 품명 및 수요량, 공급자의 성명 및 협정가격을 독일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요량이 근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군대 및 군속이 독일당국을 통하여 물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 군대 및 군속당국자는 적당한 시기에 독일당국에 대하여 군수물품에 대한 명세서에 기술적 분류와 조달 및 지불조건을 명기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계약은 독일당국과 공급자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다. 독일당국은 공급자와 비교할 때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편견을 떠나 군대 및 군속의 당국자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에 참여하고 수행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여하한 계약도 군대 및 군속의 당국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시행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국자는 공동으로 물자를 수취한다.

라. 파견국은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를 배상한다. 즉

(1) 공공계약에 관한 독일법률에 따라 연방공화국이 부담한 경비 단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결정에 대하여 파견국당국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2) 군대의 동의를 얻어 행한 추가지불금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독일당국이 군대와 군속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로서 계약자가 부담할 성질이 아닌 경비

마. 군대 및 군속당국은 이러한 지불을 소정일자에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준비한다.

바. 군대 및 군속당국은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독일의 재무당국이 행한 지출에 관한 서류를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사. 본조 (가)(다)(라)(마) 및 (바)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독일당국과 군대 및 군속당국간에 체결될 행정협정에서 이를 결정한다. 동협정에는 소정의 기일이내에 구매절차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48조 ① 가. 군대 및 군속에 필요한 물품의 수급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본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를 충족시킨다.

나. 군대 및 군속에 필요한 물품의 수급에 관한 정기적인 계획서의 형식으로 독일당국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서에 정해진 사항이외의 물품의 수급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통고에는 특히 일반지역, 수량, 용도, 수요시기 및 공급가능일자를 포함하여 상세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소요물품에 관하여 양당사자가 만족한 경우에는 군대 및 군속당국과 독일당국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정에는 시설(도로, 철도 또는 수로)과 그리고 타당한 경우에는 제63조 제5항 나에 정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독일당국이 이를 집행한다.

라. 독일당국은 요청에 따라 군대 및 군속에 대하여 식수, 가스, 전기의 공급과 하수구의 설치를 담당할 계약체결권이 있는 기업체를 명기해야 한다.

군대 및 군속의 요구에 대하여 이들 당국과 관계기업체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군대 및 군속당국의 요구에 따라 독일당국과 군당국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독일당국은 본협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연방공화국은 군대 및 군속에 대하여 군대에 관한 법규의 범주내에서 그들이 사용하도록 허가되었거나 또는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 사용중인 시설은 본조 제5항(가) 및 (나)에 따라 사용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본규정은 공공운수기관, 또는 그의 공급기관과 우편시설 및 전기통신기관에 배정된 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은 독일당국과 군당국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한 그 사용을 해제해야 한다.

③ 가. 본조 제1항에 따라 군대나 또는 군속에게 제공된 시설에 대한 협정은 서면으로 행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에는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 조건 및 설비는 물론 그 용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독일당국과 군대 및 군속당국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한 모든 시설은 이를 요구한 군대나 또는 군속이 그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나. 본항(가)의 규정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군대나 군속이 계속 사용중인 시설에도 이를 원용한다.

④ 군대와 군속은 그들에게 제공된 시설을 적절한 보존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선과 정비를 행할 책임을 진다. 단 본조 제3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군대 및 군속이 사용중인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1) 군대 및 군속은 그들이 사용중인 시설의 수와 규모가 그들에게 소요되는 최소한도로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의 수요정도를 계속검토한다.

그 이외에도 그들은 독일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들의 소요량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수한 협정에 대하여 구애됨이 없이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군대 및 군속의 수요를 충족할 다른 시설이 대치된 때에는 그 시설은 독일당국에 대하여 사전통고를 행한 후에 지체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전(1)의 규정은 군대나 또는 군속이 시설전체를 사용할 필요성을 상실한 결과 기중일부를 해제할 수 있게 된 때에도 이를 원용한다.

나. 본항(가)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독일당국이 공동방위임무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독일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시설의 사용을 해제해야 한다.

다. 본협정이 발효한 후에 군대 및 군속에 의하여 제한된 기간에 걸쳐 제공된 시설은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 군대 및 군속이 시설의 사용을 요구할 당시에 그 사용기간을 결정통고한 경우에 한한다. 동사용기간은 시설의 소유자나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동의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구매법에 따라 징발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독일의 사법당국이 토지구매법에 따라 사전소유 허가서를 발급하여 군대 및 군속에게 제공한 시설은 이러한 소유허가서가 폐기된 때

에는 사용을 해제해야 한다.

마. 시설과 함께 징발된 물품으로서 이러한 시설에 계속 잔존하고 있는 물품은 시설과 동시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단 소유자와 별도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① 군대 및 군속의 수요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연방건설공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일당국과 군대 및 군속당국은 합의를 행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는 법률규정과 현행행정규칙 및 특수한 행정협정에 따라 연방건설공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일당국이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③ 군대 및 군속당국은 독일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자체인원으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체결되거나 수정된 특수한 행정협정에 따라서

가. 소규모 건설공사와, 그리고

나. 예외적으로는 기타공사에 관하여 계약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대 및 군속당국은 독일의 현행 건설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공사의 공사에 적용되는 사정가격에 관한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연방의 현행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대 및 군속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리나 정비작업은 독일당국이나 또는 이들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군대 및 군속당국이 수행할 수 있다. 대치사용에 관해서는 본조 제3항의 규정을 원용한다.

⑤ 군대 및 군속당국과 독일당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말한 협의의 형태와 범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⑥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말한 공사를 독일당국이 군대나 또는 군속을 대표하여 수행되고 있는 때에는,

가.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 자신이 계획과 명세서를 독자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입찰방법과 그리고 지명입찰인 경우 입찰에 초청될 계약자의 수와 신원에 대해서는 독일당국과 군대 및 군속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다. 계약은 군대 및 군속이 서면으로 이에 동의한 후에야만 이를 체결할 수 있다.

라. 군대 및 군속당국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계획과 기타 관계 문서와 회계관계서류를 검열할 수 있다.

마. 독일당국은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 및 군대당국과의 합의를 거친 후에만 비로소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의 주요부분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약자의 계약의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독일당국은 사전에 군대 및 군속당국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 다음 비용은 파견국이 독일당국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공공계약에 관한 독일법률에 따라 연방공화국에 과해진 비용, 단 법정에서의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군대가 그 판결에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한다.

(2) 군대의 동의를 얻어 행한 추가지불

(3) 독일당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군대 및 군속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한 비용으로서 계약자에 대하여 부과할 성질이 아닌 비용

사. 모든 지불을 소정일자에 행하기 위하여 군대 및 군속당국은 활용할 수 있는 소요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 군대 및 군속당국은 합의된 방법에 따라 독일당국의 권한 있는 지출기관이 행한 지불에 관한 서류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자. 파견국당국은 행정협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독일당국이 제공한 특별한 원조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특별한 원조라고 함은 건설에 관한 설계, 관리 및 감독 등을 말한다.

제50조 다음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군대 또는 군속은 그들이 사용중인 연방 소유의 설비물, 가구류 및 십기류를 한 시설로부터 타시설로 이전할 수 있다.

가. 점령비용, 사용료, 유지비용으로서 구매한 물품을 포함한 설치물, 가구류 및 십기류로서 군대 또는 군속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러한 시설에서 제거시킬 수 있다.

나. 독일당국의 동의는 특정부대의 시설에 설치되었거나 배당된 설치물, 가구류 및 십기류를 제거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본규정은 이러한 물품들이 점령비용, 사용료나 또는 유지비로서 구매된 것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군대 및 군속당국은 이들 물품을 제거하기 전에 독일당국에 대하여 적당한 경우에 해결책을 강구할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적기에 통고를 행해야 한다.

제51조 ① 점령비용, 사용료 또는 유지비로서 구매한 동산은 군대 및 군속당국이 이들 재산을 그 이상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손상하는 협정이라도 이러한 동산의 판매 또는 기타의 판매 형태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에서 말한 종류의 동산은 NATO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의 영역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제4항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재산을 제거하는 데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독일당국은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통고를 받아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당국에 대하여 통고를 행할 필요가 없다.

(1) 구입가격이 근소한 물품의 제거

(2) 연방공화국의 국경을 빈번히 월경출입할 필요성이 있는 기동연습에 소요되는 물자의 제거

④ 본조 제1항에서 말한 재산으로서 군대의 감축이나 전면적인 철수와 관련하여 군부대를 이동하는 데 따라 제거하는 것은 특별한 협정의 대상이 된다.

⑤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방의 영역으로부터 철수를 행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단 제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말한 동산이 NATO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 점령비용, 사용료 또는 유지비로서 구매한 시설내의 설치물, 가구류 기타 정착물은 연방영역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

⑦ 세부사항은 별도의 행정협정의 대상으로 한다.

제52조 ① 파견국이 연방이나 기타 주의 법정소유하에 있는 재산으로서 군대나 또는 군속에 제공된 재산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대 및 군속당국과 독일당국은 파견국이 그 자체자금으로서 행한 추가시설중에서 인도당시까지 잔존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독일연방은 양당사자간에 합의된 잔여가치를 파견국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단 및 제2단의 규정은 파견국의 자금으로 구매, 설치한 비품 및 보급품으로서 시설에 잔존하도록 합의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 본조 제1항에 의한 지불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파견국이 시설이나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고 본협정 제41조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나. 독일연방이 동손해의 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다. 파견국이 본협정 제41조에 따라 동국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

③ 연방공화국은 파견국에 대하여 연방공화국이나 기타 주의 법정 소유하에 있는 시

설이나 기타 재산상에 가한 개량이나 비품 또는 보급품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이 주의 법정소유하에 있는 경우, 파견국이 동시설내에 가한 추가시설을 제거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제기한 청구에 대한 파견국의 책임을 면제한다.

④ 파견국은 본조 제1항에서 말한 종류의 재산에 가한 개량시설이나 또는 연방이나 주가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군대 및 군속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한 재산에 가한 개량시설중 잔여물의 가치에 관한 청구를 확인하여서는 안 된다.

전단의 규정은 군대 또는 군속이 이러한 재산을 사용하는 기간이나 또는 개량시설을 제거하는 동안에 개발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함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제53조 ① 군대 또는 군속은 그의 배타적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내에서 그의 방위책임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내에서 군대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면에서 그 자체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러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독일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해야 한다.

② 본조 제1항 제1단의 규정은 시설의 상부공간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를 원용한다. 단 항공교통을 방해할 조치는 독일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만 취할 수 있다.

본협정 제57조 제7항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방해할 수 없다.

③ 본조 제1항에서 말한 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군대 또는 군속은 독일당국이 시설내에서 독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독일당국과 군대 및 군속당국은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협조를 취한다. 이러한 협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협정의 조인에 관한 의정서 제5항 내지 제7항에 기술되어 있다.

⑤ 독일군대 및 민간기관이 주둔군 및 군속과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규칙은 주둔국으로서의 독일연방의 입장과 주둔군의 방위임무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행정협정 또는 기타 특수한 협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⑥ 군대 또는 군속이 그의 방위책임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당국은 군대의 요청에 따라,

가. 제한구역을 설치하고

나.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의 부근에서의 건설공사, 경작 및 이동을 감독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4조 ① 인간, 동물 및 식물에 감염되는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는 물론 식물에 전염되는 피병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규칙은 그에 관한 군대의 규칙이 전술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독일규칙을 적용한다. 군대는 그가 사용하도록 제공된 시설내에서 그 자체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그 규칙으로 인하여 공공의 보건이나 농작물의 경작이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군당국과 독일당국은 전염병의 발생 또는 전파 및 제거는 물론 그에 관하여 취한 조치를 즉시 상호 통고해야 한다.

③ 군당국이 그들이 사용중인 시설의 부근에서 건강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동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독일당국과 협의를 행하여야 한다.

④ 독일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 군당국이 이를 수입할 수 있다. 단 그 수입으로 인하여 공공의 보건이나 식물의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독일당국과 군당국은 본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당국이 수입을 허가한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⑤ 군당국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수입한 물품의 검사와 통제를 행해야 한다. 군당국은 그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공공의 보건이나 식물의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① 가. 군대가 방위책임을 지고 있는 구역내에서의 공동방위를 위한 NATO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위업무는 군당국과 연방당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획, 집행되어야 한다.

나. 독일당국은 군당국과의 연락하에 각종공사를 실시한다. 단 보안이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당국은 연방당국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합의된 구역내에서 그 자체의 인원이나 또는 독일인 이외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공사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방당국과 군당국은 방위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조치가 적기에 준비,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가. 독일군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민간인고용원에 적용하는 독일노동법은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관세규정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대 및 군속에 고용된 민간인고용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단 본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군대 또는 군속당국에 의하여 고용되기를 지망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없음을 일방적으로 거증할 책임을 진다. 지망자가 상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독일당국은 독일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범죄자명단을 발췌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단 지망자는 그가 군대 또는 군속당국이 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명단을 발급하는 것이 독일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 민간인고용원이 일단 고용된 후에는 보상에 관한 청구를 일방적으로 군당국에 제기할 수 없다.

라. 업무상 이유로 인한 연방공화국내에서의 전근은 민간인고용원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만 이를 행한다. 이러한 동의를 함에는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마. 군대는 민간인 노동단체를 조직하기 위하여 독일인 이외의 민간인을 규합할 권리를 가진다.

바. 군대 또는 군속에 의한 고용은 독일공공봉사기관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독일의 노동재판소가 고용계약의 완료통고당시에 동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때에는 동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고용의 계속이 거부될 경우에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산정한다. 본규정은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선고를 위한 기타 행위 또는 고용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나 또는 특별한 업적에 관한 판결 선고에 관한 행위에 관한 절차도 적용한다.

보상액은 독일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은 고용을 계속할 것을 거부하는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대 및 군속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독일노동법원의 판결을 수리한 후 2주일 이내에 지체없이 관계인에 대하여 고용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동기간내에 이러한 통고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대 또는 군속당국이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당국이 민간인을 계속 고용할 것을 결정한 때에도 법원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항고할 수 있다.

본항은 노동위원회위원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해보험, 실업보험 및 자녀수당을 포함한 회사보험에 관한 독일법률상의 규정은 군대 또는 군속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연방공화국은 재해보험의 경영주가 된다.

④ 군대 또는 군속에 고용된 민간인은 민간인경비위원을 포함하여 비전투임무에만 종사한다.

⑤ 독일당국은 군대 또는 군속당국과의 합의를 거쳐,

가. 노임, 급료 및 기타개인의 고용계약의 기초가 될 조건을 설정하며 관세협정도 체결하여야 하며

나. 지불절차를 규제하여야 한다.

⑥ 군대 및 군속당국은 노동자의 고용에 관하여 본조 제7항(가)의 제2 내지 제6단 및 (나)에 따라 교섭, 분류 및 배치, 훈련, 전동, 해고 및 사표를 수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가.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필요한 직종의 수를 결정하고 본조 제5항(가)에 따라 설정된 직군에 따라 이러한 직종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종의 분류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적인 분류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2주일 이내에 독일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독일당국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당국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대 또는 군속당국과 독일당국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분류 기간중에 행하는 보상은 최종분류에 따라 확정한다. 예비적분류가 완료된 때에는 노동자는 이러한 지를 통고받아야 한다.

나. 군당국은 민간노동기관의 구성원의 분류를 실시한다. 동당국은 독일당국에 대하여 이러한 분류에 관한 통고를 행하여야 하며 독일당국이 그의 개정에 관한 제의를 행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⑧ 고용이나 사회보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은 독일법원에서 해결한다. 고용자에 대한 법률소송은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고용자를 대신한 법률소송은 연방공화국이 이를 집행한다.

⑨ 독일군대에 소속된 민간인 고용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대리에 관한 독일법률의 규정은 군대 또는 군속에 고용된 민간인 노동자의 결정대리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단 본조의 규정에 관하여 본조약의 조인에 관한 의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⑩ 독일당국이 주둔군대 또는 군속과 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비용은 독일당국이 관리하는 수당 또는 사례금을 포함하여 전체 임금과 급료에 대한 적당한 비율에 따라 군당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비율의 결정은 실질비용에 기초를 두어야 하

며 독일당국과 모든 파견국간의 별도협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 비용의 변제기준도 설정되어야 한다.

제57조 ①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연방공화국의 국경을 월경하거나 또는 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연방공화국내에서 이동하거나 또는 그에 출입할 수 있다.

② 독일철도의 운영권은 계속 그 효력이 존속된다. 군대의 화물선 및 객선의 이동과 등록은 물론 군대의 기관차의 입국은 군당국과 독일철도당국간에 체결될 등록계약이나 행정협정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③ 본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교통법규는 군대, 군속, 구성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④ 가.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행위를 규제하는 독일법규는 군사상의 긴급사태가 있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행한 후에만 이를 위반할 수 있다.

나. 독일당국과 군당국은 군사상의 교통을 위하여 차량 및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도로망을 지정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도로망 이외의 도로에서의 차량 또는 트레일러의 운행은 반드시 사고, 재해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 존속하거나 또는 그들 당국간의 협정에 의하여서만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⑤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하여 정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조건으로 군대 또는 군속이 소유하는 차량, 트레일러, 내해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 고안 및 설비에 관해서는 독일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들 차량, 트레일러, 내해선박 또는 항공기가 파견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군대 또는 군속은 군항공기의 착륙을 위하여 군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구역 이외의 민간공항 및 기타 착륙구역을 사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단 군사상의 긴급사태가 존재하거나 권한 있는 독일당국과 행정협정 또는 기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⑦ 독일군당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구주지구항공협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민간 및 군항공협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의 기능의 범위내에서 주둔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군사적인 견지에서 원활한 협조에 도움이 되는 견해를 제시할 책임을 진다.

군대의 대표자에 대하여서는 합리적인 경우, 동위원회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독일당국 및 군당국에 의하여 발전, 운영되는 항공교통에 관한 모든 통제 및 이와 관련된 통신제도에 관해서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공동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행하여야 한다.

제58조 ① 군대, 군속, 그 구성원과 그들의 가족은 연방공화국에서의 공공차량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공유 및 사유운송시설과 봉사업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법규에 따라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가. 본조 제1항에서 말한 교통시설 및 기타 기관의 사용대가로서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적용할 사용료는 독일교통법규에 따라 권한 있는 독일당국에 의하여 결정, 승인되어야 한다. 군대 또는 군속을 운수업무와 관련하여 군사요금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상태가 발생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은 군당국 및 업자와의 교섭을 거친 후에 그의 법적권한의 범위내에서 군사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여야 한다.

나. 군사요금은 간소화된 계획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산을 함에는 군사요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대 또는 군속에 의하여 그의 적용을 집행케 할 수 있다.

다. 군사요금률의 적용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는 특수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발생한 결과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군당국이 동군대의 교통상의 필요를 기타 방법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시설을 개량하거나 또는 추가시설의 건설을 요구한 때에는 연방공화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해야 한다.

④ 독일당국은 필요한 경우 그들의 권한내에서 군대에 소요되는 장갑차량, 침대차 및 식당차를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군당국과 그리고 상업상의 기초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러한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가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① 가. 군대는 동군대자체, 군속, 그 구성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우편 및 전신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급한다.

- (1) 연방영역의 외부로부터 우편물을 접수하는 일
- (2) 연방영역이외의 지역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연방영역내의 타군우체국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
- (3) 연방영역내에서 군대, 군속, 구성원과 그 가족의 보통우편물 또는 우편물을 운송하는 일

다. 우편송금업무는 군사우체국과 관계파견국의 기타 우체국간에만 이를 제한한다.

② 군사우체국은 독일연방우체국에 대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또는 독일연방우체국으로부터 군대, 군속, 구성원과 그 가족의 보통 또는 봉함된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다.

연방공화국과 관계파견국을 구속하는 국제협정은 동국군대의 군사우체국과 독일연방우체국간의 우체물 거래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군당국과 독일당국간에 우편비용과 기타 특수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편물교환소는 상호협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에는 관계파견국의 소인을 찍을 수 있다.

④ 군대가 군사우체국을 설비, 운영하지 않는 때에는 이러한 군대의 부대, 군속, 구성원과 그 가족은 타군대의 우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사용기간이 영구적이거나 또는 장기에 걸친 때에는 독일당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본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대, 군속, 구성원과 그 가족은 연방공화국의 공공전신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협정에 대하여 체결된 별도의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은 당시의 현행독일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군대는 독일군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군대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 유지할 수 있다.

- 가.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내에 유선전신시설을 설치, 운영, 유지하는 일
- 나. 독일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정방송국을 설치하는 일
- 다. 이동방송을 위한 시설과 방송국설치업무를 수행하는 일
- 라. 기타 수신시설
- 마. 작전연습, 기동훈련 및 긴급사태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잠정적 전신시설

③ 가.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 군대는 그가 사용중인 시설의 외부에 유선전신시설을 가설할 수 있다. 단

- (1) 긴박한 군사상의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 (2) 독일당국이 소요시설을 제공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의 제공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속한 절차는 행정협정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④ 가. 군대는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시의 현행법규에 따라 사용하게 된 전신시설을 계속하여 운영, 유지할 수 있다.

나.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시의 현행법규에 따라 착수된 전신시설로서 본협정의 발효시까지도 완성되지 아니한 시설은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독일 정부에 제출된 명세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⑤ 가. 군대는 동군대와 군속 및 구성원과 그 가족을 위하여 자체의 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이들 방송국은 불합리한 형태로 독일의 방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현재방송국은 계속 이를 운영할 수 있다. 방송국을 추가로 설치, 운영함에는 독일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군대, 군속, 구성원과 그 가족은 영업감찰이나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음향 및 영상수신장비를 도입,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⑥ 무선전신의 주파수와 그에 관한 특수자료는 조인에 관한 의정서중 본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⑦ 군대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시설은 연방공화국의 공공통신과 상호 연결할 수 있다. 단 군대의 통신이 그 기술 및 운영면에서 이들 통신과 합치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상호연결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⑧ 가. 전기통신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대는 1952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결된 국제전기통신협정의 제규정이나 또는 그에 대치하기 위하여 체결된 기타 협정과 연방공화국을 구속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타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군대는 본항(가)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단 독일법규에 의하여 독일군대에 확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전기통신면에 있어서 장차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독일당국은 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군대의 군기통신소요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⑨ 가. 군대는 그의 전기통신 기타 전기시설에 의하여 독일전기통신시설을 차단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군대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독일당국은 그의 전기통신 기타전기시설에 의하여 군대의 전기통신시설을 차단하거나 또는 이를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당국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⑩ 연방의 영역내에 가설된 해저전선으로서 FK12 및 FK41인 전선으로서 판명된 전선과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파견국의 관계당국이 이를 행한다.

제61조 ①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및 관세의 면제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협정이나 기타 원용할 수 있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군대 또는 군속에 제공한 송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수수료는 연방공화국내의 현행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동수수료는 독일당국에 대하여 행한 송달과 용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의 개인소비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군대나 군속은 그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이들 물품이 본협정 제56조에서 정의한 범위내의 노동자로 인정되는 자의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금, 수송 및 전기통신요금에 관한 본협정상규의 규정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62조 ① 독일조달법규에 따라 군대 또는 군속을 대리하여 수용절차를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독일당국은 군대 또는 군속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절차를 결정한다.

나. 권한 있는 독일당국은 행정협정에 따라 재산, 용역 및 시설의 수취인 및 이용자로서의 군대 또는 군속당국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군대 또는 군속은,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에 성격상 독일당국에 의하여 이행될 수 없는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불이 확정된 보상금의 액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군대 또는 군속의 이

익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당국은 물품, 용역 및 기타시설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자나 또는 기타 지출기관이 동액수에 관하여 제기한 제의에 응해야 한다. 단 군대 또는 군속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행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당국은 전술한 협의를 거쳐 지불이 확정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제의를 자신이 직접 제기할 수 있다.

본협정 제63조의 규정은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다. 물품, 용역 및 시설의 수취인 또는 이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군대 또는 군속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법률소송은 연방공화국이 그의 명의로써 제기하거나 또는 방어하여야 한다.

제63조 ① 본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된 범위내에서 군대가 그 자체의 목적이나 또는 군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나 용역에 대하여서는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군대 또는 군속은 공로, 고속도로 및 교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대 또는 군속은 기상, 측지 및 통계지도업무는 물론 독일경찰, 공공위생 및 소방시설의 이용을 포함한 제반행정상의 용역과 원조를 적어도 독일군대와 동등한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다. 항행가능수로의 이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가.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연방의 법적소유하에 있는 재산이나 또는 점령비용, 사용료, 또는 지원비용자금으로서 조달, 구입되었거나 또는 장차 구입, 건축될 재산은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독일철도국이나 연방우정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연방공화국은 주의 법정소유하에 있는 재산을 사용중인 파견국에 대하여 독일법률에 따라 주가 정당하게 제기한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본항(가)의 제1단 및 (나)에 있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연방공화국이 제공한 자금이나 또는 파견국의 자금으로 이미 재건되었거나 또는 장차 재건될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동재산의 총액에 대한 재건비용의 비율에 따라 이를 경감한다.

라. 본항(가) 내지 (다)에서 말한 재산의 사용료의 면제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선 및 유지비

(2) 독일법률에 따라 연방공화국이 사용료의 변제책임을 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행공공사용료

(3) 기타 운영비

⑤ 가. 군대 및 군속에 제공한 재산 및 용역이나 또는 독일법률에 따라 군대 및 군속에 대하여 이전, 제한 또는 박탈한 권리와 관련된 항목의 비용중 다음 비용을 파견국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독일의 주조달법에 따라 지불이 확인된 보상금

(가)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개시된 사전소유에 대한 보상

(나) 군대 또는 군속에 제공한 시설로서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법적으로 소유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지불, 단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영구적인 건조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제공한 시설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독일법률에 따라 주에 지불해야 하는 제한지역에 대한 보상금

나. 군대 또는 군속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결과 연방이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적절한 요인을 참작하고 본조 제6항(다)의 규정에 대한 편견을 가짐이 없이 동 토지의 구입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되는 파견국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일당국과 군당국은 그때마다 교섭을 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 군대의 요구에 따라 제한구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관한 보상을 즉시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독일당국과 군당국은 군당국에 대하여 제공된 시설과 그 주위의 제한지역의 사용기간을 포함한 주요요인을 고려하여 적당한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보상금의 할당액에 대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

⑥ 가. 군대 또는 군속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또는 이러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파견국은 철수지구에 대하여 과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군대 또는 군속당국의 요구에 따라 설치, 개량, 보강 또는 확장된 교통 및 전기통신전기, 가스, 배수장치 및 시설로 인하여 독일이 혜택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들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수선 및 정비에 소요된 비용은 독일의 이익과 파견국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배분되어야 한다.

비용총액은 그때그때마다 독일당국과 군당국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독일당국이 그의 폐쇄나 제거를 요구하거나 군대 또는 군속의 요구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설비 및 시설을 수선 및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 군대 또는 군당국에 의한 토지의 구입이나 또는 군대 또는 군당국의 이익을 위하여 군대 또는 군속이 수행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통 및 전기통신, 전기, 가스 및 급수 또는 배수설비나 시설이 그 이상 공용에 제공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필요성을 상실하여 이들 설비 및 시설의 방향 또는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파견국은 그에 관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⑦ 가. 군대가 사용하는 군용 또는 기타 항공기가 군대의 배타적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아니한 민간공항을 포함한 모든 공항을 사용하는 때에는 현행독일법규에 따라 지불하는 정당한 사용료 이외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지불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나. 군대가 사용중인 군용 또는 기타 항공기의 긴급착륙에 대해서는 착륙료를 면제한다.

제64조 독일경찰, 공중위생 및 방화시설과 기상, 측지 또는 통계지도와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은 물론 모든 공공의 업무를 포함한 행정상의 봉사와 원조는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그들의 고유권리로 인정, 연방의 영역내에 있는 다른 자와 동등한 범위내에서 무료로 이를 제공한다.

공로, 고속도로, 교량과 기타항행이 가능한 수로의 사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65조 ① 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4항에 있는 관세의 면제는 수입당시에 군대 또는 군속의 재산인 물품에 대해서는 물론 군대 또는 군속이 연방 영역 또는 베를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 또는 군속에게 송달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이러한 면세규정은 그들 물품이 군대 또는 군속의 차량기관을 통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상업상의 운수기관을 통하여 수입되거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및 수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1) 면세지구로부터 철수되어 반입된 재산

(2) 군대 또는 군속당국의 공인조달기관이 연방공화국 또는 서부 베를린에 주거 중인 민간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면세물품을 계속 조달하는 경우 전단의 규정은 군대 또는 군속이 연방의 영역내에서 양국간에 합의된 기관을 통하여 이들 화폐를 교환함으로써 획득하게 된 도이치.말크나 또는 관계정부간의 특수협정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용도에 사용될 도이치.말크로서 지불을 행한 때에 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조 제1항에서 말한 면제는 군대 또는 군속이 그들 가족의 사용이나 또는 소비를 위하여 그리고 그 구성원에 분배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수한 경우에 독일당국과 군당국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분배는 군대 또는 군속의 특정기관이나 또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기타 기관을 통

하여서만 이를 행해야 한다. 전단의 기관의 명칭은 연방정부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군대 또는 군속은 독일당국과 체결할 협정에 따라 군대, 군속고 그 가족 이외의 제삼자에 대하여 물품을 분배할 수 있다. 독일관세법정에 따라 물품의 분배로 인하여 지게 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들 물품을 취득한 자의 책임이다.

군대 또는 군속은 물품을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단 독일세관당국에 의하여 그들이 독일의 세관행정에 관한 문제를 성실히 행하였다는 지의 증명을 가진 자가 생산한 물품이어야만 한다.

④ 군대와 그리고 권한 있는 독일당국은 군대 또는 군속이 행하는 수출입에 관한 절차를 원만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대 또는 군속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독일당국의 세관통제는 다음 원칙에 따라 행한다.

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3항과 본항(나), (다) 및 (라)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군대 또는 군속이 물품을 우송하는 경우 독일당국은 모든 화물에 대하여 그 수량, 규격, 표지 및 중량을 검사할 수 있다.

나. (1) 독일세관당국은 동화물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군대나 또는 파견국의 군당국의 공적봉인이 되어 있는 화물의 검열은 중소한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화물에 대한 검열은 현지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전단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포장봉인된 차량과 기타 밀폐된 화물은 군대 또는 군속대표자의 입회하에서만 검열을 행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경우, 군대 또는 군속이 입회자를 지정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2) 군당국과 독일세관당국은 검열의 범위와 검열실시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다. 이러한 협정에는 화물의 종류, 수송기관의 종류, 군대의 수송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요인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군대 또는 군속은 이러한 검열을 전방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화물소재나 또는 그 인근에서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독일세관당국은 화물을 검열장소로 유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독일세관당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군당국의 증서에 따라 특수한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군비품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반드시 검열을 목적으로 군대가 지명한 군대표자가 이를 검열할 수 있다. 검열결과는 반드시 권한 있는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라. 본항(가), (나) 및 (다)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군공항에 도착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발송된 화물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독일세관당국은 문제된 공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검열을 행할 수 있다. 군당국은 이들 모든 화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열을 행해야 한다.

항공기내에서 특수한 보안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군비품에 대하여 세관검열을 행하는 때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지명한 대표자가 이를 행한다.

⑥ 군대 또는 군속이 연방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한 경우와 유사한 형식의 명세서를 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단 동조 제10항에서 정한 범위내에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 ①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그들의 사유동산, 가구류 및 사유차량 이외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할 기타물품을 관세나 기타 수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은 전기물품의 소유자가 이들을 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증되었거나 또는 연방영역과 서부 베를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중인 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송달된 물품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 권한 있는 독일당국에 의하여 통관규칙에 따르도록 지정된 물품인 경우 본조 제1항에서 말한 특권은 군대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소지하고 있는 소포에 포함되어 있는 물

품으로서 권한 있는 독일당국이 군당국과의 합의하에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이를 통용한다.

③ 수입품의 사용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독일세관당국은 수입품들이 대내적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그를 수입하는 자의 소비를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단의 규정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제한된 수의 관리에 의해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군당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그들 관리를 임명하고 그 성명과 서명의 견본을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④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이나 또는 면세로 취득한 물품은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분배할 수 있다. 별도의 예외규정이 독일당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분배함에는 반드시 사전에 독일당국에 이를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가. 우편기관이나 또는 선편을 통하여 군대 및 군속과 그 가족에 의하여 또는 그들에 대하여 송달된 물품에 대한 통관상의 통제는 전기 당국과 권한 있는 독일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당국이 이를 집행한다.

세관검열은 군당국의 대표자의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나. 본협정 제69조에 포함된 우편물의 통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상군우체국에서 군대 및 군속과 그 가족에 의하여 또는 그들에 대하여 발송된 서신이나 소포의 검열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송인, 수취인 또는 이들 양자의 대표자는 이들 서신이나 소포를 개봉할 당시에 입회하여야 한다. 검열범위 및 방법은 군당국과 독일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⑥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그들이 연방공화국에 반입한 재산을 재수출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수입세를 면제한다. 그들은 또한 경제상의 이유로 인한 수출금지조치나 또는 기타 제한 및 수출세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들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수량의 재산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독일세관당국은 군대 또는 군속당국에 대하여 이들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기 서류는 본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⑦ 군대의 일선연락장교단이 주재하고 있는 세관에서 군대 또는 군속의 구성원에 대하여 세관통제를 행하는 경우 독일세관당국은 그들이 봉착한 검열상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연락장교단소속 장교를 초청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군대는 그의 공적활동에 관한 업무나 또는 이러한 업무에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단의 규정은 군대가 독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상의 무역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해진 조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대가 그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을 위하여 우편물을 전달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일은 독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상의 무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군대 또는 군속이 수입하거나 또는 수출하는 물품이나 또는 그들이 면세지역에서 취득한 재산, 그리고 통관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시설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세의무의 면제는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1조와 본협정 제6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 (1) 군대 또는 군속의 공인조달기관을 통하여 군대 또는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 (2) 내지 (4)에 따라 설치된 조세보조금을 제공한다. 단 전기 보조금은 파견국의 화폐이어야 한다.

전단의 조건은 군대나 또는 그의 공인기관이 연방의 영역내에서 독일마크 화폐로서 전기보조금을 지불한 때에도 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격을 계산함에는 조세의 면제와 재적립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한 우편물의 송달이나 용역의 제공에 관해서는 인도세를

면제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물품의 공급자에 대하여 수출에 있어서의 독일인도세법에 규정된 재적립금을 지급한다.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한 우편물의 송달은 도매상품의 송달로 간주한다.

(3)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독일연방철도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업자가 운송업무를 대행해 주는 때에는 운송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운송세의 면세규정은 군대 또는 군속에 대하여 전술한 송달이나 용역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자나 또는 개인이 자기회사소유의 장거리운송기관이나 독일연방철도 또는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운수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유내해무역으로서 군대 또는 군속에 송달된 재화에 대해서는 이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법, 수출세법 및 전매법에 의하여 면세, 재적립, 또는 가격할인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

나. 본항(가)의 규정은 독일당국이 군대 또는 군속을 위하여 조달업무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다. 전항(가) 및 (나)에서 말한 보조금은 그에 관한 구비위반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련독일당국에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하는 증명서류의 양식은 독일당국과 파견국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료용유류, 휘발유 및 윤활유에 관하여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특수절차는 본협정 제65조 제1항(나)와 본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군대 또는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그들이 연방공화국과 체결한 모든 국제협정에 의하여 향유하고 있는 모든 조세상의 특혜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세는 국내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공인대리업자에 대하여 보험프리

미엄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기 보험프리미엄을 직접 외국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군대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사유차량에 대한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세의 납부는 개개의 경우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보험프리미엄이 예외적으로 그들 보험회사의 국내대리점에 대하여 지불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방의 영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군대 또는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이 독일의 현행 인도세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수요자로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0조의 해석상, 가족은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69조 ① 군대 또는 군속당국과 그 가족과 그리고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은 수출을 행하고 연방공화국의 화폐를 소유하며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4조에서 말한 규칙에 따라 연방화폐로 표시된 기타 증권을 소유할 권리는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② 군대 및 군속당국은 수출 및 수입을 행하고 연방공화국 이외의 화폐를 소유하며 그러한 화폐로 표시된 기타 유가증권 및 어떠한 파견국의 화폐로 표시된 군표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유가증권을 분배할 수 있다. 즉

가. 휴가증의 시행을 포함하여 허가된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화폐와 유가증권

- (1) 연방공화국
- (2) 파견국

(3) 기타 모든 국가

나. 모든 파견국의 화폐로 표시된 군표

단 파견국화폐로 군대 또는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불제도는 연방공화국과의 협조를 통하여서만 군당국이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군당국이 제정하여 연방공화국당국에 통고한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군대 및 군속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가. 파견국의 화폐, 그러한 화폐로서 표시된 유가증권 및 모든 파견국의 화폐로 표시된 군표를 수입하거나

나. 다음과 같은 증권을 수출할 수 있다.

(1) 연방공화국 이외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이러한 화폐로 표시된 유가증권. 단 이들 구성원과 그 가족이 군당국이나 그의 공인기관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였거나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2) 이들 구성원과 그 가족이 파견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대리점에서 수취한 수표

(3) 모든 파견국의 화폐로서 표시된 군표

⑤ 군당국은 연방공화국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어진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제도가 군대와 군속, 그리고 그 구성원과 그 가족과 관계되는 한 외환규제 체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 장차 체결할 특별한 협정에 따라 군대와 군속은 파견국화폐로서 획득하며 독일연방은행의 당좌계정에 입금한 독일화폐로 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71조 ① 조인에 관한 의정서중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 제2항에 열거한 비독일·비상업단체는 군대의 기관으로서 간주 취급한다.

② 가. 조인에 관한 의정서중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 제3항에 열거한 비독일·비상업단체는 동항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본협정에 의하여 군대에 부여된 이익과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이들 단체를 위한 수입이나 그에 대한 물품의 송달과 기타 봉사업무는 그러한 수입, 송달 기타 봉사업무가 군대 또는 군속당국이나 또는 이들 당국이 지명한 공인조달기관을 통하여 집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본항(가)에 열거된 단체는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본협정에 따라 군대 또는 군속당국에 부여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③ 비상업단체로서의 그들의 활동에 관하여 조인에 관한 의정서중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단체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무역 및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독일법규로부터 면제된다. 동규정중 보안조치에 관한 법규는 본협정 제13조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못한다.

④ 기타의 비독일 비상업단체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정협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인에 관한 의정서중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을 제2항과 제3항에 열거한 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즉

가. 그들 기관이 군사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나. 그들 기관이 군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가. 본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인에 관한 의정서중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 제2항과 제3항에 열거한 단체에서 전속되어 근무하는 피고용자는 군속으로 간주, 취급한다. 이들 단체가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보상금에 대하여서는 연방의 영역에서 과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단 이러한 급료와 보상금이

(1) 파견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2) 조세의 면제를 전제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본항(가)의 규정은 본조 제4항에 따라 조인에 관한 의정서증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 제2항과 제3항에 열거한 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단체의 피고용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⑥ 본조 제5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무국적자

나. 북대서양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다. 독일인

라. 통상적으로 독일연방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

제72조 ① 조인에 관한 의정서증에서 본조에 관한 규정 제1항에 열거된 비독일계영리기업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가. 군사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본협정에 따라 군대에 부여된 관세와 조세의 면제와 수입 및 재수출에 관한 제한 및 외환관리를 면제받을 권리

나. 무역 및 사업활동에 관한 독일법규를 면제받을 권리

다. 기타 행정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이익을 부여받을 권리

② 본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즉

가. 기업체의 활동이 군대 또는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해서만 종사하고 있는 경우 및

나. 군대의 군사상의 수요를 담당하지 아니하고서는 독일기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상거래에 국한된 경우

③ 기업체의 활동이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 및 이익의 부여는 군대만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

는 활동과 기타 활동간의 명확한 법적 및 행정적 구분을 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④ 독일당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독일기업체는 제1항에서 말한 면제 및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⑤ 가. 본조에 따라 면제 및 이익을 받고 있는 기업의 고용원이 그들이 이러한 기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속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과 동등한 면제 및 이익을 부여받는다. 단 파견국에 의하여 이러한 면제 및 이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본항(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무국적자
- (2) 북대서양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 (3) 독일인
- (4) 통상 연방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

⑥ 군당국이 본조에 따라 이들 기업 또는 그의 고용원에게 부여한 면제 및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동국당국은 그 지를 독일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군대의 요청에 대하여 종군중이며 연방영역내에서 기술문제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또는 비품의 운용과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기술전문가는 군속으로 간주 취급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무국적자
- (2) 북대서양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 (3) 독일인

(4) 통상 연방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

제74조 ①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2조 및 제13조는 본협정의 조항중,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규정에도 동등하게 이를 적용한다.

②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관세 및 조세부면에 있어서의 이익 및 면제를 부여한 결과 초래될 우려가 있는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은 독일당국과의 행정협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독일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특정물품을 군대 또는 군속의 요구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군대 또는 군속과 독일당국간의 협조에는 군판매기관 및 군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그리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독일당국의 요구에 따라 동당국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 정보와 그리고 연방영역내에서 과세대상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의 납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회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득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군대 또는 군속당국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세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어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공적증서나 또는 기타의 독일당국에 의하여 동당국에 제공된 정보 등을 말한다. 독일당국은 허가되지 아니한 제삼국에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가. 피의자가 독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협정 제19조나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군대의 구성원이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범죄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전기발효일자 이전에

(1) 이러한 범죄에 관한 소송절차가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군당국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또는 이미 완료된 경우 또는

(2) 관계과건국의 법률에 따라 재정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범죄의 기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나.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에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때에는 이들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군대 협약의 규정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단 전기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때까지로 하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10일 이내에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②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행해진 범죄에 관하여 형을 과하는 데 있어서 독일법원 또는 기타 당국은 범행당시에 과건국의 현행형법에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독일법률에서 과한 형벌보다 경미한 형벌을 과하게 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정당한 고려를 행해야 한다.

제76조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방위공사나 또는 전기 일자 이전에 착수된 공사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완공하여야 한다.

제77조 군사협약 제17조 제8항에 규정된 상설위원회는 공동방위와 공중의 안전상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및 군항공에 관한 협조면에서 그의 기능을 계속하여야 한다. 민간항공 및 모든 항공부대간에 연방영역 내에서의 효과적인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기관과 더불어 본협정 제57조 제7항에서 말한 독일위원회가 독일당국에 의하여 조직되어 이 방면에 있어서의 군대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도달하게 되

는 때에는 상설위원회는 독일당국과 관계 군당국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를 해산한다.

제78조 ① 군사협약 제44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된 혼성위원회는 전기 위원회의 해산이 안전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로서 존속한다. 단 동조에 따라 행한 요구가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동위원회에 의하여 수락된 경우에 한한다.

② 혼성위원회가 행한 결정은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독일노동법원을 기속한다.

제79조 ①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가), (다) 및 (라)와 그리고 1954년 10월 23일자 「파리」에서 조인된 점령군정부의 종료에 관한 협약에 대한 제5호계획에 의하여 수정된 군대 및 그 구성원에 대한 과세에 관한 협정 제3조에서 규정된 면세조치는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점령비용 기타 사용료 및 유지자금에서 도이치말크화폐를 지출하여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서도 계속 이를 부여한다.

단 1957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② 본조 제1항은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주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연방공화국이 전기한 발효일자 이전에 상호방위원조로서 군대에 대하여 제공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말크로 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0조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본협정에도 계속 이를 적용한다. 단 동조에서 NATO협정의 기타 조문을 참조할 것을 정한 때에는 본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해당 조문을 참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1조 ①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협정은 1954년 10월 23일

자 독일연방공화국내에 있는 외국군대의 주둔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연방공화국내에 군대가 주둔중인 기간에 걸쳐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본협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가. 연방공화국이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부인하는 경우, 동협정 제19조에 따라 그 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나. 독일연방공화국과 기타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부인하는 파견국간에 그 부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제82조 본협정은 다음과 같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가. 1954년 10월 23일자 독일연방공화국내에 있는 외국군대의 주둔에 관한 협정이 동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검토되는 때

나. 효력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당사국이 검토를 요구한 때

다. (1) 일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인 경우에는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2조에 따라 동조에 직접 관련된 조항이 검토되는 때

(2) 일방 당사국이 일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의 검토를 요구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검토한다. 즉 동조항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그의 검토를 요구한 당사국에게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동당사국이 이들 조항의 계속적인 적용을 기대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요구가 제기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3개월간의 교섭이 진행된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당사국은 어느 편이나 1959년 12월 13일자 북대서양결의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에게 이를 의뢰하여 그의 직권을 행사하여 동결의에 거시한 절차중 적당한 것을 선택해결에 착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행한 보고에

따라야 한다.

(3) 순수한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성격을 가진 일개 또는 그 이상의 규정에 관하여 일방당사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검토한다.

제83조 ① 본협정은 비준되거나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서명국은 비준 또는 승인에 관한 문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정부는 전기 문서의 기탁일자를 서명국에 각각 통고해야 한다.

② 본협정은 연방공화국이 1955년 10월 5일자 북대서양이사회의 결의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NATO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가입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협정은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정부는 그의 공증사본을 모든 서명국에 우송한다.

연구보고서 2006-19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2006년 12월 발행

2006년 12월 인쇄

발행인 : 이 병 진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인쇄처 : 제이케이컴퍼니
(TEL : (02)3494-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